

발간등록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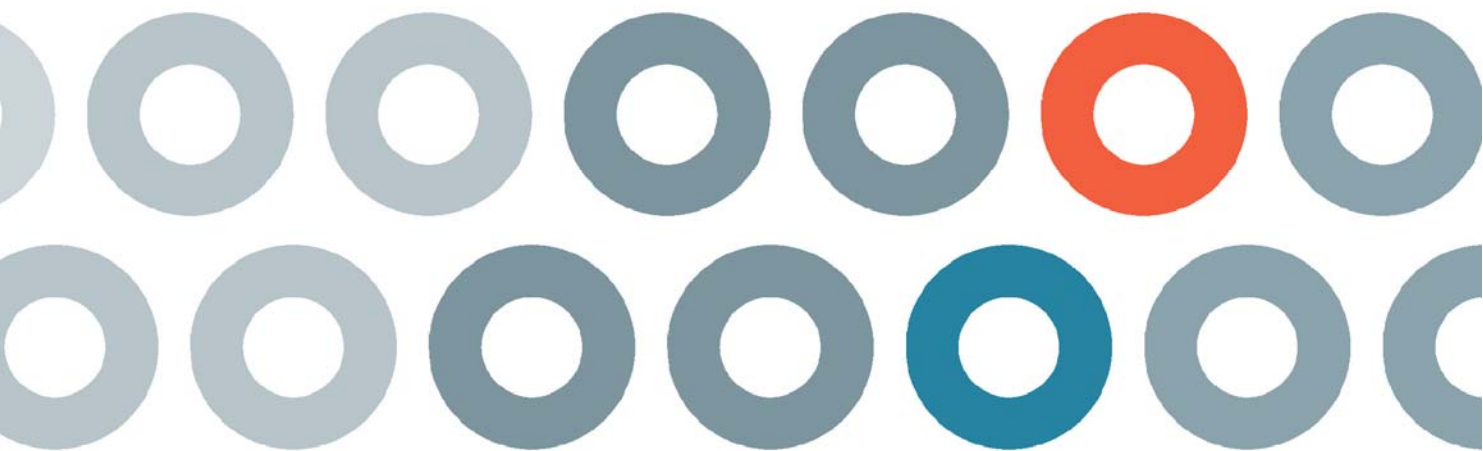
11-1140100-000006-10

www.acrc.go.kr

2014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Casebook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제재개선

발 간 사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진실로 하루가 새로워지려면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날마다 새롭게 하라”는 이 말은 빠르게 변해가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갖추어야 할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국가청렴도가 국가의 신인도 및 경쟁력과 직결되는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부패문제 해결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우일신(又日新)의 자세로 변화하는 부패 환경에 맞서 우리 사회전반에 청렴한 사회문화 정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위원회는 2006년부터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장기적·근본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부패 발생의 사전 예방이라는 선제적 인식에서 출발하여 법령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법령 속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4년 한 해 동안 1,889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그 중 230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여 각 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령에 대해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행정 위탁·대행 분야를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142건의 개선의견을 관계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2014년 부패영향평가 사례집’은 부패영향평가 업무를 처음 접하는 각 기관의 담당자들을 위하여 평가기준별로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엄선하여 게재하였으며, 각 평가기준별 사례를 한 장으로 요약·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부패영향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알기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처·지자체·공직유관단체가 부패영향평가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체 발굴한 자발적인 개선사례를 추가하는 등 지난 한 해동안의 소중한 결실들을 고스란히 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의 반부패·청렴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이 각 기관의 부패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유용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법령 등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 성 보

Contents

제1장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7

제1절 부패영향평가 개요 8

제2절 부패영향평가 기준 10

제3절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12

제4절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15

제5절 '14년도 부패영향평가 주요 추진내용 18

제2장

제·개정법령 평가 사례 25

제1절 평가기준별 주요 개선 사례 29

제2절 행정내용별 사례 113



제3장	자발적 개선 사례	179
	제1절 중앙행정기관 행정규칙 개선 사례	181
	제2절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 사례	205
	제3절 시·도교육청 자치법규 개선 사례	223
	제4절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선 사례	249

제4장	부 록	
	[부록 1] 현행법령 평가사례	
	제1절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300
	제2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316
	제3절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335
	[부록 2]	
	제1절 제·개정 시 참고해야 할 일반법	360
	제2절 색인	361

제1장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제1절 부패영향평가 개요

제2절 부패영향평가 기준

제3절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제4절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제5절 '14년도 부패영향평가 주요 추진내용

제1절 부패영향평가 개요

1 의 의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개선하는 사전적·예방적 부패통제 시스템으로 크게 제·개정 법령 평가와 현행법령 평가로 나눌 수 있음

2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제6항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및 「통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정책통계기반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통계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필요성

법령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법령을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

제2절

부패영향평가 기준(영 제30조제1항)

- ▣ 부패영향평가 기준은 크게 ‘준수의 용이성’, ‘집행기준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의 3가지 영역으로 분류됨
- 이 중 준수의 용이성은 행정의 수요자(민원인 등) 입장에서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및 ‘특혜발생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집행기준의 적정성은 해당규정이 행정의 공급자(처분권자 등) 입장에서 부패유발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으로 세분화됨
 - 행정절차의 투명성은 해당규정이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해 부패발생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1

준수의 용이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적정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집행기준의 적정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각종 민간협회 등에 정부업무 위임·위탁시 관련 법적근거 및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위탁 목적상 필요시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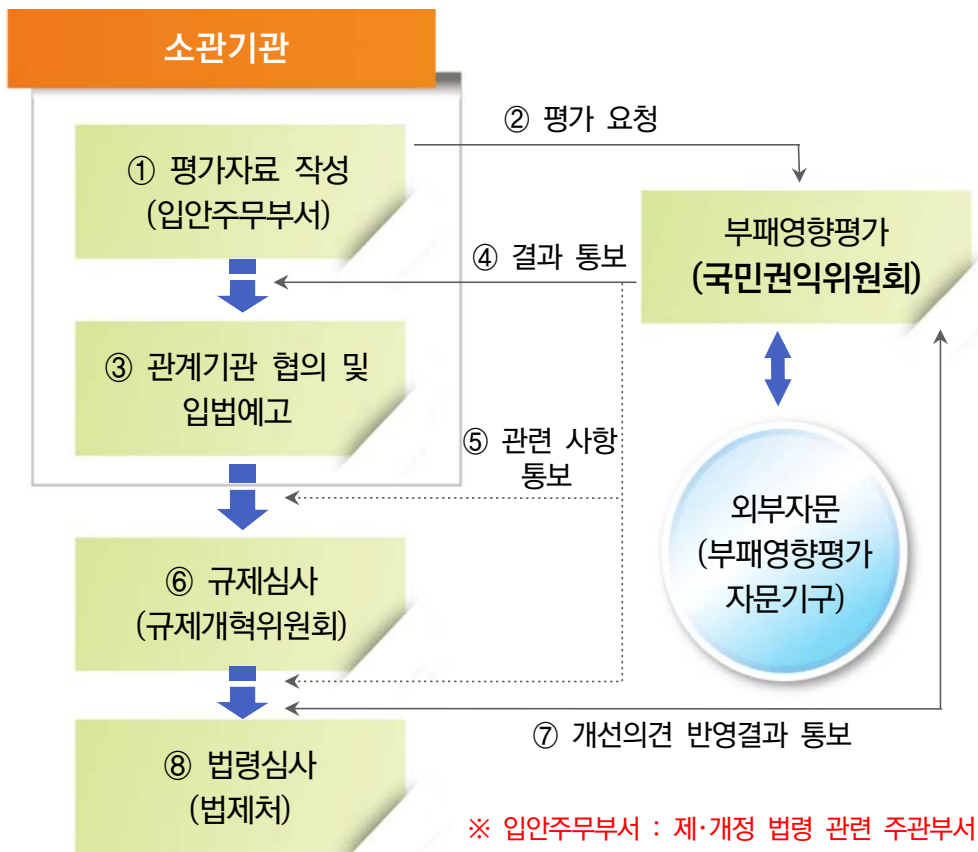
행정절차의 투명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근성 공개성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 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제3절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 ▣ 각 기관은 소관법령의 제·개정시 평가에 필요한 제·개정안 및 기초자료를 첨부하여 관계기관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 ▣ 위원회는 통상적인 입법예고기간인 40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1

부패영향평가 요청

- ▶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법령(안)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첨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평가 요청
 - ※ 평가요청에서 제외되는 법령 : 직제, 국호·국가·연호, 상훈·전례·국경일, 급여·수당, 문서·관인·차량관리 관련법령 등
 - ⇒ 제·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대상 제외법령 통보(부패영향분석과-1592(2011.5.18.) 문서 참조)
 - 개정법령(안)을 평가 요청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함께 첨부
 -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서식('12부패영향평가 지침, p.27)
 - 제정법령(안)을 평가 요청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를 함께 첨부
 - ※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서식('12부패영향평가 지침, p.32)
- ▶ 평가자료의 제출방법은 공문의 경우 전자문서를 이용하고, 공청회·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는 담당자 e-mail 등 활용
- ▶ 법령입안 주무부서는 부패영향평가 요청시 반드시 법령평가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공문 시행
- ▶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법령(안)이 수정·보완된 경우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

2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 ▶ 위원회는 제출된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관계기관협의 단계에서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완료
 - 입법예고기간 내에 평가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연장 가능(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평가)

※ 평가기간 연장사유 : 법령(안)의 지연제출, 제출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 ▶ 위원회는 평가단계에서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
- ▶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제출 법령(안) 및 자료를 토대로 평가 후 결과를 서면으로 소관 기관에 통보(영 제30조제6항)
 - 평가결과는 원안동의·개선권고·철회의견·참고의견으로 세분하여 통보
- ▶ 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영 제32조제1항)
- ▶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 법제처에 통보(영 제32조제2항)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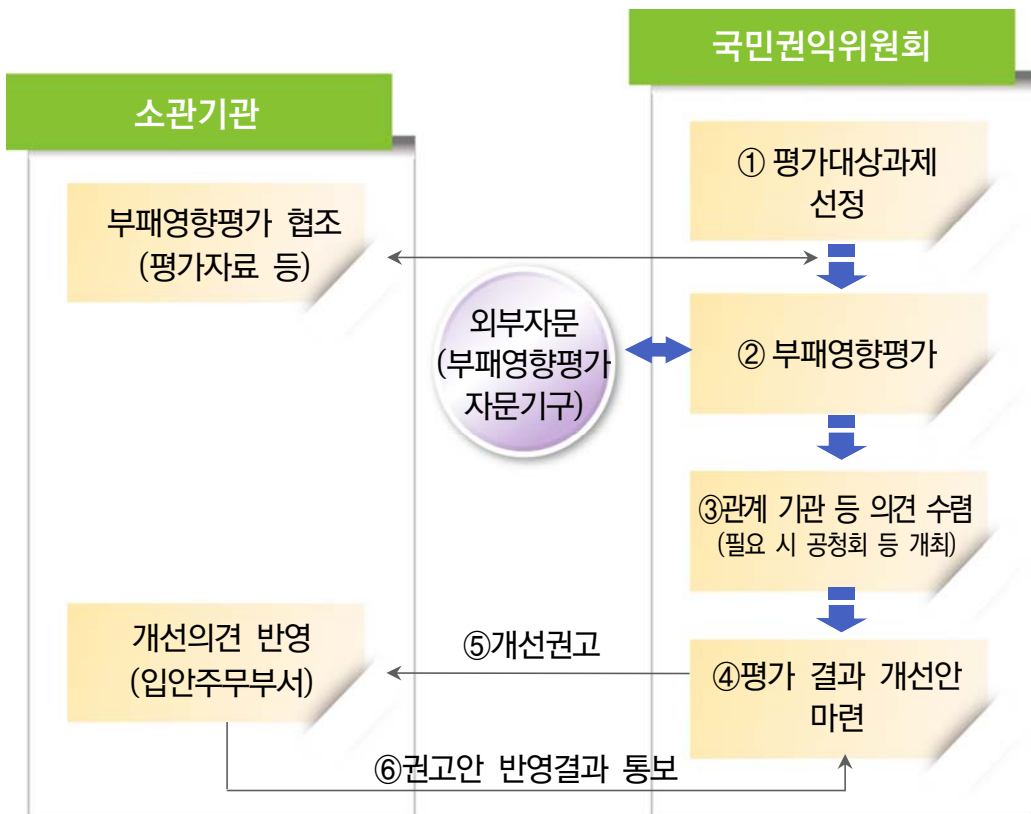
평가결과의 처리

- ▶ 행정기관은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법제처 심사 의뢰 시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 행정기관은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영 제30조제5항)
-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의 시책평가 등에 반영
 -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등

제4절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 ▣ 위원회가 선정한 평가대상과제(법령)에 대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평가자료 등을 제출받아 평가 실시
-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법령의 소관기관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 권고사항을 통보



※ 입안주무부서 : 현행 법령 관련 주관부서

1

평가대상법령 선정

- ▶ 제·개정 법령의 평가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이 해당 법령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 자치법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법령
- ▶ 부정부패·비리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법령

2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 ▶ 위원회는 법령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실시(법 제29조제1항제1호)
- ▶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나 실태조사 등에 대해 성실히 응하고 이에 협조(법 제29조제4항)
- ▶ 위원회는 법령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이해관계인·전문가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법령의 소관기관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통보(영 제30조제4항)

3

평가결과의 처리

- ▶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 ▶ 행정기관은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기한 내에 그 내용 및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영 제30조 제5항)
-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 평가 등에 반영
 -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등

제5절

'14년도 부패영향평가 주요 추진내용

1

'14년도 부패영향평가 총평

2014년도에는 각급기관의 부패영향평가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례집 발간·배포, 워크숍, 사이버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자체 위탁·대행 분야 관련 3개 분야에 대해 현행법령 평가를 실시하여 142건의 개선의견을 권고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기준」 개선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여 새로운 부패유발요인 발굴에 따른 신규 평가 기준 제시를 위한 밑 작업을 완료하였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권고 과제 이행률 평가 결과, 각 기관별 이행률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행률 향상을 위해 평가기반 수준 향상 및 이행점검 강화 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원회는 총 1,889개의 제·개정 법령안을 평가하여 137개의 법령안에서 230건의 개선의견을 도출하여 해당기관에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고, 해당 기관의 수용률은 94.9%로서 2010년 이후 꾸준히 93%이상의 수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현행법령 평가는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을 통한 국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고질적·관행적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자 지방행정 위탁·대행 분야의 법령을 평가하여 142건의 개선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현재 소관부처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자치법규 및 사규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율평가기반 구축여부를 반부패경쟁력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교육청의 모든 기관에서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명문화하였고, 공직유관단체 역시 대부분의

기관에서 사규공개관리규정을 제도화하면서 사규의 제·개정 예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율평가기반을 정착시켰다.

2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내용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중앙부처의 의뢰법령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평가하는 것으로, 2014년에는 평균 처리기간은 15.9일로, 전년 (17.2일) 대비 8.2% 단축하였고, 총 137개 법령안에서 230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여 해당기관에 개선권고를 하였으며,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대한 해당기관의 수용률은 94.9%로 나타났다.

가. 제·개정 법령안 접수·처리 총괄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1,890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의뢰를 받아 1,889개의 법령안을 평가하였고, 그 중 1,752개의 법령안에 대해서는 원안동의로 통보하고, 137개의 법령안에서 230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도출하여 해당기관에 개선·보완하도록 하였다.

《 접수·처리 현황 ('14.1.1.~12.31.) 》

접 수	평가결과 통보			수용률
	원안동의	개선권고	개선권고건수	
1,890개 법령	1,752개 법령	137개 법령	230건	94.9%

나. 분야별 개선권고 현황

법령별(137개)로는 일반행정 관련 법령(61개, 44.5%), 환경·보건 관련 법령(31개, 22.6%)순으로 개선권고가 많았으며, 개선권고건수(230건) 중 46.9%(108건)가 일반행정 관련 법령에서 도출되었다.

《 분야별 개선권고 현황 ('14.1.1.~12.31.) 》

법령	분야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기타
개선권고 법령개수		137	61	11	7	7	13	-	31	7	-
개선의견 건수		230	108	22	7	10	25	-	47	11	-

다. 평가항목별 개선권고 현황

평가항목별로는 3개의 평가영역 중 집행기준의 적정성(119건, 51.7%)에서 개선권고가 가장 많았고, 9개의 평가기준별로는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75건, 32.6%), 제재규정의 적정성(41건, 17.8%), 이해충돌 가능성(28건, 12.2%), 재정 지원 기준의 명확성(28건, 12.2%) 순으로 개선권고가 도출되었다.

《 평가항목별 개선권고 현황 (137개 법령 230건) 》

평가영역	평가기준	개선의견 건수
준수의 용이성 (54건)	준수부담의 적정성	5
	제재규정의 적정성	41
	특혜발생 가능성	8
집행기준의 적정성 (119건)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75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16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28
행정절차의 투명성 (57건)	접근성과 공개성	10
	예측 가능성	19
	이해충돌 가능성	28
합 계		230

3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내용

2014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는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을 통한 국가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가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관련된 분야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행정 위탁·대행 분야 중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고질적·관행적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부패취약분야의 관리감독 시스템 보완 및 관행화된 재정누수 유발 행태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이러한 세부 과제의 부패유발요인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전수조사' 방식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사전 예비조사 단계부터 대안의 발굴과 검증 등 전 과정에 걸쳐 현장의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또한, 해당과제의 법령 분석수준도 법률부터 자치법규까지 수직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직접 근거법령부터 관련 법령까지 수평적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의 질적 수준도 향상시켰다.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와 폭넓은 교차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2014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현수막(옥외광고물) 게시대 사용 시 부과하는 신고수수료의 행정편의적인 징수 등 불합리한 관련 규정과 게시대 수탁업자 선정을 둘러싼 각종 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수탁자 관리방안과 선정과정의 투명·공정성 제고 및 민원인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주는 행정서비스 개선 등 6가지 개선과제를 마련하여, 225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관리부실에 따른 대행료 허위청구, 근로자 임금 편취, 특정업체와의 장기계약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대행료 부당청구 환수 규정 마련 등 예산·계약·평가·사후 관리에 대한 6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생활쓰레기 대행 관련 문제점의 개선과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다.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시 무분별한 위탁대상 확대와 선정과정의 공정성 미흡, 특정 단체의 시설 사유화는 물론 부실운영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대두되는 가운데, 부실 운영·위법행위 수탁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 등 8가지 개선권고를 마련함으로써, 시설안전 및 운영관리 강화와 더불어 청소년육성 활성화 제도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도록 하였다.

4

자치법규 및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및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형식적인 평가 등 실효성의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우리위원회에서는 기관별로 내실있는 자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각 기관 실무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자율평가기반의 구축여부를 반부패경쟁력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각급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및 2014년 최초로 24개 기초자치단체 (인구 50만 명 이상)에 대한 반부패경쟁력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경우 모든 기관(34개 기관)이 부패영향평가 체계를 구축 완료하였다. 반면, 24개 기초자치단체 중 부패영향평가 제도가 명문화된 기관은 16개 기관(조례·규칙 13개 기관, 훈령·예규 3개 기관)이며, 8개 기관은 아직 부패영향평가 제도가 명문화되지 않아 제도의 도입·정착을 위한 적극적 개선의 여지를 확인하였다.

한편, 2014년도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권고 과제의 이행률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3년 28%에서 '14년 58%로, 시·도교육청의 경우 '13년 63%에서 '14년 83%로 전반적인 이행률이 상승하였다. 반면, '14년 최초로 평가를 실시한 24개 기초자치단체는 39%에 그쳐 과제 이행률의 기관 간 편차는 여전히 큰 수준이며, 이행률 제고를 위해 이행점검의 강화 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공직유관단체의 사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령의 위탁을 받아 규정하는 것도 있어 법령과 유사하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제·개정되거나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규공개관리규정의 제도화, 사규의 공개유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규공개관리규정과 제·개정 예고 시스템 등의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14년에는 이를 더 발전시켜 홈페이지 사규 공개 정도, 홈페이지 정보공개 접근 용이성, 사규 입법예고 대상 확정, 부패영향평가 전담부서 지정 제도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그 결과 평가대상 144개 공직유관단체 중 비공개 사유를 제외하고 90%이상 사규를 공개한 기관은 132개 기관(91.7%)으로 대체적으로 높은 공개율을 나타

냈으며, 대부분의 기관(143개, 99%)에서 부패영향평가 전담부서를 사규에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어 부패영향평가 제도 정착률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일반 국민이 사규 내용과 제·개정 현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배치한 우수기관은 52개(36%)에 그쳤으며, 제·개정 예고 대상 사규를 별도로 확정한 기관은 81개 기관(56%)에 그쳐, 정보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2장

제·개정법령 평가 사례

제1절 평가기준별 주요 개선 사례

제2절 행정내용별 사례

제2장은 제·개정법령의 평가 사례를 수록한 장으로, 부패영향평가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우수사례를 수록한 ‘평가기준별 주요 개선 사례’와 신규 업무자 등을 위해 빈발 지적사례를 알기 쉽게 수록한 ‘행정 내용별 사례’로 구성하였음

기 준 별 사 례 정 리

평가항목	평가기준	세부 검토내용	사 례
준수의 용이성 (수요)	준수부담의 적정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 취소 사유 등의 요건이 과도하여 적정하게 변경 지원금 신청 시 과도한 서류 제출 등이 우려되는 규정 삭제 적정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개시시점지가의 예외적인 산정기준 정비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태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밀누설 등 위반사항 처분에 대하여 유사 법률과 형평성을 맞춤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제외대상을 제도의 실효성이 있도록 정비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위원회별로 상이한 민간위원 비율을 조정함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계약 제한대상에서 공공기관과 법인과의 형평을 유지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를 한정하여 특혜발생 가능성 차단 의용소방대 임용방법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개선함
집행기준의 적정성 (공급)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 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 되어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처분 시 그 적용 기준일을 구체화하고, 감경 범위를 설정함 의료기사 면허증 재발급 시 거부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함 문화재 수리기술자 현장배치 예외규정 적용 시 승인 절차 등을 추가함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각종 민간협회 등에 정부업무 위임위탁 시 관련 법적근거 및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 하게 규정되어 있고, 위탁목적상 필요시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대상자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탁업무범위를 법률에서 정한대로 한정함 인증업무 수탁기관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하도록 하고, 인증 업무 권한 위탁 시, 수탁자에게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 하도록 함 위탁 기관을 다양화하고, 위탁기관 설립 시 그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며, 수탁기관·수탁자에게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 하게 하는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 되어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지원 대상, 지원방법·절차 등 세부사항과 사후통제 규정을 마련함 출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환수를 의무화 함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이나 거짓 신청에 대하여 교부결정 취소를 의무화 함
행정절차의 투명성 (절차)	접근성과 공개성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 하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에게 인증기관 현황 등의 정보공개 규정 마련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신청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신청기관(인)으로 하여금 경비 규모를 예측 가능하게 함 보증연계투자 한도 확대에 관한 세부기준을 공개하도록 명시함 환경성 실증과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의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명시 하고, 해촉 규정을 명시함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후임자 위촉 기한을 명확히 함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을 명시 하고,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제1절

평가기준별 주요 개선 사례

1. 준수부담의 적정성
2. 제재규정의 적정성
3. 특혜발생 가능성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5.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6.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7. 접근성과 공개성
8. 예측 가능성
9. 이해충돌 가능성

제1절은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규정된 9가지 평가기준에 따른 주요 개선 사례로, 각 기준별로 선별된 우수사례의 파악을 통해 평가업무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수록

1 준수부담의 적정성

▣ 사례 1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가대상 조문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허가신청시의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5. ~ 7. (생략)

현 황

- ⑦ 국방부에서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 허가 제도를 운영
 - 제조 및 판매업의 시설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업의 시설 기준(같은법 시행령 별표)]

구 분		장비기준 1	장비기준 2	건물면적기준
금속제품류		전동프릭션프레스 3톤 이상	전기파워프레스 2톤 이상	연면적 100㎡ 이상
섬 유 제품류	모 자 류	공업용 고속재봉기(96종 또는 103종) 8대 이상	공업용 고속재봉기(2본침기) 2대 이상	연면적 100㎡ 이상
	계급장류	자동식(다두식) 자수기 또는 직조기	1대 이상	연면적 100㎡ 이상

- ⑦ 아울러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요건에도 허가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운영

군복 및 군용장구 현황

- 군 복 : 군모, 제복, 군화, 계급장, 표지장 및 특수군복
- 군용장구 : 권총집, 구급대, 탄입대, 개인장구요대, 수통, 야전삽, 반함, 천막류, 모포, 침낭, 방탄헬멧, 방탄복, 배낭

문제점

- ⑦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 요건 변경

당 초	개 정(안)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신청시의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⑦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관련 시설(기계·장비 등)의 발전에 따른 동종시설 고도화 또는 현대화 추진으로 시설의 생산능력을 높였음에도 허가신청시의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생산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협의로 해석 시에는 생산시설을 업그레이드 한 이후에도 허가신청시의 시설을 별도로 관리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의견

- ⑦ 허가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허가의 취소 등 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시설을 통한 생산 능력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 허가신청시의 시설능력 또는 허가신청시 시설의 생산 능력 등 일부 보완을 통한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고방안 마련

개선결과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5호, 2014.5.9.)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3. (생략)
4.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5.~ 7. (생략)

▣ 사례 2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2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관할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및 자금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
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단체현황조사서
3.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장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현 황

- ①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가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지원신청 하도록 규정 마련
- ② 관련 단체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은 제출 자료(사업계획서, 단체현황조사서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외교부장관은 사업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고려인동포 :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

국가명	재외동포총계 (A+B)	재외국민				시민권자 (B)
		재외국민계 (A)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합 계(명)	537,889	11,115	454	8,080	2,581	526,774
러 시 아	222,027	6,182	292	3,716	2,174	215,845
그 루 지 아	28	8	-	8	-	20
몰 도 바	126	10	-	10	-	116
벨 라 루 스	1,265	65	5	24	36	1,200
아 르 메 니 아	378	28	-	26	2	350
아 제 르 바 이 잔	163	163	-	118	45	-
우즈베키스탄	175,939	1,639	-	1,560	79	174,300
우 크 라 이 나	13,001	290	23	230	37	12,711
카 자 흐 스 탄	103,952	1,952	109	1,762	81	102,000
키 르 기 즈 스 탄	18,810	610	25	459	126	18,200
타 지 키 스 탄	1,762	130	-	129	1	1,632
투르크메니스탄	438	38	-	38	-	400

(자료 : 2009.5.1. 외교통상부 추정치 인용)

**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현황

구 분	합 계	한인회	한글학교	신 문	경제기업	문 화	교 육	기 타
단체수	1,115	27	412	20	73	86	176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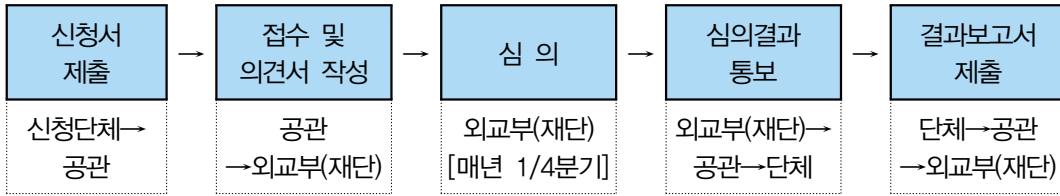
(자료 : 2011년 기준, 재외동포재단)

< ***고려인동포 지원사업(법 제6조) >

제6조(지원사업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
2.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3.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4. 한인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활동 지원
5.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6.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금 신청·확정등 절차>



※ 결과보고서 미제출(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단체는 익년도 지원 지양

문제점

- ⑦ 지원금을 신청하는 단체로부터 과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우려
 - 제정안 제2조제1항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단체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정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 포괄하고 있어 지원금 신청 단체의 준수부담 가중

개선 의견

- ⑦ 신청 단체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구체화 또는 삭제

【 예 시 】

제정안	개선 의견
제2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① (생략) 1. ~ 2. (생략) 3. <u>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u> ② 제1항에 따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장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① (제정안과 같음) 1. ~ 2. (제정안과 같음) 3. <u><삭제 또는 구체적인 규정 마련></u> ② (제정안과 같음)

개선결과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07호, 2014.11.11.)

제2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관할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및 자금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
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단체현황조사서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장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사례 3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가의 산정)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⑥ ~ ⑦ (생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매입가격 인정기관)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결산심의를 받거나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 또는 단체

현 황

- ⑦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부과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법 제8조)
 - ※ 종료시점지가 :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
 - 개시시점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
 - 개발비용 :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 ⑦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의 산정방식 중 개시시점지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법 제10조 제3항)

- 일반적인 산정기준 :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 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
 - 예외적인 산정기준 : 실제의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 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
- ⑦ 평가대상조문(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개시시점지가의 예외적인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기존에 예외적인 산정기준에 해당하던 「지방세법」 제286조부터 제28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을 삭제하는 것임
- 「지방세법」은 2011.1.1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되어 시행되었고, 「지방세법」 제286조부터 제288조까지의 조항은 지방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3조 등으로 이관되어 규정

문제점

- ⑦ 개정안에서 「지방세법」 제286조부터 제28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인 경우를 삭제(특별한 삭제사유는 없으며, 지방세법 분법으로 해당규정 이관에 따른 삭제)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른 법인의 경우에는 개시시점지가를 실제의 매입가격(예외적인 산정기준)이 아닌 개별공시지가(일반적인 산정기준)로 산정하여야하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부동산(토지를 포함)은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입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 개발부담금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개시시점지가가 적은 경우(개별공시지가)에는 많은 경우(실제 매입가격)보다 개발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많음

개선 의견

- ⑦ 개시시점지가의 예외적인 산정기준에 기존에 규정하던 「지방세법」 제286조부터 제288조까지에 따른 법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예 시 】 (시행령 제11조제5항 관련)

개정안	개선 의견
<p>제11조(지가의 산정) ① ~ ④ (생략)</p> <p>⑤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p> <p>⑥ ~ ⑦ (생략)</p>	<p>제11조(지가의 산정) ① ~ ④ (개정안과 같음)</p> <p>⑤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3조, ……의 규정에 따른 법인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법인 장부에 기록된 매입가격인 경우 <p>⑥ ~ ⑦ (현행과 같음)</p>

【 예 시 】 (시행규칙 제7조 관련)

개정안	개선 의견
<p>제7조(매입가격 인정기관) 법 제10조제3항제 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결산심의를 받거나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 또는 단체 	<p>제7조(매입가격 인정기관) 법 제10조제3항제 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개정안과 같음)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3조, ……의 규정에 따른 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결산심의를 받거나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 또는 단체

2 제재규정의 적정성

▣ 사례 1 :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가대상 조문

제16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 ④, ⑥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벌칙) 제1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 황

- ① 보훈기금에서 지출한 대부금의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결손처분 심사에 필요한 사망한 채무자의 가족관계·금융·보험·소득금액 증명·지방세·토지·건물 관련 자료 등의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 ② 이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금융정보 등에 대해 업무용 외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에 대해 처분규정을 신설함

문제점

- ① 위반에 따른 제재수준이 유사 법률과 달라 형평성에 어긋남
 - 개인정보를 취급한 자가 업무용 외 사용·제공·누설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수준이, 위반사항이 유사한 법률에 비해 낮음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선의견

- 위반사항 처분에 대하여 유사 다른 법률과 형평성 유지 필요
 -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의 비밀누설 등에 대한 처분에 있어 유사 법률에 규정된 처분 수준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검토 필요

개선결과

보훈기금법(법률 제11941호, 2013.7.16.)

제16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 ⑤ (생략)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벌칙) 제1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례 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82조의3(상습체불업자의 명단공표 제외대상) 법 제86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이하 “상습체불건설업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폐업한 경우
2. 상습체불건설업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상습체불건설업자가 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습체불건설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4. 상습체불건설업자가 체불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동안 나머지 체불 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법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충분히 소명한 후, 심의위원회가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 황

- ⑦ 부실 건설업체의 고의적인 부도·잠적 등에 의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의 체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하도급 업체와 건설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공기 지연 및 사업비 증가 등으로 발주자 및 국민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음에 따라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시공능력 평가 시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체불 이력을 반영하여 평가토록 하는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개 제도’ 도입

❖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개 제도(법 제86조의4)

- 상습체불건설업자
 - 3년내 대금체불(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이유로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업체
- 의의(제1항 및 제3항)
 - 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시공능력 평가 시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체불 이력을 반영·평가하여 상습체불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
- 명단공개 예외(제1항)
 -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 구체적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심의기구(제2항)
 -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를 둠
- 소명 기회 부여(제3항)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 건설업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

- ⑦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사망이나 실종 등과 같이 명단 공표의 실효성이 없어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마련

문제점

- ⑦ ‘폐업’의 명단 공표 제외로 제도의 실효성 저해 우려
 - 개정안은 상습체불건설업자의 ‘폐업’을 명단 공표 제외 사유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폐업’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아 다수의 건설업 면허중 하나만 폐업을 해도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적·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위장폐업*으로 체불된 대금지급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 ⇒ 단순히 상습체불건설업자가 ‘폐업’만 하면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명단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 위장폐업 : 폐업 후 타인 명의로 영업활동 지속 영위

※ 유사 제도와 비교하여 제재규정 부적정

- 또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제도’와 유사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체불사업자 명단공개 제도)에서는 ‘폐업’을 명단공개 제외사유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 폐업을 명단 공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하지 않음

❖ 체불사업자 명단공개 제외사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

-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체불사업주가 소멸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 체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의견

- ⑦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제외대상에서 ‘폐업’을 삭제

개선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27호, 2014.11.14.)

제82조의3(상습체불업자의 명단공표 제외대상) 법 제86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이하 “상습체불건설업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
2. ~ 5. (생략)

▣ 사례 3 :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4조(구성)

- ① 각급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대학의장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2. 특별징계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하
 3.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9인 이하
- ② (생략)
- ③ 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소속 실장·국장급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교장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 ④ (생략)
- ⑤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장학관·교육연구관·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시·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과 국립학교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원위원이 아닌 사람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대학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4.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5.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⑥ (생략)

제23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 ③ (생략)
- ④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현 황

- ① 민간위원 비율이 징계위원회별로 상이
 - 특별징계위원회: 50% 이상(제4조제3항)
 - 일반징계위원회: 30% 이상(제4조제5항)
 -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 30% 이상(제23조제4항)

구분	특별징계위원회	일반징계위원회	공립대학일반 징계위원회
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국립학교 및 소속기관 시·도/시·군·구 교육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립대학¹⁾
위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15인(위원장 1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9인(위원장 1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9인(위원장 1인 포함)
민간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위원장 포함) 수의 5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위원장 포함) 수의 3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위원장 포함) 수의 30% 이상
심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의 부총장·단과대학장·대학원장 국립학교의 장²⁾ 교육부 근무 교육공무원 교육부 소속기관 및 대학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공립 대학특별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② 민간위원 임기 규정 부재

– 각 징계위원회별 민간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미규정

※ 「공무원 징계령」은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제5조의2)

문제점

① 민간위원 비율이 징계위원회별로 상이하여 교육공무원 간 징계 심의 차별 초래

- 특별징계위원회, 일반징계위원회 및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 각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 당사자의 신분에 따라 서로 관할을 달리하는 것일 뿐 징계위원회별로 민간위원을 참여시키는 취지나 의결 방식이 상이한 것이 아님에도,
- 정당한 차별 사유 없이 징계위원회별 민간위원 비율을 50%와 30%로 차등 규정하여 징계위원회 심의 대상 교육공무원 간에 서로 다른 심의 조건을 적용

② 민간위원 임기 규정 부재로 독립적·적극적 심의 활동 보장 미흡

- 특별징계위원회, 일반징계위원회 및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1)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의 단과대학을 제외(「교육공무원 임용령」 제22조제2항)

2)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를 말하며, 「고등교육법」 제45조에 따른 부설학교를 제외(개정안 제2조제3항제1호)

임기 규정이 없어,

- 위촉권자가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기존 위원을 일방적으로 해임하거나 위촉권자와 뜻을 달리하는 위원을 해촉하는 등 위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

개선의견

- ① 일반징계위원회 및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의 50% 이상으로 규정
- ② 특별징계위원회, 일반징계위원회 및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임기 규정 마련

【참고 입법례】

◆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24556호, 2013. 5. 3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생략)

③ ~ ⑤ (생략)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제5조의2(위원의 임기)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특혜발생 가능성

▣ 사례 1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8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공공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과 해당 임원의 퇴직일 (임원이 수인인 경우 가장 최근에 고용된 임원의 퇴직일을 말한다)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해당 공공기관의 퇴직자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④ ~ ⑥ (생략)

현 황

- ⑦ 해당조문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
 - *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국가·지자체와 계약하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그 자 회사와 하는 경우, 해외사무소 사용물품을 현지조달 할 경우, 비밀리에 계약해야 하는 경우, 국산화 촉진 개발선택품을 구매할 경우, 안전관련 사항 등
- ⑧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입찰비리 근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의 적폐를 바로잡기 위하여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함
- ⑨ 전관예우 유착비리가 발생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법인 또는 퇴직자’와는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제함

* 임원이란, 직함,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대표이사, 이사, 감사,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 실질적으로 임원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포괄함

문제점

- ⑦ 해당 공공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경우 법인은 수의계약 제한 대상이나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여 형평성 저해 문제 발생
 - 개정안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수의계약 발주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있는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하도록
↳ 한전, 석탄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도로공사, NH, 관광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함으로써 법인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반면에 공공기관은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에 특혜 부여
 - ⑧ 임원퇴직일 기준 입법취지에 반함
 - 임원(수의계약 발주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 임원의 퇴직일을 개정안의 ‘임원이 여러명인 경우 가장 최근에 고용된 임원의 퇴직일을 말한다’로 규정할 경우, 아래 예와 같이 가장 최근에 고용되었으나 퇴직일이 먼저 고용된 임원보다 빠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전관예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반함.
- 예시) 현재('14.6.1.) A법인에 근무중인 해당 공공기관 퇴직자
- B임원(퇴직일 '11.12.31, 고용일 '14.1.1.) : 퇴직후 2년5월 경과
 - C임원(퇴직일 '12.12.31, 고용일 '13.7.1.) : 퇴직후 1년5월 경과
- ⇒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C임원이 있음에도 ‘최근고용일’을 기준한 B임원 때문에 계약이 가능한 사례

개선의견

- ⑦ 수의계약 제한대상에서 공공기관과 법인과의 형평성 유지
 - 수의계약 제한대상에 공공기관도 포함하거나,
 - 정책상 공공기관을 제외하려는 경우 제외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규정
- ⑧ (참고의견) 임원퇴직일 기준 재정립
 - 예시) 임원이 2인 이상일 경우 가장 최근에 퇴직한 임원의 퇴직일을 말한다.

개선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445호, 2014.12.8.)

제8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1.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④ ~ ⑥ (생략)

▣ 사례 2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13조의2(택지 공급방법 등) ① ~ ④ (생략)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의 공급 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하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1의2. 국가(국민주택기금 포함),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할 경우

2. ~ 11. (생략)

현 황

- ⑦ 최근 전세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소득 계층별 다양한 품질의 임대주택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시행자의 직접 건설방식은 시행자의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여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불투명함에 따라

* LH공사 부채/부채비율 : '12년 138조(466%)

⇒ LH공사는 국제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해 '부채동결선언'('13.11.4)

< 임대주택 공급계획(준공기준) >

계	건설 임대	국민	영구	공공임대		매입·전세
				공공	민간	
정부11.0만호	7.0	3.8	1.0	1.2	1.0	4.0
LN 8.3 만호	4.8	3.0	0.8	1.0	-	3.5

- ⑦ 민간자금을 활용한 임대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건설기금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

※ 부동산투자회사 인가 현황 (국토해양부 통계자료 2014.4월 현재)

구 분		'14.4	'13	'12	'11	'09	비 고
부동산 투자회사 (개)	계	84	79	72	70	48	
	①자기관리	12	12	15	15	5	
	②위탁관리	43	35	25	21	12	
	**기업구조조정	29	32	32	34	31	
자 산 규 모(조)		12.3	11.4	8.2	8.2	7.6	

- ① 자기관리리츠 : 실체형 회사로 자산관리회사 없이 직접 자산을 투자·운영하는 회사
 ② 위탁관리리츠 : 명목형 회사로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형태가 있으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기업구조조정리츠 : 기업의 채무상환 또는 재무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자산으로 구성하여 설립된 회사

문제점

- ⑦ 개정안은 국가(국민주택기금 포함),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를 정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후 부동산투자회사 임의로 택지용도를 결정할 수 있음에 따라

임대주택공급이 아닌 상가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추첨이나 공개경쟁을 통해 택지를 공급받는 일반 부동산투자회사에 비하여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개선 의견

- 주택건설기금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용도를 임대주택건설로 한정

개선 결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523호, 2014.7.28.)

제13조의2(택지 공급방법 등) ① ~ ④ (생략)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택지개발 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 기관에 공급할 경우
- 1의2.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공급할 경우
 - 가. 국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2. ~ 11. (생략)

▣ 사례 3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3조(임용 등) ① 법 제3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임용하는 부장 이하 대원은 공개모집 하거나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추천에 의하여 임용하고, 기존 대원에 대한 직위변경은 소속의용소방대장의 제청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승인한다.

② ~ ⑤ (생략)

현 황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조
 -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조 각 호의 자격을 지닌 자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
- 제정안 제3조제1항
 - 부장 이하 의용소방대원의 신규임용은 공개모집 또는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의 추천에 의함

❖ 의용소방대원 자격 기준(법 제3조)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문제점

- ⑦ 응시기회 부당 제약 및 불공정 임용 소지
 - ⇒ 제정안 제3조제1항은 모집 대상 인원 전원을 비공개 추천 방식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 유자격자의 응시기회를 부당하게 제약하고,
 -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편향·편파 임용 소지

개선 의견

- ⑦ 의용소방대원 임용방법 개선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 부득이한 경우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보완(공개모집을 통한 임용이 곤란한 부득이한 경우를 명시)
 - ※ 부득이한 사유 예시: 모집공고를 ○회 이상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응시자 전원이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사례 1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별표 8]

운영 중지 명령의 행정처분 기준(제9조의3 관련)

I. 일반기준

1. (생략)

2. 횡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사유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사고 등의 발생 사유의 동기·내용·횡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사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 다. (생략)

II. 개별기준 (생략)

현 황

- ① 별표 8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감경사유 규정
-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2조제4호는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의2(운영 중지 명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운영 또는 청소년활동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 운영 또는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4.(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자세한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 시설 설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생략)

1.~3.(생략)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생략)

문제점

- ⑦ 별표 8의 일반기준 2호는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여 최초적발에 따른 기준일만을 규정하고 있어,
 - 2차·3차 위반을 다루어야 할 경우 그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 기준일 부재로 처분권자의 자의적 기준적용 가능
- ⑦ 일반기준 3호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 하단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 그 감경의 범위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처분권자에게 과도한 재량 부여
- ⑦ 3호 가목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감경의 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 법 제22조제4호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규정
 - 이에 따라 별표 8의 3호가목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로 해석하면
 - 모든 위반행위는 ‘취소’ 사유가 아니면 ‘과태료 감경’ 대상이 되는 불합리 발생

개선의견

- ⑦ 행정처분 적용 기준일 구체화
 - 재차 위반행위 발생에 대한 기준일을 ‘다시 적발된 날’ 등으로 구체화하여 처분권자의 자의적 기준적용에 따른 재량남용 방지
- ⑦ 행정처분 감경 범위 설정
 - 감경의 최대범위를 설정하여 과도한 감경을 위한 로비 등 부패행위 발생 억제
- ⑦ (참고의견) 감경 사유인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의 해석기준 명확화
 -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이라는 수식어 삭제를 통해 처분기준의 합리적 운영 달성

개선결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제58호, 2014.7.21.)

[별표 8]

운영 중지 명령의 행정처분 기준(제9조의3 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횡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사고 등의 발생 사유의 동기·내용·횡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가. 사유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 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사례 2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12조(면허증의 재발급)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 법 제5조제4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된 후 1년이 지난 사람
3. 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사람
4.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재발급 사유가 인정되어도 면허 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반성의 기미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면허증을 재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현 황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의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면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음
- ※ 의료기사 등 :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

면허 취소 사유

- ① 결격사유자(필수적 취소사유)
 - 정신질환자
 - 마약류 중독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의료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1년 이후 재발급 가능)
- ②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 준 경우(1년 이후 재발급 가능)
- ③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한 때(6개월 이후 재발급 가능)
- ④ 면허자격정지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1년 이후 재발급 가능)

- ㉞ 개정안은 의료기사 면허의 무조건적인 재발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발급 사유가 인정되어도
 - 면허 취소 경위, 동기, 반성의 기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발급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청의 재량 기준을 부가적으로 신설

문제점

- ㉞ 면허증 재발급 거부 사유가 모호하고 추상적
 -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면허 취소 경위와 동기”의 사안별 경중(輕重)에 대한 최소한의 해석기준이 없고
 - “반성의 기미”,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는 판단” 등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음
- ㉞ 담당공무원 로비 등 부패유발 가능성 내재
 - 면허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의료기사 등과의 친소(親疎) 관계 등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재발급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우려가 있으며
 - 고의·악의적인 범법자나 누범 우려자 등이 면허를 재발급 받기 위한 담당공무원 로비 등 부패유발가능성 내재

개선의견

- ⑦ 면허증 재발급 거부기준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

【 예 시 】

개정안	개선의견
<p>제12조(면허증의 재발급) ① (생략)</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재발급 사유가 인정되어도 면허 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반성의 기미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면허증을 재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p> <p>〈신설〉</p>	<p>제12조(면허증의 재발급) ① (생략)</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재발급 사유가 인정되어도 <u>다음 각 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증을 재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u></p> <p>1. 두 번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p> <p>2. 법 제5조4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받은 형이 0년 이상인 경우</p> <p>3. 0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p>

▣ 사례 3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현장에의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의 중요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경력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 제2조제1호다목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법 제2조제1호나목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현 황

- ⑦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문화재수리업자는 수리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
 - 현행 제도는 경력에 관계없이 수리기술자 1명을 현장에 배치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 중요문화재 수리의 부실공사 초래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이하생략>

→ 이에 따라 시행령 상에 문화재수리 공사 금액에 따라 수리기술자 경력요건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현장배치 수리기술자의 종류·경력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할 경우'는 예외로 하는 규정 추가함

문제점

- ⑦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 경력요건 예외규정 부적절
 - 중요문화재라고 하더라도 도급계약 당사자 간 합의만 있다면 기술자 경력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되므로, 로비 등을 통해 법조문을 악용하는 사례 발생의 가능성 존재
- ⑦ 일률적인 현장배치 경력요건 기준
 -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경력요건을 정하여 주요문화재의 소규모 보수 공사의 경우 현장경력이 부족한 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될 가능성 존재

개선의견

- ⑦ 예외규정 적용 시 문화재청장 승인 절차 추가
 - 문화재수리의 중요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현장배치 수리기술자의 종류·경력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할 경우, 문화재청장 승인을 얻도록 하여 투명성 제고 필요
- ⑦ 주요문화재에 대한 수리기술자 현장배치요건 강화
 - 국보·보물 등 주요문화재의 소규모 보수 공사의 경우에도 현장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5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 사례 1 :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13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협회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3.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현 황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홍보에서부터 조사·연구·진단·치료까지 결핵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과 단체에 위탁 가능(법 제30조 제2항)

결핵예방법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개정안은 그간 법률에만 명시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행령에 추가하며 조문을 보완

- ⑦ 결핵관리업무 위탁 대상기관은 대한결핵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
 - 결핵관리 관련 상기 업무는 대부분 대한결핵협회에서 위탁 수행
 - ※ 대한결핵협회 : 1953년 11월 6일 창립된 민간단체로 결핵예방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
 - 결핵 및 호흡기질환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계몽·홍보·교육, 결핵 관련 학술의 연구·발표, 결핵예방접종 백신·결핵감염진단시약의 생산·연구 등 수행
 - 결핵환자 조기발견 치료를 위해 전국 29개 검진팀이 이동검진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결핵 치료 및 임상연구를 위하여 서울, 부산, 춘천, 대구에 4개 복심자의원 운영

문제점

- ⑦ 위탁대상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 불명확
 -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전문인력과 능력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담당공무원이 위탁기관을 자의적으로 선정할 우려가 있음
- ⑦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탁 요건을 완화
 - 법 제30조제2항은 위탁 대상을 결핵관리 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일부’로 하고 있으나
 - 시행령 제13조는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치료 등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보다 위탁대상 업무범위를 확대

개선의견

- ⑦ 위탁대상자 중 비영리 법인의 전문인력과 능력의 기준 구체화
 -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의 기준을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⑦ 위탁대상 업무범위를 법률에서 정한 요건으로 한정

예시) ‘업무 전부 또는 일부’ → ‘일부’

【 예 시 】

개정안	개선 의견
<p>제13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회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p>제13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회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 사례 2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가대상 조문

제33조의3(분쇄기 및 감량분쇄기의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분쇄기의 성능 및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분쇄기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분쇄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 ⑦ (생략)

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현 황

-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공산품의 사용에 따라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입·사용·제조·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음 (법 제33조제1항)

- 수입·사용·제조·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한정 (시행령 제23조)
- 금지 또는 제한하는 대상과 내용 등을 고시 (법 제33조제2항)
- ⑦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하수처리구역내 일반 가정이나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중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서는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정하여 사용 가능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환경부 고시 제2013-179호, 2013.12.30.)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인증기관은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를 지정

※ 2014.4.2. 현재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품은 35개

연번	모델명	업체명	제품 인증			전기안전 인증		
			등록번호	고형물배출율	시험기관	인증번호	인증일자	인증기관
1	SNJ 3000B	에스앤제이클린텍(주)	2012-1호 ('12.11.22)	15.6%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JB07051-14001	'14.1.2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	DA-100	(주)지비앤디	2012-2호 ('12.11.22)	16.5%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JM07063-14001	'14.1.0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	FWD 560	(주)신화창조	2012-3호 ('12.12.3)	12.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JU071123-13001A	'14.1.2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4	SNJ 3001B	에스앤제이클린텍(주)	2013-1호 ('13.1.7)	13.6%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JB07051-13001A	'14.1.2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5	DS-100	다이손	2013-8호 ('13.2.13)	19.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JH07733-13001	'13.7.1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6	HS-100B	주식회사 허머	2013-9호 ('13.2.13)	7.1%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JE07030-13001	'13.12.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7	HP22	(주)찬미해피맘	2013-11호 ('13.2.15)	17.5%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SK07044-13001	'13.10.1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8	SL-708D	(주)세인이엔지	2013-16호 ('13.3.7)	13.3%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HH071314-13004B	'13.11.1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9	VS-450f	(주)비바	2013-19호 ('13.3.11)	16.3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JH07731-13001	'13.7.9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0	ISE-1	Kim's 트레이딩	2013-20호 ('13.3.13)	18.7%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파생모델(SE-45)	'13.10.29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1	CL-300	(주)시원리빙	2013-22호 ('13.3.15)	17.9%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JU0791139-13001	'13.9.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2	EG-1 (소멸형)	(주)에코윙	2013-33호 ('13.4.8)	16.6%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HH071537-13001B	'14.1.13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3	NF-1000 (소멸형)	(주)청운하이테크	2013-37호 ('13.4.22)	18.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JM07061-13001	'13.10.3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4	먹개비 (소멸형)	(주)보그린	2013-40호 ('13.5.2)	12.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JH07748-13001	'13.11.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연번	모델명	업체명	제품 인증			전기안전 인증		
			등록번호	고형물 배출률	시험기관	인증번호	인증일자	인증기관
15	ISE-45	Kim's 트레이딩	2013-43호 ('13.5.13)	17.9%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HH071524-13003B	'13.10.29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16	ISE-100	Kim's 트레이딩	2013-44호 ('13.5.13)	18.1%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HH071524-13001B	'13.10.29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17	ISE-200	Kim's 트레이딩	2013-45호 ('13.5.13)	18.7%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HH071524-13002B	'13.10.29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18	DS-66	다이손	2013-49호 ('13.5.13)	13.8%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JH07733-13002	'13.8.19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19	ST-2600	제이씨코퍼레이션	2013-51호 ('13.5.22)	18.5%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JH07751-13001	'13.11.28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20	SL-208	(주)세인이엔지	2013-53호 ('13.5.28)	80.5%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HH071314-13003B	'13.11.1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21	FMM-015	(주)퍼휴먼	2013-54호 ('13.6.3)	14.4%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HH071532-13001B	'13.11.5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22	K1	케이티엘	2013-55호 ('13.6.7)	19%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JU071149-13001	'13.10.24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23	Evolution-100	(주)코엠아이에스이	2013-57호 ('13.6.10)	18.1%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HH071533-13001B	'13.10.29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24	T-250	티지지에스	2013-61호 ('13.6.14)	13.7%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JM07058-13001B	'13.11.8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25	SPZ-3000D	(주)스핀즈 이노베이션	2013-65호 ('13.6.20)	9.8%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HH071529-14002A	'14.1.7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26	SPZ-2000N	(주)스핀즈 이노베이션	2013-66호 ('13.6.20)	10.2%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HH071529-13001A	'13.9.2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27	GB-200	(주)지비앤디	2013-69호 ('13.7.1)	18.7%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JM07063-14001	'14.1.3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28	CL-301	(주)시원리빙	2013-76호 ('13.7.16)	18.5%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JU071139-13001	'13.9.3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29	GB-300	(주)지비앤디	2013-90호 ('13.8.28)	16.1%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JM07063-14002	'14.1.3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30	GSPHSS 2013	(주)거성	2013-91호 ('13.9.26)	13.3%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HH071568-13001A	'13.12.24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31	T-350	티지지에스	2013-94호 ('13.9.26)	13.8%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JM07058-13001B	'13.11.8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32	T-450	티지지에스	2013-95호 ('13.9.26)	14%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JM07058-13001B	'13.11.8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33	TT-W015 (소멸형)	(주)에코티앤티	2013-99호 ('13.10.16)	17.8%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HJ07065-14001A	'14.1.27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34	One Clean	(주)크린베네	2013-100호 ('13.10.16)	17.6%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HA07349-13001A	'13.11.1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35	WKI-3300	(주)오엔씨엑스	2013-102호 ('13.10.29)	12.1%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HA07359-14001A	'14.2.12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⑤ 개정법률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용어를 ‘주방용 음식물분쇄기’와 ‘주방용 음식물 감량분쇄기’로 변경하고, 고시에 규정된 인증제도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

문제점

- ⑦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및 ‘주방용 음식물감량분쇄기’의 인증업무는 가정 내 음식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등을 위한 성능 및 품질확보에 중요한 업무이나,
 - 이러한 인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가 있다고만 규정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위탁하지 아니하여
 -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인증기관인지 알 수 없어 분쇄기의 수입·제조·판매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저하
- ⑧ 행정권한을 위탁 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등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규정이 없어 업무수행의 공정성·책임성이 저해될 우려

개선 의견

- ⑦ 인증업무 수탁기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
- ⑧ 인증업무 등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뇌물죄 등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하도록 규정

【 예 시 】

개정안	개선 의견
제33조의3(분쇄기 및 감량분쇄기의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분쇄기의 성능 및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분쇄기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u>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u> ② ~ ⑥ (생략)	제33조의3(분쇄기 및 감량분쇄기의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분쇄기의 성능 및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분쇄기의 인증업무를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u> ② ~ ⑥ (개정안과 같음)
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u>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u>임직원과 제33조의3제1항 및 제7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 사례 3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18조의2(재보험사업·농업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0조제3항 및 법 제2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게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현 황

- ① 개정안은 재해보험사업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 ① 재해보험사의 관리·감독
- ②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 ③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 ④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 ⑤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 ⑥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
- ⑦ 손해평가사 제도 운영 관리 업무
- ⑧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문제점

- ① 상위 법률에 설립 근거가 없는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업무를 단독으로 위탁하여 특정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제공 소지가 있음

- 재해보험사업의 관리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설정³⁾ 없이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였고, 개정안도 위탁기관을 단독으로 설정

* 「농어업재해보험법」 상의 위탁 근거

- 제20조(재보험사업) ① 정부는 재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해보험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이하 "재보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하 "재보험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5조의2(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2.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3.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4.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5.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
 3.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 제도 운용 관련 업무
 4.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개정안에서 재해보험사업의 관리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농업정책자금관리단’으로만 한정,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위탁으로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음

- ⑦ 행정청의 권한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에 대한 업무 수행의 공정성·책임성 확보장치가 부재

3) 위임입법의 한계 : 「헌법」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

개정안	개선 의견
〈신설〉	제○○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0조제3항 및 제25조의 2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 사례 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가대상 조문

제31조의3(축산물이력관리 등록기준 등) ① 축산물(「가축 및 축산물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공·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축산물이력관리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축산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가 주로 먹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을 가공·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 이력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축산물이력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⑨ 축산물이력관리의 등록절차, 등록사항,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조사·평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현 황

- ① 축산물이력관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기 위해 해당조문을 신설한 것으로, 가공·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축산물이력관리를 하려는 자는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축산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② 제도 장려를 위하여 이력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이력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문제점

- ⑦ 축산물이력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 부재
 -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구체적 대상과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지 않고 있어, 무엇을 어떻게 신청·지급받는지에 대해 알수가 없으며,
 - 지원 자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어 재정지원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곤란

개선 의견

- ⑦ 축산물이력관리 자금 지원에 대해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세부사항 마련
 - 자금의 부정 신청 또는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통제규정 마련

【 예 시 】

개정안	개선 의견
제31조의3(축산물이력관리 등록기준 등) ① ~ ⑥ (생략)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 이력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의3(축산물이력관리 등록기준 등) ① ~ ⑥ (개정안과 같음)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 이력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u>자금 지원에 필요한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u>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7항으로 지원 받은 자금에 대하여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할 경우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사례 2 :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3조(출연금의 지급·관리 및 사용) ① ~ ④ (생략)

- ⑤ 제4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기술원은 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기술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항공안전기술원법 :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ICAO ANNEX)을 충족하고 항공기 제작국 지위에 부합하는 항공기 등의 안전성 인증, 성능시험, 결함분석, 안전기술 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한 “항공안전기술원”의 설립근거 마련

현 황

- ⑦ 제정안은 「항공안전기술원법」 제정('14.11.22.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에 대해 구체적 규정 마련
 - * 항공안전과 관련한 사업범위,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연도별 사업계획서·예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기준
- ⑦ '14년도 항공안전기술센터⁴⁾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출연금이 28억 7천여 억원 (59.5%)으로 전체예산의 과반수 차지

4) '14.11.22. 이후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명칭 변경

〈 '14년도 항공안전기술센터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구성비(%)
수 익	출연금	2,872	59.50
	기타수입(이자 및 수탁사업)	1,768	36.63
	전기이월수입	187	3.87
	합 계	4,827	100.0
비 용	사업비	1,889	39.14
	인건비	2,000	41.43
	경상운영비	785	16.26
	자산취득비	69	1.43
	기타	84	1.74
	합 계	4,827	100.0

- ⑦ 따라서, 국가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출연금⁵⁾은 집행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
- 출연금의 사용용도가 불명확하거나 환수규정이 없는 경우,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다음과 같은 사례 발생

관련 사례

- 도로교통공단이 2012년도 연구·개발사업 목적으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 12억 2천만원 중 사내복지기금에 4억 5천여만원, 운전면허시험장 대부로 납부에 1억 7천여만원 등 총 6억 3천여만원을 부당 사용(연합뉴스, 2013. 10. 21.)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중 약 836억여 원을 부정 사용하였으나, 이중 미환수 금액이 277억 7800만원에 달함(서울경제, 2014. 7. 25.)

5)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이지만 정부가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법령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금전

문제점

- ⑦ 무분별한 출연금 집행을 초래하는 출연금 사용용도 미규정
 - 담당자가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출연금 사용용도를 결정·지원할 우려
 - 또한, 출연금을 지급받는 기관도 지원받은 출연금을 편의에 따라 부당하게 집행할 소지

전문가 자문결과

- ① 법적 예견가능성의 확보 측면
 - 출연금의 사용용도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출연금의 위탁취지에 맞지 않게 금전을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 높음
 - 법률의 부지(不知)는 범죄성립에 참작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출연금 집행 관계자들에게 법적인 예견가능성을 확보해 줄 필요 있음
- ② 관리의 효율성 확보 측면
 - 출연금의 사용용도를 법정화해야 사후관리의 통일성 유지 가능
- ③ 입법기술적 측면
 - 출연금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열거하고 부득이 포괄적 사용항목 인정 시 관계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거나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 필요

- ⑦ 출연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환수규정 미비
 - 출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환수규정 등 별도의 관리·감독수단 미비로 예산낭비 초래

전문가 자문결과

- 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면 원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수할 필요 있음
 - ※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출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된다면 정당한 사업에 충분한 출연금이 지원되지 못하는 결과 발생
- 환수규정이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요건 중 “법률상 원인 흠결”을 입증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현행법상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으로 환수하기 곤란

개선의견

- ⑦ 출연금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출연금 지원·사용의 투명성 확보
- ⑧ 출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환수를 의무화 하는 등 관리·감독수단을 명확히 규정하여 출연금 사후관리 강화

【참고 입법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0조(출연금의 지급·관리 및 사용) ① 해양과기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해양과기원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인건비
2. 연구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연구비용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교육훈련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연구비용
4. 기술기획비, 기술도입비, 기술지도비, 개발보전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비용
5. 그 밖에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해양과기원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해양과기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송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③ ~ ⑥ (생략)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 사용 용도로만 사용하여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출연금의 해당 연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 사례 3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가대상 조문

제20조(지원금의 반환 등) ① 재단의 이사장은 사업수행기관이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금의 감독 및 반환, 채무의 면제, 사업수행기관의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현 황

⑦ 개정안은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한 서민금융총괄기구(⇨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포함한 제반 서민금융 지원사항 규정

*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 휴면예금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업무⁶⁾ 조직을 서민금융진흥원에 통합하고,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재단 이사장을 겸임

⑦ 개정안은 재단이 서민의 원활한 자금조달 등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사업수행기관⁷⁾에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업수행기관이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에 의하여 교부받은 경우, 재단은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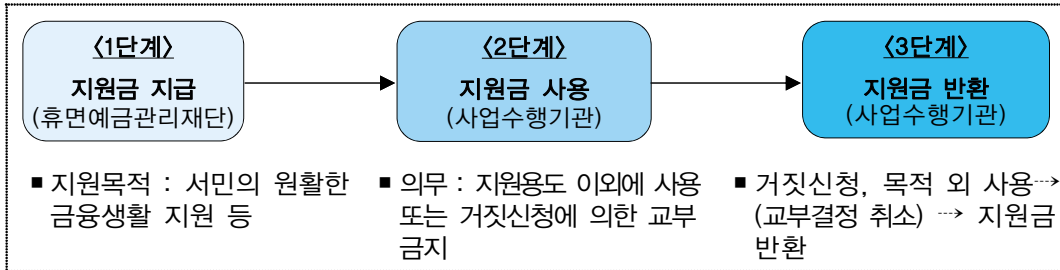
- 지원금 교부결정 취소 시 사업수행기관은 교부받은 지원금을 반환

6) 휴면예금관리재단 업무(안 제7조)

- 1호 : 금융기관이 재단에 출연한 휴면예금의 관리 및 운용
- 2호 :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에 갈음하는 금액 지급
- 3호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대출,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7) 업무분야 : ① 종합상담 및 지원 ② 민간 금융상품 알선 ③ 저리지금 지원 ④ 채무조정 지원 ⑤ 서민 금융 정보집적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금 교부 절차>



문제점

- ⑦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금 교부결정 취소여부 재량
 - 담당자가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소지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한 사업수행기관의 불법로비 우려

개선의견

- ⑦ 사업수행기관이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에 의하여 교부받은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 취소 의무화

【참고 입법례】

◆ 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 수요조사
2.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전시산업 기반조성 사업
3. 국내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 개최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료지원금의 환수) ① 정부는 의료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수할 수 있다.

7

접근성과 공개성

▣ 사례 1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4조의7(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표 7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별지 제23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 청장은 해당 신청인이 시험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지정 관련 자료
2. 영 제4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구가 발급한 시험기관인증서 사본
3. 인증업무를 위한 인력 및 시험설비에 관한 현황
4. 인증수수료(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 포함)에 관한 사항
5.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담배의 밴드 위치측정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6.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담배시료의 추출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인증수수료(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 포함)
4. 담배시료의 추출방법
5. 담배의 밴드 위치측정 시험방법

현 황

- ⑦ 「담배사업법」 개정('14.1.21.)으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며,
 - *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이상 방치할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임을 인증하는 것으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되는 저발화성담배 인증을 말함
- ⑦ 화재방지성능인증을 하는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 제1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일부개정 중) 제4조의4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⑦ 이에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문제점

- ⑦ 지정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 부재
 -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영업을 위해서는 지정된 '화재방지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나,
 - 지정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대한 정보(현황 등)를 공개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등 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개선의견

- ⑦ 지정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현황 등 정보공개 규정 마련

【참고 입법례】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② (생략)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이하 생략)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 ④ (생략)

⑤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업무범위와 관련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안전인증업무 범위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산품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 ④ (생략)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명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 사례 2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거나 인터넷에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게재하여야 한다.

1. 체계건설사업 용지의 위치
2. 노선의 주요 경과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4. 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5. 관계 서류 사본의 열람 일시 및 장소

현황 및 문제점

- ⑦ 법률 제7조제3항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 해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노선이 경유하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과 협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계획안은 공고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 규정
 - 이에 따라 제정안 제7조제2항에서는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지방에서 발간 되는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거나 인터넷에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⑦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 곤란

개선의견

- ⑦ 실시계획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
 - 예시) 열람기간 내 의견서 제출 근거,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 검토 및 통보 등 세부사항 신설

【 예 시 】

제정안	개선의견
<p>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생략)</p> <p>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거나 인터넷에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게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계건설사업 용지의 위치 2. 노선의 주요 경과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4. 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5. 관계 서류 사본의 열람 일시 및 장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p>〈신설〉</p> <p>〈신설〉</p>	<p>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생략)</p> <p>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거나 인터넷에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게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계건설사업 용지의 위치 2. 노선의 주요 경과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4. 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5. 관계 서류 사본의 열람 일시 및 장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p>③ 제2항에 따라 공고·게재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④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실시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 사례 3 :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운영규정 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8조(부동산정책정보 등의 생산 및 제공)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제출 받은 부동산 관련자료를 처리하여 부동산에 대한 과세 등과 관련되는 통계 및 정책정보(이하 “부동산정책정보”라 한다)를 생산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정책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익성과 부동산정책수립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부 칙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5조(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등의 생산 및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받은 부동산관련자료를 가공하여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이하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라 한다)를 생산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익성과 부동산정책 수립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 황

- ⑦ 지방세법 개정(시행 2014.4.2.)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와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이 국토교통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이관(지방세법 제123조,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달기구 설치 등)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국회 법안심사소위 상정중 (2013.12.18) - 종합부동산세를 국세에서 지방세(시·군 및 자치구세)를 변경

- ⑦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각종 과세자료는 국가공간정보센터(국토교통부 소관)에서 관리·운영하면서 각종 부동산정책정보 등의 생산 및 제공하고 있음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문제점

- ⑦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달기구 운영규정을 제정하면서 부동산 정책정보 등의 생산 및 제공(제8조)에서 국민공개 조항 미규정
 -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는 매년 토지 소유구분별 기본 현황 등 37건을 공표 해오고 있었으나,
 -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달기구 운영규정’을 제정하면서 다른 법률인 ‘국가 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하면서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공개조항을 삭제
- ⑦ 위 조항 삭제로 국민의 경제생활과 직결된 부동산관련 정책정보에 대한 공개관련 규정이 없어 국민들의 부동산관련 정책정보에 대한 정보 접근성 및 공개성 저하

개선의견

- ⑦ 국민들의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접근성 및 공개성 제고 방안 마련
 - 부칙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1항 중의 삭제규정을 재검토하거나, 이견 ‘종합 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달기구 운영규정’에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8

예측가능성

▶ 사례 1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6조(국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사실여부와 시험·검사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시험·검사 능력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다만,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으려고 하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정부가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거나, 국제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 능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시험·검사 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시험·검사실적, 설비, 인력 및 시험·검사 능력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④ ~ ⑥ (생략)

⑦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및 법 제1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

수수료 (제24조 관련)

1.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 등 신청
 - 가. 지정신청: 380,000원(전자민원시 342,000원)
 - 나. 변경신청: 190,000원(전자민원시 171,000원)
 - 다. 변경신고: 9,300원
 - 라. 시험·검사기관 운영자 지위 승계 신고: 9,300원
2.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등 신청
 - 가. 지정신청: 현장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국외여비 별도)
 - 나. 변경신청: 현장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국외여비 별도)
 - ※ 국외여비는 공무원국외여비기준에 따라 별도 징구
- 3 ~ 4. (생략)

현 황

- ⑦ 제6조제3항은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지정에 대하여 국내에 위치한 신청기관(인)과 달리 국외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현장조사에 필요한 경비(교통·숙박·현지 체류비 등)가 고액으로 수반되어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이 수익사업임을 감안하여 그 필요경비에 대해 신청기관(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 ⑦ 제24조(수수료)의 [별표 6]은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고 있음

문제점

- ⑦ 해당분야 특성에 맞춰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현장조사에 있어 필요한 경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그 경비가 무엇인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며,
- ⑦ 또한, [별표 6]의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등 신청’에 대한 수수료가 ‘국외 여비는 별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그 필요한 경비가 국외출장 여비(공무원급 수준) 외에 무엇인지가 불명확

개선의견

- ⑦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현장조사에 필요한 경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기관(인)으로 하여금 부담하여야 할 경비 규모에 대해 예측 가능하게 할 필요

【 예 시 】

개정안	개선 의견
<p>제6조(국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p> <p>③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p>	<p>제6조(국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p> <p>③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에 필요한 경비(국외여비 등)는 국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p>
<p>[별표 6]</p> <p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 (제24조 관련)</p> <p>2.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등 신청</p> <p>가. 지정신청: 현장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국외여비 별도)</p> <p>나. 변경신청: 현장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국외여비 별도)</p> <p>※ 국외여비는 공무원국외여비기준에 따라 별도 징구</p>	<p>[별표 6]</p> <p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 (제24조 관련)</p> <p>2.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등 신청</p> <p>가. 지정신청: 380,000원(전자민원 시 342,000원)</p> <p>나. 변경신청: 190,000원(전자민원 시 171,000원)</p> <p>다. 변경신고: 9,300원</p> <p>※ 국외여비는 공무원 국외여비기준에 따라 별도 징구</p>

▣ 사례 2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19조의8(보증연계투자)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보증연계투자 금액은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현 황

- ⑦ 개정안은 보증연계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창업 5년 이내 개별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30억원 범위 내에서 기 신용보증**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근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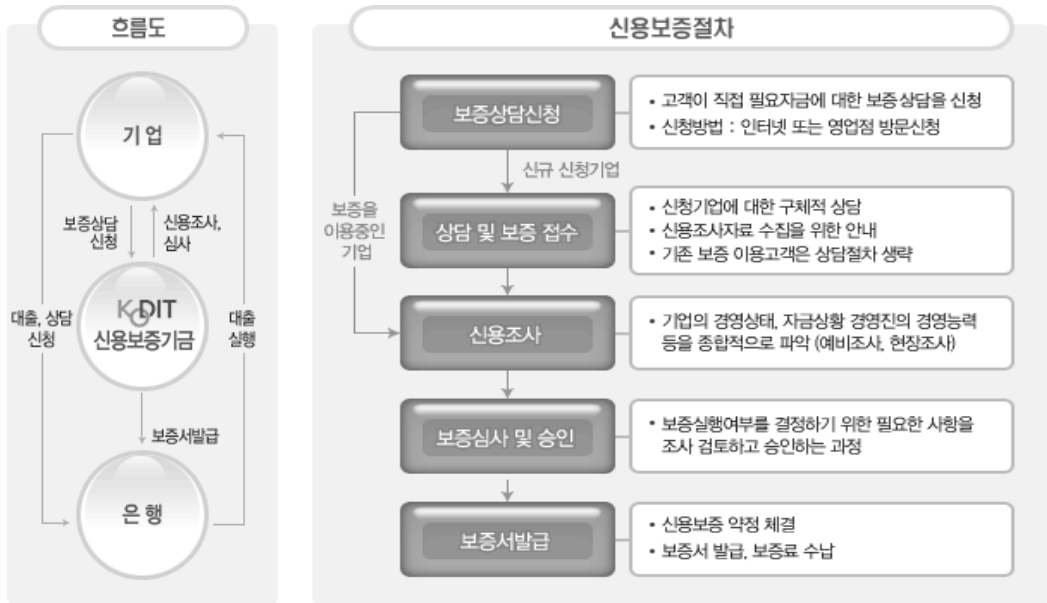
*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사채 등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것(법 제2조제9호)

** (신용보증)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보증연계투자

- (도입시기) 기보 : '12년 6월 / 신보 : '14년
- (투자규모) 기보 : 400억원 / 신보 : 300억원 (향후 시장수요 등을 감안, 각각 500억원 규모로 확대 계획)
- (총투자한도)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으로 확대
* '12년말 기준, 신보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은 약 6.3조원
- (투자한도) 동일기업당 30억원이나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既) 신용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지원 허용

**** 신용보증**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성장유망한 기업 지원



문제점

- ① 개정안은 보증금액 이내로 제한된 개별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금액한도 확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세부기준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개별기업의 정보접근이 차단되는 등 투명한 행정 저해
 - ② 또한, 개별기업 투자한도를 결정하는 구체적 기준* 등을 사전에 알기 어려워 투자대상 기업의 로비 및 특혜발생 소지
- * (예)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 최근 3개년(설립후 3년 미만의 경우 2개년)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

개선의견

- ① 보증연계투자 한도 확대에 관한 세부기준을 공개하도록 명시

【예 시】

개정안	개선 의견
<p>제19조의8(보증연계투자)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보증연계투자 금액은 창업 5년이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19조의8(보증연계투자)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보증연계투자 금액은 창업 5년이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위하여 <u>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u>를 제외하고는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p>

▣ 사례 3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22조의11(표시·광고 실증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의11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 실증의 대상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표시·광고 중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광고로 한다.

② 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제출하여야 하는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③ 제조업자등이 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라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현 황

- ⑦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에 대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 (법 제16조의10제1항)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 ⑦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한 표시·광고 중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법 제16조의11제2항)
 -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제조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법 제16조의11제3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24.] [시행일 : 2014.9.25.]

제16조의11(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제조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한 표시·광고 중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이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제조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증의 대상, 자료의 범위 및 요건,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24.] [시행일 : 2014.9.25.]

문제점

- ⑦ 개정안 제22조의11제1항에서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대상을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표시·광고 중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광고'로 규정하였으나,

- 이는 법 제16조의11제2항의 '제조업자등이 한 표시·광고 중 제품의 환경성과

- 관련한 사항이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단순히 풀어서 설명한 것에 불과함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표시·광고의 정의를 규정하지 않아 제조업자등의 예측 가능성 저하
 -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표시’와 ‘광고’에 대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마련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는 실증대상 관련 조문에 표시·광고의 매체나 수단을 구체적으로 규정

개선의견

- ⑦ 제품의 환경성을 실증해야하는 표시·광고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 표시·광고의 매체나 수단을 규정

【 예 시 】

개정안	개선의견
<p>제22조의11(표시·광고 실증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의11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 실증의 대상은 제품의 <u>환경성과 관련한 표시·광고</u> 중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광고로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22조의11(표시·광고 실증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의11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 실증의 대상은 제품의 <u>용기·포장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의 매체나 수단에 의한 표시·광고</u> 중 제품의 <u>환경성과 관련하여</u>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광고로 한다.</p> <p>② ~ ③ (개정안과 같음)</p>

9

이해충돌 가능성

▣ 사례 1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 나.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 라. 법 제45조에 의해 자격시험을 위탁받은 시험시행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 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 사. 그 밖에 부동산·금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현 황

- ⑦ 「공인중개사법」(법률 제12374호, 2014.1.28 일부개정, 2014.7.29. 시행)은 기존의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개편하여 공인중개사 시험 이외에 중개보수, 부동산 중개업 육성, 손해배상책임보장 등 중요사항까지 심의토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법 제2조의2)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⑧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규정(법 제6조제2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안전 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문제점

- 개정안은 중개보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 국민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함에 불구하고,
 - 심의과정에서 학연·혈연·지연 등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없어 위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음
 - 심의과정에서 위원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에 대한 사후적 통제장치가 없음

개선 의견

- 심의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배제할 수 있는 제척·기피·회피제도 명시
- 위원 스스로 회피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의 해촉 규정 명시

【 예 시 】

개정안	개선 의견
<p>〈신설〉</p>	<p>제0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p> <p>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당해 위원은 해촉될 수 있다.</p>

▣ 사례 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1조의4(임기)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현 황

- ⑦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고용보험 위원회를 운용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고용보험법 제7조 제2항)

- ▶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 ▶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 ▶ 보험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 ▶ 고용보험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결과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위원장이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⑦ 고용보험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근로자, 사용자, 정부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동수를 이루도록 20인 이내에서 위촉함

문제점

- ⑦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연임의 제한을 두지 않아 지속적으로 위촉될 경우 장기간 재직할 수 있으며,

- ⑦ 위원의 임기 만료 시 후임자를 위촉해야 하는 기한 없이 후임자가 위촉될 때 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임기의 제한 없이 재직할 수 있음
- ⑦ 이로 인해 고용보험료율의 결정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기간 재직에 따른 이해충돌 발생 소지

개선 의견

- ⑦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마련
- ⑦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의 결원 시 후임자를 위촉해야 하는 기한 설정

【 예 시 】

개정안	개선 의견
<p>제1조의4(임기)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신설〉</p> <p>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p>	<p>제1조의4(임기)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차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② <u>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원이 결원되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u></p> <p>③ (개정안 제2항과 같음)</p>

【 참고 입법례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결원되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장 또는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새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개시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사례 3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7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운영)

- ①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학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과정 전문가, 학습이론 전문가, 각급 학교 교사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선행학습의 범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련학회에 문의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2.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대학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시·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 황

- ⑦ 제정안 제7조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⑧ 제정안 제8조는 법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법 제11조)

- 의의(제1항)
 -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육부장관 소속 행정위원회
- 위원 자격(제6항)
 -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대학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 임기(제7항)
 - 2년(1차 연임), 공무원인 위원은 직위 재직 기간
- 심사·의결 사항(제2항)
 - 국가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 심사·의결의 효력(제4항)
 - 교육부장관은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함
 -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함

문제점

- ⑦ 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부재
 - 위원회는 국립학교 및 대학 등(이하 “교육관련기관”이라 함)의 선행학습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법 제11조제2항),
 -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에 시정 또는 변경처분을 하므로(법 제14조제1항),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교육부장관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며(법 제11조제4항),
 -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행정처분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재정지원 중단·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어(법 제14조제3항),
 -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학생의 학습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일반 국민의 학습할 자유(평생교육 등)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위원회 위원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것이 요구되나,
 - ⇒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 개인의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 심의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결여
- ⑧ 부정·불법 위원 배제 및 제재 규정 부재
 -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교육부장관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제정안 제13조제1항),
 - 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토대로 관련된 조사를 수행하여 행정처분 및 이의신청의 적절성을 심의하고(제정안 제14조제2항)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므로(제정안 제15조제1항),
 - 위원회 위원이 이의신청 사건 조사·심의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로비를 받고 부정·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음에도,
 - ⇒ 부정·불법 위원을 사전에 심의에서 배제하거나 사후에 처벌하여 위원회 심사·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 미비

개선의견

《시행령 개정 사항》

- ① 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 ② 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 위원 결격사유 및 해촉 규정 마련

《법률 개정 사항》

- ③ 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 추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 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규정(제6조제2항제4호)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련 사항 신설(2014. 3. 6.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안 제8조의2제1항)
- 직무 관련 비위 사실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위원에 대한 면직·해촉 기준 마련 의무화 규정 신설(2014. 3. 6.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안 제8조의2제2항)

❖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2012. 12. 31.)

-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pp. 362~363)

제2절

행정내용별 사례

1. 재정지원·보상
2. 제재
3. 위임·위탁
4. 심의·심사
5. 인·허가, 지정, 등록 등
6. 계약

제2절은 자주 지적되는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행정내용별로 분류한 것으로, 문제점 도출을 위한 착안 포인트를 함께 수록하여 부패영향평가 업무를 처음 접하는 신규 업무자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수록

1 재정지원·보상

▣ 사례 1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가대상 조문

제19조 (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재개)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우 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송환된 유해를 억류지로 재반출 하거나 재반출 하려고 기도한 경우
5.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평가항목

- ⑦ 제재규정의 적정성(1-2)

현 황

- ⑦ 국가는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 의무
 - 귀환포로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등급별로 등록·지원
 - 등록포로에 대한 전역 특례 및 특별진급
 -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 위로지원금, 특별지원금, 주거지원, 의료지원, 취업지원 등
- ⑦ 등록포로에 대한 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재개 및 벌칙 운영
 - 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 :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의 죄를 범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이 확정된 경우,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

- 기망·협박·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징역·벌금 등

※ 등록포로 80명(생존 45명), 억류지출신 가족 약 100세대

문제점

- 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를 등록포로의 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 요건에 추가하면서,
- ② 중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에 추가 (본건 제19조 제1항 하단)
 - 본건 제20조(벌칙)에서는 강행규정 사항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등록포로로서의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규정된 행위로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한다.
- ③ 같은 법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벌칙조항에서는 강행사항으로 규정된 사안을 재량사항으로 규정, 제재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

개선 의견

- ① 신설되는 제19조 제1항 제5호에 대하여는 그 대우 및 지원이 중지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강행규정)
- ② 조문 또한 제20조와 같이 조정하여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예 시】

개정안	개선 의견
<p>제19조 (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재개)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우 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p> <p>1.~ 3. (생략)</p> <p>4. 송환된 유해를 억류지로 재반출 하거나 재반출 하려고 기도한 경우</p> <p>5. <u>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u></p>	<p>제19조 (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재개)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우 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u>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우 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u></p> <p>1.~ 3. (생략)</p> <p>4. 송환된 유해를 억류지로 재반출 하거나 재반출 하려고 기도한 경우</p> <p>5.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u></p>

▣ 사례 2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23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3조에 따라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아니 하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한 사람
 2. 이미 신고된 자를 신고한 사람
 3.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② ~ ③ (생략)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평가항목

- ⑦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접근성과 공개성(3-1)

현 황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행정기관에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
 - 제정안에서 포상금의 지급 금액과 대상의 범위를 설정하고, 포상금 지급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

신고포상금 지급액과 대상 범위

- ① 지급한도
 - 불법행위자 신고 건당 50만원
 - 한 사람이 연간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200만원
- ② 지급제외
 -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밭농업에 종사한 사람
 - 이미 신고된 자를 신고한 사람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문제점

- ❶ 포상금의 지급제외 대상자 결정이 자의적으로 행사될 소지
 - 제정안 제23조제1항에서 신고포상금의 지급제외 대상자를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지급제외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추상적·다의적으로 규정하여 집행과정에서 재량이 자의적으로 행사될 우려
- ❷ 포상금의 지급방법과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장치 부재
 - 신고포상금을 받으려는 이해관계자 등에게 지급방법과 절차에 관한 정보 접근과 업무처리과정에서 의견을 받는 등 정보제공 또는 국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규정

개선 의견

- ❶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자 설정 규정을 구체화·명확화
- ❷ 포상금 지급방법과 절차 규정의 접근성·공개성 확보

개선결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918호, 2014.12.30.)

제23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3조에 따라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한 사람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로 이미 신고된 자를 신고한 사람
 3.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대상자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준 해당 농지소재지의 거주자
 5. 신고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② 제1항에 따라 한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200만원으로 한다.
- ③ 포상금은 해당 연도의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사례 3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가대상 조문

제 24 조의4 (이주사업) ① 공원관리청은 환경오염 예방, 탐방질서 유지, 경관 보전 등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계획으로 공원구역 내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한 후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평가항목

- ⑦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2-3)

현 황

- ⑦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원구역 내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한 후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문제점

- ⑦ 이주정착금의 지원 기준 및 지원액에 대한 규정이 부재
 - 수급자 선별 및 지원 금액에 대하여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집행할 소지가 있음
 - 지원금 수령을 위한 담당공무원과 민간인의 결탁 등 부패발생 가능

개선의견

- ⑦ 이주정착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 지급 기준을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 마련

【 예 시 】

개정안	개선 의견
<p>제18조 (용도지구)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 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 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공원자연환경지구</p> <p>가. ~ 자. (생략)</p> <p>차.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외 지역에 <u>한시적으로</u>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p> <p>카. 해안·섬지역에서 탐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u>한시적으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p>3. ~ 6. (생략)</p> <p>7. 공원해상휴양지구</p> <p>가. ~ 나. (생략)</p> <p>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에 따른 수상레저 활동에 필요한 시설로서 <u>한시적으로</u> 운영되는 시설과 행위</p>	<p>제18조 (용도지구)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 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 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공원자연환경지구</p> <p>가. ~ 자. (개정안과 같음)</p> <p>차.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외 지역에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u>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건축을 설치하는 행위</p> <p>카. 해안·섬지역에서 탐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p>3. ~ 6. (개정안과 같음)</p> <p>7. 공원해상휴양지구</p> <p>가. ~ 나. (개정안과 같음)</p> <p>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에 따른 수상레저 활동에 필요한 시설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u> 운영되는 시설과 행위</p>

2 제재

▣ 사례 1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별표 1]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생략)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 ~ 라. (생략)
2. 개별기준 (생략)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기준)

1. 일반기준
 - 가. (생략)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 다. ~ 라. (생략)
2. 개별기준 (생략)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현 황

- ⑦ [별표 1] 제1호나목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 규정
- ⑦ [별표 2] 제1호나목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로 규정

문제점

- ⑦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기준 부적정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의 가중 처분 적용 기준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와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로 할 경우,
 -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이 있기까지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하며,
 -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늦추거나 무마하기 위한 로비 등 부패행위 발생 우려

개선의견

- ① [별표 1]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 기준을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규정
- ② [별표 2]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적용 기준을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규정

개선결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526호, 2014.7.28.)

[별표 2]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제2호다목1) 및 라목1)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그 밖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일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 라. (생략)

2. 개별기준 (생략)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기준)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 중 법 제16조 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그 밖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다. ~ 라. (생략)

2. 개별기준 (생략)

▣ 사례 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별표 10]

행정처분의 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 라. (생략)

평가기준

- ① 제재규정의 적정성(1-2)

현 황

- ①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이 일정 요건을 위반한 경우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할 수 있음
- ② 위반행위를 한 시험기관이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중 부과하도록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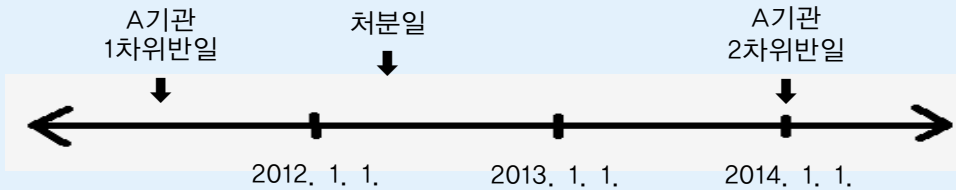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 대상 행위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② 업무정지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한 경우
-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④ 시험기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⑤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 ⑥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 외의 시험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문제점

- ⑦ ‘최근 2년간’이라는 기간산정의 기준을 같은 ‘위반행위를 행한 날’로 볼 것인지, ‘행정처분을 한 날’로 볼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행정처분의 어려움 발생
 - 기간산정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이 다른 경우 행정처분의 가중을 피하기 위한 로비 등 부패발생 우려

(예시) A기관이 2차위반을 행한 경우



- ⇒ ① ‘위반행위를 행한 날’로 해석할 경우 : 1차위반으로 처분
- ② ‘행정처분을 한 날’로 해석할 경우 : 2차위반으로 처분

개선의견

- ⑦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행정처분을 한 날’, ‘위반행위가 있는 날’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개선결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582호, 2014.12.24.)

[별표 10]

행정처분의 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을 완전히 이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1차 위반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 (생략)

2. 개별기준 : (생략)

▣ 사례 3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별표 7]

제조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제10조제1항 관련)

위반내용	관련법규	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4차 위반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지정 또는 신고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등록·지정취소			
2.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2호	등록·지정취소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제조, 수리 및 증명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이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3호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등록·지정취소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 설비 등이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4호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등록·지정취소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 신고 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5호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등록·지정취소
6.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6호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등록·지정취소	

평가항목

- ①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현 황

- ⑦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14.1.21.)되면서 대통령령의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⑦ 해당조문은 법률 제13조제2항에서 위임된 제조업자 등의 등록 또는 지정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및 업무의 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문제점

- ⑦ 위반횟수의 산정기준 부재
 -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으로서 위반횟수에 따라 처벌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위반횟수의 기간을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산정할 우려가 있음

개선의견

- ⑦ 위반횟수의 산정기준을 규정
 - 위반횟수의 산정기준을 규정하는 일반기준 마련
 - ※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할 때에는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일반기준에서는 위반횟수의 산정방식, 가중 및 감경처분 기준 등을, 개별기준에서는 위반내용별 처분 기준(위반횟수별)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개선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923호, 2014.12.30.)

[별표 6]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와 횡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나.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개별기준

위반내용	관련법규	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4차 위반시
1. (생략)	(생략)	(생략)	(생략)		

3

위임·위탁

▣ 사례 1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가대상 조문

- 제37조(협업지원사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협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을 선정(이하 이 절에서는 “협업기업”이라 한다)하여 제39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업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항목

- ⑦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2-2), 제재규정의 적정성(1-2), 이해충돌가능성(3-3)

현 황

- ⑦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부족한 역량을 상호간 협력·보완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간 협업지원사업』을 운영
- ⑦ 개정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협업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협업사업지원 시에 승인제도를 선정으로 변경하고, 협업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 ⑦ 협업사업지원 시 승인제도의 폐지 및 협업기업 선정으로 제도 변경에 따라 현행 제38조(협업사업계획의 승인취소)를 삭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협업사업계획의 승인취소) ① 중소기업청장은 승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39조에 따른 지원을 끝낼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제37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업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3.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협업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⑦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규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제29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이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문제점

- ⑦ ‘협업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대상 및 범위 추상적
 - 개정안은 협업지원사업의 위탁 대상기관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위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도 무분별하게 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 내재
- ⑦ ‘협업기업’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로 제도의 실효성 저해 우려
 - 협업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등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협업기업으로 선정 후 협업자금의 전용 등 도덕적 해이(부패)가 발생하여 협업지원사업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

※ 유사제도와 비교하여 제재규정 부적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는 지정취소 규정 및 환수(지원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개정안에서 협업기업 선정 취소 및 중단 지원 등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다른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하지 않음

㉠ ‘협업지원사업’ 사무 위탁기관의 공정성·책임성 담보 장치 부재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34호(중소기업간 협업사업지원 운영요령, 2014.7.1)는 협업사업지원의 사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지정하고 있어 법률 제83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위탁기관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지원사업’ 위탁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조사·검사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중소기업의 불법행위가 목인될 우려가 있고, 협업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으로부터 향응·뇌물을 받는 등 관리업무 위탁에 따른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부재

❖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지원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10. “전담기관”이란 협업사업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업 전문인력 양성, 협업사업계획 승인 사업자 지원, 협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협업 성공사례 발굴·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말한다.

11. ~ 12. (생략)

개선의견

- ⑦ ‘협업지원사업’ 사무 위탁의 범위 및 대상 구체화
- ⑦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된 ‘협업기업’에 대한 선정취소 규정 신설
- ⑦ ‘별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에 협업지원사업 사무 위탁 대상 관련 기관·단체 추가

개선결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38호, 2014.6.3.)

제39조(협업사업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협업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인력양성
3. 기술개발자금 출연
4.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5. 공동 법인 설립에 등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협업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의2(협업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 ① 중소기업청장은 협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중소기업자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하 “협업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업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협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상적인 협업 추진이 어렵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업기업의 선정 및 선정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협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협업지원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39조의4(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① 중소기업청장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9조의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생략)

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 ② 제29조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임원과 직원
 2. 전담기관에서 협업지원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과 직원

☐ 사례 2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가대상 조문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 ③ (생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니터링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평가항목

- ⑦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1)

현 황

- ⑦ 담배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 겉면 및 담배광고에 경고문구, 발암성물질, 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여야 함

경고문구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
발암성물질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크로라이드, 비소, 카드뮴
금연상담전화번호	1544-9030(현재)

- 개정안은 추가적으로 흡연의 유해성 또는 담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담뱃갑에 부착하도록 규정
 - ※ 상기 내용을 표기하지 않거나 다른 문구 등을 표기한 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⑦ 경고문구 표기여부 관련 모니터링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문제점

- ⑦ 전문기관 분야가 미규정
 - 경고문구 표기여부 모니터링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정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기관 대상 분야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후보기관의 예측가능성이 저하
- ⑦ 전문기관 세부요건이 불명확
 - 전문기관 지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요건과 절차를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아 대상기관이 자의적으로 선정될 우려

개선 의견

- ⑦ 전문기관의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
 - 예시) 금연 또는 국민건강증진 관련 분야 전문기관 등
- ⑦ 전문기관 세부요건을 하위법령(보건복지부령)에 구체화하도록 규정
 - 전문기관 지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

【 예 시 】

개정안	개선 의견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 ③ (생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니터링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u>전문기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u>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 ③ (생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니터링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과 관련한 전문기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u>

☐ 사례 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가대상 조문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 ⑦ (생략)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발생 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2. 감염병의 발생 감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평가항목

- ⑦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1), 예측가능성(3-2)

현 황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발생의 의학적 감시를 위해 질병의 특성과 지역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최근 3년간 표본감시기관 지정 현황>

(단위 : 개)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10월
민 간	1,634	1651	813	829
보건소	253	254	254	255
계	1,887	1,905	1,067	1,084

- 표본감시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해 협조
 - ※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
- 개정안은 종전에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표본감시기관 취소사유를 법률에 상향

※ 2014년 표본감시기관 지정 기준(질병관리본부 내부지침)

대상 감염병	세부 종류	지정기준 내용	
인플루엔자 (제3군감염병)	인플루엔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과 가정의학과 	
기생충감염병 (제5군감염병)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건강관리협회 ※ 학회는 실태조사실시 	
지정 감염병	C형간염	C형간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인구 20만 명당 1개소 ※ 특수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등) 제외 	
	수족구병	수족구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아과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급종합병원
	성매개감염병 (5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 피부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있는 (1·2차) 의료기관 인구 10만 명당 1개소, 인구 10만 미만 시군단위는 보건소만 지정
	의료관련 감염병(6종)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인구 50만 명당 1개소 (100개)
	장관감염증 (20종)	세균성장관감염증(11종) 바이러스성장관감염증(5종) 원충성장관감염증(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내과 진료과목 표방) 인구 25만명당 1개소
	급성호흡기 감염증 (10종)	세균성감염증(3종) 바이러스(7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인구 50만 명당 1개소 (100개)
	해외유입 기생충감염증 (11종)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생충학 교실이 있는 의과대학 및 의과대학병원
엔테로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enterovirus) 감염에 의한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소아과 진료과목 표방) 인구 25만명당 1개소 	

문제점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표본감시기관이 감염병 발생 감시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최근 3년간 표본감시기관 지정취소 현황>

(단위 : 개)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10월
표본감시기관	187	125	121	43

※ 지정취소 사유별 현황자료는 없음

- ‘게을리’라는 용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그에 대한 해석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 ‘감염병 발생 감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지정대상 기관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짐

개선의견

- ⑦ 지정취소 사유 중 ‘게을리 하는 경우’를 구체화
 - 보건복지부의 표본감시 관련 자료 제출요구 및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 요청 불응 등
- ⑦ 지정취소 사유 중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
 - 의료기관 폐업, 요양기관 형태변경 등 사례별로 분류
 - ※ 지정 취소 대강의 근거는 법률에 두되, 세부사항을 하위법령(보건복지부령 등)에 위임하는 방안 검토

【 예 시 】

개정안	개선의견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 ⑦ (생략)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 ⑦ (생략)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개정안	개선 의견
<p>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염병의 발생 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2. 감염병의 발생 감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 <p>〈신설〉</p>	<p>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본감시 관련 자료 제출요구와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2.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감염병의 발생 감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사례 4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6조의2(공영자전거의 운영 사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 자전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의2에 따른 사용료 및 그 감경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③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평가항목

- ⑦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현 황

- ⑦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법 제10조의2, '14.4.29 시행)
 - ※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⑦ 법 개정에 따라 공영자전거의 운영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후속 시행령을 개정(시행령 제6조의2)
 - 자치단체장은 공영자전거 운영을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 위탁에 따른 사용료 및 그 감경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공영자전거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문제점

- ⑦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추진에 따른 위탁대상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의 불명확성에 따른 부패유발 가능성
 - 공영자전거 위탁운영을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만 규정
 - 구체적인 해당분야, 분야별 전문성, 법인 또는 단체의 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의적 해석과 공개성·접근성 부족 등으로 부패발생 가능성 상존

개선의견

- ⑦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위탁 운영 대상이 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준·세부요건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구체화

개선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324호, 2014.4.28.)

제6조의2(공영자전거의 운영 사업)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2. 공영자전거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사례 5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가대상 조문

제29조(협회) ① (생략)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략)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생략)

③ ~ ⑦ (생략)

제3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협회의 장,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평가기준

⑦ 이해충돌 가능성(3-3)

현 황

⑦ 개정안은 해외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의 권한 등의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산림조합중앙회, 해외농업개발협회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 위탁사무 및 위탁받는 기관 현황

▶ 보조·용자사업

- (보조)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조사비용, 인력양성 비용, 국제협력·기술 교류 비용 등의 타당성 검토

〈연도별 보조사업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사업비	20	20	17	18	

- (용자) 해외농업·산림개발사업자, 투자회사, 투자전문회사 등에게 지원하는 용자 신청 검토, 담보평가 등 업무 일체

〈연도별 용자사업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사업비	252	300	349	300	

- ▶ 연구 등 사업 :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 협력 사업

▶ 위탁받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개발협회
- (산 림 청) 녹색사업단, 산림조합중앙회

문제점

- ⑦ 행정기관의 권한이나 보조·용자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에 대한 업무 수행의 공정성·책임성 확보장치 부재
 -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등이 업무 수행(비용보조의 타당성검토, 용자신청검토 및 담보평가 등)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개선의견

- 행정기관의 권한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임직원에게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 예 시 】

개정안	개선의견
<p>〈신설〉</p>	<p>제○○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제35조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4

심의·심사

▣ 사례 1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6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생략)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평가기준

- ⑦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이해충돌 가능성(3-3)

현 황

- ⑦ 제정안 제6조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9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⑦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법 제9조),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 가능(제정안 제6조제2항 단서)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법 제8조~제9조)

- 의의(법 제8조제1항)
 -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육부장관 소속 행정위원회
- 위원회 구성(법 제9조제1항)
 - 위원장(교육부장관)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자격(법 제9조제2항 및 제정안 제6조제1항)
 -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중소기업청장
 - 위원장이 위촉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심사·조정 사항(법 제8조제2항)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법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와 관련된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문제점

- ⑦ 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 불명확
 - ‘해촉’은 위원이 이해충돌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거나 업무 관련 비위 사실 등으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그 기준이나 사유가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나,
 - 제정안 제6조제2항은 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을 추상적·주관적으로 규정하여
 - 일반국민은 물론 위원들도 어떤 경우에 해촉되는지 알기 어려우며,
 - 자의적 해석을 통해 적격 위원을 부당하게 해촉하는 데 악용될 우려

개선의견

⑦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직무 관련 비위 사실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위원에 대한 면직·해촉 기준 마련 의무화 규정 신설(2014. 3. 6.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안 제8조의2제2항)

❖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2012. 12. 31.)

- 위원의 임기, 해촉·교체 등 신분보장과 관련된 사항은 법령에 규정될 사항이므로 행정규칙에서 정하지 않는다.(pp. 724)

검토결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504호, 2014.7.28.)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⑦ (생략)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위원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임기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사례 2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4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평가항목

- ⑦ 접근성과 공개성(3-1), 이해충돌가능성(3-3)

현 황

- ⑦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둔
- 제45조는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나,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의사록 공개 등 심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⑦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당사자 또는 내용과 이해관계 등 특수한 관계를 지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 회피 규정이 임의 규정이며, 제척 또는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은 부재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규정(제6조제2항제4호)
- 직무 관련 비위 사실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위원에 대한 면직·해촉 기준 마련 의무화 규정 신설(2014. 3. 6.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안 제8조의2제2항)

문제점

- ⑦ 회의록 공개 등에 관한 규정 부재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저해
 -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으로 국민의 생활 및 경제 등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 과정 및 결과의 공개필요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⑦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회피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방지라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 곤란
- ⑦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의 부재로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개선의견

- ⑦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등에 관한 규정 마련
- ⑦ 위원회 위원의 회피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변경
- ⑦ 제척 또는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신설

개선결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942호, 2014.12.30.)

제47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 운영) ① ~ ④ (생략)

- ⑤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는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회의록에 대한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제6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8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생략)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사례 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62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1.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에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위원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 법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2조의2(사무국) ① 법 제89조제5항에 따른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과 근무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의 설치 근거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따른 심판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결기관

평가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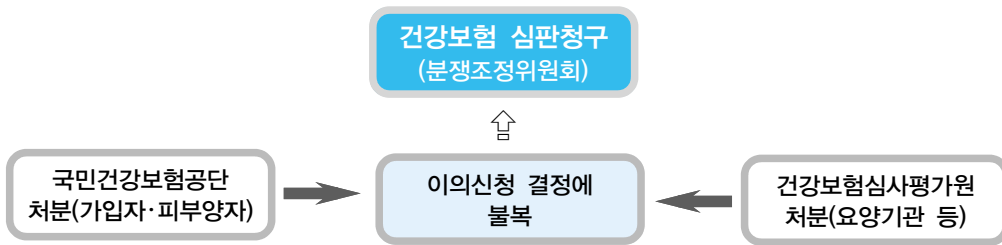
- ① 이해충돌가능성(3-3)

현 황

- ⑦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의결을 위해 사무국의 설치 등의 법률 근거 마련에 따라 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
 -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사무국장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규정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도

- ◆ **건강보험 심판**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



- ◆ **건강보험 심판청구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등, 보험급여 및 보험 급여비용에 관한 처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처분

- ◆ **건강보험 심판청구 절차**
 - (심판청구서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쟁조정 위원회 또는 처분청에 제출
 - (심리·의결) 분쟁조정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 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여 60일 이내에 결정 해야 하고,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
 - (재결 및 결정통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청구인, 피청구인 및 이해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재결서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되면 효력 발생

< 연도별 건강보험 심판청구 접수 및 처리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심판청구 현황	3,699	4,441	7,468	22,712	25,135	24,966	
심판청구 처리현황	3,035	3,422	5,438	10,859	17,173	10,382	

* 자료 :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문제점

- ⑦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있음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행정처분의 분쟁을 심리·의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위원이 해당 안전에 자문·진술·감정 등을 한 경우 의결 과정에서 배제하여 공정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 개정안의 경우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없어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인 기관·단체 등과의 사적 이해관계의 개입될 소지가 있고, 공정한 심리·의결이 곤란한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부재

유사 분쟁조정위원회의 부패 사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4일 ○○여대의 옛 비리재단 쪽 인사들을 대거 정이스로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여대 옛 재단 쪽의 소송 대리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여대 교수협의회 등은 지난 18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오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까지 낸 것으로 확인 (한겨레, 2011.07.15.)

- ⑦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 등을 저해하는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부재

개선의견

- ⑦ 심리·의결 과정에서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지 않도록 이해충돌방지(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 ⑦ 심의·의결의 공정성 등을 해친 위원의 해촉 규정 마련

개선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425호, 2014.6.30.)

제65조의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사례 4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11조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4조제3항 따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건축·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자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심의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 ⑦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⑧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화도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3-3)

현 황

- 제정안 제11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문화도시심의위원회는 문화도시 지정·취소 및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 권한을 가짐
- ※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경우 문화도시 관련 사업의 개발·추진에 관한 운영비 및 문화도시 운영·관리와 관련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시행령 제정안 제16조)

❖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 지정된 문화도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 그 밖에 문화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재 추진 중인 문화도시 사업>

구분	경주 역사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기간	2006~2035(30년)			2007~2026(20년)			2009~2030(22년)		
예산	3조 3,533억원	국비	1조 7,662억 (53%)	1조 7,109억원	국비	4,112억 (24%)	1조 2,577억원	국비	4,001억 (32%)
		지방비	1조 1,799억 (35%)		지방비	9,333억 (55%)		지방비	5,019억 (40%)
		민자	4,072억 (12%)		민자	3,564억 (21%)		민자	3,557억 (28%)
사업 내용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등(65개사업)			한식·한옥·한지·판소리 등 전통문화 자원 보존·계승·활용,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65개사업)			백제왕도 골격의 체계적 회복과 재생, 역사문화자원의 창조적 활용과 자원화(57개사업)		

(출처 : 국회 「지역문화진흥법」 검토보고서, '13.4)

문제점

- ⑦ 위원의 심의과정에서 혈연·지연 등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법령상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없어 위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음

- ⑦ 위원으로 위촉 된 후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자에 대한 해촉 규정 등 부패통제장치 미흡

개선 의견

- ⑦ 심의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배제할 수 있는 제척·기피·회피제도 명시
- ⑦ 위원 스스로 회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의 해촉 규정 명시

개선 결과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509호, 2014.7.28.)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屬)할 수 있다

5 인·허가, 지정, 등록 등

▣ 사례 1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가대상 조문

제12조의4(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 ① ~ ③ (생략)

④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식물검역신고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때
3. 식물검역신고 대행을 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때

⑤ ~ ⑥ (생략)

제15조의3(식물병해충전문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검사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행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설립자나 운영자 또는 지정이 취소된 장소에 전문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에 대해서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의4(농산물수출검역단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 ③ (생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단지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수출단지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단지 지정을 받았거나 농산물을 수출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단지.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법」 제59조에 따른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평가기준

- ⑦ 제재규정의 적정성(1-2), 접근성과 공개성(3-1)

현 황

- ⑦ 식물검역신고* 대행을 등록한 자와 식물병해충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자 및 농산물수출검역단지***로 지정 받은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그 등록 및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식물검역신고 : 식물검역대상물 및 병해충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식물검역신고를 받도록 규정

** 식물병해충전문검사기관 : 수출입식물 검역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시설, 전문인력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춰 지정된 기관

*** 농산물수출검역단지 : 수입국이 요구하는 검역요건에 맞는 수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농산물수출검역단지를 지정하여 관리

문제점

- ⑦ 필요적·임의적 취소사항을 정함에 있어 유사 규정 간 형평성 저해
 - 개정안 제12조의4제4항(식물검역신고 대상자의 등록 취소)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적·임의적 취소의 구분이 제15조의3제1항(식물병해충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취소)과 같은 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제재 처분 규정이 서로 상이
 - 개정안 제28조의4제4항에서 농산물수출검역단지의 지정 취소 요건을 정함에 있어 임의적 취소사유로만 규정하고 있음
- ⑦ 행정처분 결정 사항 등에 대한 공개 장치 부재
 - 식물병해충전문검사기관 등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관련 행정처분 내용에 대한 공개 장치가 없어 농산물을 수출·입 하려는 자 등 이해관계자의 불편과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구조

개선의견

- ⑦ (개정안 제12조의4제4항)개정안 제15조의3제1항의 필요적 취소사유와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
- ⑦ (개정안 제28조의4제4항)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적·임의적 취소사유를 구분하여 규정
- ⑦ (개정안 제12조의4, 제15조의3, 제28조의4)식물검역신고 대상자 등을 등록 및 지정하거나, 취소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 규정 마련

【 예 시 】

개정안	개선 의견
<p>제12조의4(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 ① ~ ③ (생략)</p> <p>④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식물검역신고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신설〉</p> <p>⑤ ~ ⑥ (생략)</p>	<p>제12조의4(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 ① ~ ③ (생략)</p> <p>④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식물검역신고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 3. (개정안과 같음)</p> <p>⑤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u></p> <p>⑥ ~ ⑦ (개정안 제5항·제6항과 같음)</p>
<p>제15조의3(식물병해충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생략)</p> <p>〈신설〉</p> <p>② ~ ③ (생략)</p>	<p>제15조의3(식물병해충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u></p> <p>③ ~ ④ (개정안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p>
<p>제28조의4(농산물수출검역단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 ③ (생략)</p> <p>④ (생략) 〈추가〉</p> <p>1. ~ 4. (생략)</p> <p>〈신설〉</p>	<p>제28조의4(농산물수출검역단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개정안과 같음) 다만, 제1호 및 제○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 4. (개정안과 같음)</p> <p>⑤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u></p>

▣ 사례 2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가대상 조문

제50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낚시도구의 유해물질 함량과 제40조에 따른 미끼의 특정물질 함량을 검정하기 위하여 시험·분석능력이 있는 기관을 검정기관(이하 “낚시도구등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도구등검정기관의 지정 및 검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낚시도구 및 미끼의 제조·수입·판매·사용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낚시도구등검정기관에게 해당 물건의 시험·분석 등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낚시도구등검정기관은 제3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뢰인에게 낚시도구등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낚시도구등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라 낚시도구등검정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시험·분석료 및 증명서발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평가기준

- ⑦ 제재규정의 적정성(1-2)

현 황

- ⑦ 개정안은 낚시도구의 유해물질 함량과 미끼의 특정물질 함량을 검정하기 위하여 시험·분석능력이 있는 기관을 낚시도구 등 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낚시도구 및 미끼의 제조·수입·판매·사용자 등은 낚시도구 등 검정기관에 해당 물건의 시험·분석 등 검정을 의뢰할 수 있고,
 - 검정기관은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낚시도구 등 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문제점

- ⑦ 지정취소 등 제재규정 불비
 - 낚시도구의 유해물질 함량과 미끼의 특정물질 함량을 검정하기 위하여 시험·분석능력이 있는 기관을 낚시도구 등 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후 부당한 업무 수행을 방지하기 위한 지정취소 등의 제재규정이 없음

개선 의견

- ⑦ 낚시도구 등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마련

【참고 입법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0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 업무를 한 경우
 3. 검정 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제99조제2항 후단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검정 업무를 계속한 경우
 5. 제99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사례 3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가대상 조문

제25조의2(산림탄소관리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탄소관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제25조의3의 산림탄소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③ 산림탄소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또는 모니터링보고서의 작성 및 컨설팅
2.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평가
3. 모니터링보고서의 검증
4.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을 위한 검토
5.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중개

④ 산림청장은 산림탄소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3.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4.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과실과 그 업무(서류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산림탄소관리사에 대한 자격증 발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림탄소상쇄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센터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30조제3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평가기준

- ⑦ 제재규정의 적정성(1-2),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2)

현 황

- ⑦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상쇄제도⁸⁾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수행을 위해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 등에 대한 자격 취소·정지 규정을 마련

산림탄소관리사 업무

- ▶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또는 모니터링보고서 작성 및 컨설팅
- ▶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평가, 모니터링보고서의 검증
- ▶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을 위한 검토
- ▶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중개

문제점

- ⑦ 산림탄소관리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
 - 개정안은 산림탄소관리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자격취소·정지를 임의적 취소사유로만 규정하고 있어 행위의 위법성 및 유사 법령의 제재정도 등과 비교하여 불필요하게 재량권자의 자의적 판단여지를 부여
- ⑦ 위법·부당행위에 의해 산림탄소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에게 자격 재취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처분의 실효성저해 우려
- ⑦ 또한, 산림청장이 산림탄소관리사의 자격을 취소하기 전 합리적 처분을 위해

8) 산림탄소상쇄제도 :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산림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활동으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하는 것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조사하는 절차가 필요(「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청문’)

개선의견

- ⑦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와 같은 당연 무효사유 외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
- ⑦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
- ⑦ (참고의견) 산림탄소관리사의 자격취소 전 ‘청문’ 기회 보장

【 예 시 】

개정안	개선의견
제25조의2(산림탄소관리사) ① ~ ③ (생략) ④ (생략) <추가> 1. ~ 5. (생략) <신설> ⑤ ~ ⑥ (생략)	제25조의2(산림탄소관리사) ① ~ ③ (생략) ④ (생략)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개정안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산림탄소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⑥ ~ ⑦ (개정안 제6항 및 제7항와 같음)
제35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제35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3. (개정안과 같음) 4.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산림탄소관리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5. (개정안 제4호와 같음)

▣ 사례 4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6. (생략)
17. 그 밖에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시설 설치
 - 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 나.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18. (생략)

평가항목

- ⑦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현 황

- ⑦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도시공원에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등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위해서는 도시공원 관리청(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도시공원 지하에는 전주, 수도관, 가스관 등 공공시설에 한정하여 점용을 허용하고 있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속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것
 3.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公衆)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 ③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점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시행령 제22조 및 23조 관련)

점용할 수 있는 대상

1. 전주·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 제외)의 설치
※ 전선, 변전소, 전기통신설비 : 지하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가스정압시설·열수송관 및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 포함)의 설치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열수송관 및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제외) : 지하
※ 가스정압시설 :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하구조물로 설치
 3.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
※ 철도 및 궤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노외주차장 : 지하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생활 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비상급 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6. 방화용 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
※ 방화용 저수조 및 지하대피시설 : 지하
 7.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8.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나. 창고시설

-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

-
10.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
11.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
1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
13.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
14.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
1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
17. 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
1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도시공원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
 가.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공원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
 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라. 개별 시설의 건축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

- ⑦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장관회의(3.20)에서 제기된 안산 B공단 내 S기업의 사례*와 같은 애로사항의 해소 및 규제개혁을 위해 도시공원 내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사적 시설만으로도 점용허가가 가능토록 개선

* 안산시 B산업단지 내 S기업의 A공장과 B공장은 공원을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다. 두 공장 간 거리는 직선으로 180미터이지만 물품과 인력을 이동하려면 1.2km를 돌아가야 했다. S기업은 원가 절감을 위해 두 공장을 직접 연결하는 물품의 이동 통로를 공원의 지하에 설치하기 위해 2006년부터 노력해 왔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S기업의 지하 이동통로는 공원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문제점

- ⑦ 개정안은 도시공원 지하에 민간의 시설도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도시공원 지하에 점용 허가가 가능한 시설물의 범위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공원관리청의 판단 하에 공원기능에 지장이 없는 한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가 가능한 지하시설물의 범위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 의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 도시공원 내 지하시설물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불법 로비 등 부패유발요인 내재

개선의견

- ⑦ 점용허가 가능한 도시공원 지하 설치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규정
 - 지하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
 - ※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경우 시행령 제23조 관련 ‘별표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에 지하시설물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

개선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585호, 2014.9.2.)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6. (생략)
17. 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1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도시공원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 가.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공원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
 - 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 라. 개별 시설의 건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

6 계약

▣ 사례 :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1

제9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최근 계약실적단가의 비목별로 최근에 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기간 중 생산자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 임금상승률 등의 등락률만큼 조정한 후 계약수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평가항목

- ①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현 황

- ① 현재 계약금액결정시에는 최근에 계약한 이후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해당 품목의 생산자 물가분류별 지수등락률 만큼 계약단가실적을 조정하여 산출하고 있음 (현행 규칙 제9조)
- ② 조정 계수를 생산자물가지수에서 수입물가지수, 임금상승률 등의 등락률로 확대 추진(본건 규칙 제9조)

문제점

- ① 조정계수가 되는 생산자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 임금상승률 등의 등락률에 대한 출처가 불명확
 - 어느 기관에서 공표하는 지수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담당자별 자의적인 지수 적용가능

- ⑦ 계약 유형별 조정계수 적용 및 조정계수간 적용비율이 미규정
 - 계약 담당별로 조정계수 및 계수간 적용비율을 자의적 판단하여 적용·운용할 가능성

개선의견

- ⑦ 조정계수의 출처를 구체화하는 조문 등을 추가
 - 예) 1.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조사·발표하는,
 - 2. 한국은행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발표하는 등
- ⑦ 계약 유형별 조정계수의 적용 및 복수 조정계수 활용시 계수간 적용비율 등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규정 등을 추가
 - 예) 다만, 조정계수의 적용 및 적용비율 등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등

개선결과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국방부령 제827호, 2014.9.12.)

제9조(계약금액의 결정)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수의 등락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수의 등락률을 말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의 등락률
2. 고용노동부가 조사·발표하는 임금 증감률
3. 그 밖에 계약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지수의 등락률

② 계약금액은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의 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지수의 등락률을 고려하여 그 직전 계약의 품목별 계약실적단가를 조정한 후 계약수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지수의 등락률 및 계약실적단가의 구체적인 적용·산정방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평가대상 조문 2

제19조(계약요소)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계약금액(확정부분 및 불확정부분 구분)
2. ~ 3. (현행과 같음)
4. 목표이익(목표원가에 계약시 적용된 계약업체의 이윤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정산방법 및 기준
6. 기타 필요한 사항

평가항목

- ⑦ 예측가능성(3-2)

현 황

- ⑦ 현재 예정가격 산정이 가능하고, 사업의 특성상 원가절감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계약의 경우 유인부확정계약으로 시행(현행 규정 제17조)하고 있으며, 그 세부 운영에 관하여는 방위사업청 지침(유인부계약제도 운영지침)으로 규정하여 운영
 - ※ 유인부확정계약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원가절감유인계약으로 변경
 - 원가계산 가능 비목은 예정가격을 기준, 곤란 비목은 개산가격 및 분담비율 100% 등

문제점

- ⑦ 계약서에 명기하는 사항을 적시하면서 ‘6.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계약상대자의 예측가능성 저하
 - 계약담당 직원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계약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불명확성 등 부패유발요인 상존

개선의견

- ⑦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조문 추가
예)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타 필요한 사항 등

개선결과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국방부령 제827호, 2014.9.12.)

제19조(계약요소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계약금액. 이 경우 해당 계약 체결 당시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과 곤란한 비목 등으로 구분한다.
2. 유인적용대상 비목 등
3. 목표원가
4. 목표이익
5. 정산방법 및 기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그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내에 다시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종전의 계약에서 결정된 유인이익에 따른 원가절감보상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과 원가절감보상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평가대상 조문 3

제36조(계약대금의 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 가능한 최대 성과금 범위내에서 계약이행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하여 계약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평가항목

- ⑦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현 황

- ⑦ 성과기반계약 시 최대성과금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본건 규칙 제34조)
- ⑦ 계약체결 시 성과평가기준을 기재토록 명문화(본건 규칙 제35조)
- ⑦ 성과금의 지급은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하여 계약대금을 지급(본건 규칙 제36조)

문제점

- ⑦ 최대성과금 및 성과평가기준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 지급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 지급 시
 - 계약담당공무원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 지급이 가능
 - 계약상대자는 관련 정보 미공개로 인해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나 페널티에 대한 예측 곤란 등 과도한 재량권 행사시에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

개선 의견

- ⑦ 지급 가능한 최대 성과금 범위 내에서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을 추가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반영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조문 등을 추가

예) 다만,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추가 또는 감액금액 반영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등

개선 결과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국방부령 제827호, 2014.9.12.)

제36조(계약대금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대한 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금을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하여 정산된 계약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정산·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3장

자발적 개선 사례

제1절 중앙행정기관 행정규칙 개선 사례

제2절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 사례

제3절 시·도교육청 자치법규 개선 사례

제4절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선 사례

제3장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및 공직유관 단체의 사규에 대하여 각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수록한 장으로, 각 기관의 자체 부패영향평가 시행 시 참고할 수 있는 타 기관의 우수 개선 사례 수록

제1절

중앙행정기관 행정규칙
개선 사례

▣ **규정명**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평가대상 조문

제7조(권한의 위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고시에 의한 권한을 영 제16조제 1항에 따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

평가항목

- ⑦ 제재규정의 적정성(1-2),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2-2)

현황 및 문제점

- ⑦ 위 고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2조(분담금의 징수)에 따라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2조(분담금의 징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 ⑦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행정규칙이나 규정은 법규명령으로서 효력 상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 72076)
 - 행정규칙의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은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개선방안

- ⑦ 동 제정안 제7조(권한의 위탁)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고시에 의한 권한을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고 규정
 - 그러나, 이는 영 제16조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 기금에 관한 사무를 벗어나는 것으로 위임·위탁기준이 적정하지 않으며, 권한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함
- ⑦ 따라서, 동 조항을 삭제하거나,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위탁 사무를 기금에 관한 사무 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
 - ※ 예시) 제7조(사무의 위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무’를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7조(권한의 위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고시에 의한 권한을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	제7조(권한의 위탁) <삭제>

▣ **규정명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평가대상 조문

제4조(업무수행 기본원칙) ① (생략)

② 화학사고 및 화학사고에 의한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 중방센터, 공단 지방조직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표 2>와 같다.

<표 2> 각 기관별 수행업무

위험군	사고 예방·대비			사고 대응·후속조치		
	지방관서	중방센터	공단 지방조직	지방관서	중방센터	공단 지방조직
고위험군 사업장 (PSM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감독·점검 ·집중관리 (감독관 전담제 등) ·공정안전 보고서 대상사업장 발굴 및 조치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안전보고서 조치·관리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이행상태 평가·점검 및 미이행 사업장행정 조치 ·공정안전보고서 이행분위기 확산 업무 ·사업장 감독·점검 지원 (요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조사 ·중대산업사고 여부 최종 판단 ·행·사법처리 ·안전보건진단/안전보건 개선계획수립 명령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조사 지원 ·중대산업사고 여부 의견 제시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 지원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 지원 (필요시)
중위험군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독대상으로 우선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기술지도 ·위험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조사 ·행정·사법조치 ·안전보건진단/안전보건 개선계획수립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조사 지원
저위험군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검 및 예방·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전문기관 기술지도 ·안전교육 ·홍보자료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조사 ·행정·사법조치 ·안전보건진단/안전보건 개선계획수립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조사 지원

평가항목

- ⑦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1)

현황 및 문제점

- ⑦ 제4조 표2의 ‘각 기관별 수행업무’에 따르면, 사업장별 화학사고 위험에 따라 ①고위험군 사업장, ②중위험군 사업장, ③저위험군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사고 예방 대비 및 사고대응 후속조치 등을 달리하는 등 차등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 예규에서 고위험군 사업장은 PSM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중위험군 및 저위험군 사업장은 분류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업무 담당자의 재량 또는 가치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 중위험군 사업장으로 분류될 경우 감독대상으로 우선 선정되는 등의 불이익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음

개선방안

- ⑦ 제4조 표2의 위험군 상황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 요구

개정안	개선권고안
<p>〈표2〉 각 기관별 수행업무 (표 생략)</p>	<p>〈표2〉 각 기관별 수행업무 (표 생략)</p> <p>* 표 하단 내용 신설</p> <p>※ 비교: 위험군의 분류기준은 화학물질의 위험도, 보유설비,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p>

▣ **규정명 : 보훈회관 운영규정**

▣ **소관부처 : 국가보훈처**

평가대상 조문

제6조(회의) ① (생략)

-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에서 각각 1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 ③ 가부 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평가항목

- ⑦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특혜발생 가능성(1-1)

현황 및 문제점

- ⑦ 협의회 의결 시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됨
 -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의결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임에도 불구하고,
 - 회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평등 원칙을 위반함

개선방안

- ⑦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이 되도록 회장의 결정권을 삭제 함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6조(회의) ① (생략)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에서 각각 1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③ 가부 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6조(회의) ① (생략)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에서 각각 1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③ <삭제>

▣ 규정명 : 사회복지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 소관부처 : 병무청

평가대상 조문

제28조(겸직 허가) 사회복지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평가항목

- ⑦ 특혜발생 가능성(1-3),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현황 및 문제점

- ⑦ 사회복지무요원 겸직허가 관련 규정 및 내용(종전)
 - 사회복지무요원 겸직허가 신청 시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 공익목적 활동, 기타 복무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품위 손상, 복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겸직 제한(지침)

※ 사회복지무요원 겸직허가 현황

구 분	계	생계유지	사회봉사	기타
'13.6월	944	891	29	24
'12년	1,816	1,702	37	77
'11년	1,628	1,579	11	38

* 기타 : 등록금 마련, 개인 취미활동 등 복무기관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경우

⑦ 문제점

- 사회복지요원의 겸직 허가기준이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음
- 야간근무 등 겸직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요원 복무에 지장 초래
- 병역이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거나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야 등에 대한 겸직제한 규정 미비
 - 유흥업소(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퇴폐업소, 대리운전 등

개선방안

- ⑦ 사회복지요원 복무 지장 초래 및 병역이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범죄 노출 우려가 있는 직업 겸직 허가 제한
 - 겸직가능 업종 제한 : 유흥업소(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퇴폐업소, 대리운전 등 범죄·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
 - 겸직업종 종사시간 제한 : 근무시간 이후 최대 6시간 이내
 - ※ 다만, 생계유지 등 복무기관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허가 가능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28조(겸직 허가)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8조(겸직 허가)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겸직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유흥업소(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퇴폐업소, 대리운전 등 범죄 또는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 2. 퇴근시간 이후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

▣ **규정명** :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평가대상 조문

평가대상 조문 없음

평가항목

- ⑦ 접근성과 공개성(3-1)

현황 및 문제점

- ⑦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낭비 신고 처리결과를 제출받고 있으나, 공개규정이 없어 결과를 외부에 비공개
 - * ‘국가재정법 시행령’(§ 50④)은 불법지출에 대해 예산낭비 시정요구를 한 자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규정
- ⑦ 예산집행 감시 분위기 확산 및 낭비 재발방지 등을 위해 예산낭비 신고 우수사례 공개 필요 → 예산낭비신고 포털 활용

개선방안

- ⑦ 예산낭비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 도모 ⇒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개정안	개선권고안
〈신설〉	제26조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 ① 기획재정부는 제3조 제1호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 중에서 예산절감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례를 모아

개정안	개선권고안
	<p>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 규정명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평가대상 조문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 가.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공금을 횡령하였을 경우
 - 나.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용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 다.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
 - 라.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 마.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 바.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 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 그 밖에 범죄의 횡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 5. (생략)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상의 고발여부의 판단과 비교하여 적정여부 확인

현황 및 문제점

- ⑦ 금품관련 비위행위에는 횡령, 유용, 금품 향응·수수 등이 있으나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범죄를 '200만원 이상 횡령 혹은 2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금액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 ⑦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범죄의 종류를 횡령뿐만 아니라 유용, 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확대
- ⑦ 또한 금품 요구 등 능동적인 비위행위자에 대한 처분강화를 위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고발 할 수 있도록 확대 필요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23조(고발 대상 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1.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생략) 1. (생략)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공금을 횡령하였을 경우 나.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유용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 라.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마.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바.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그 밖에 범죄의 횡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 5. (생략)

▣ 규정명 :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대상 조문

제1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에서 정한 표시대상을 위반한 자
2. 제4조에서 정한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
3. 제5조에서 정한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국립종자원장이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되지 않은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또는 「소비자기본법」의 규정을 따른다.

평가항목

- ① 제재규정의 적정성(1-2)

현황 및 문제점

- ① ‘과태료 관련 사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상위법령에 규정하여야 마땅함
- ② 제1항의 각 호에 대해서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호만 규정) 및 소비자 기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위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청이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개선방안

⑦ 과태료 관련 법령 및 인용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체

개정안	개선권고안
<p>제1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에서 정한 표시대상을 위반한 자 2. 제4조에서 정한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 3. 제5조에서 정한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p>②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국립종자원장이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지사가 부과·징수한다.</p> <p>③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되지 않은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또는 「소비자기본법」의 규정을 따른다.</p>	<p>제11조(과태료)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제86조 제1항제1호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p>

▣ 규정명 : 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 소관부처 : 통계청

평가대상 조문

제10조(배부) ① ~ ③ 생략

- ④ 지방통계청장은 조사답례품 재고의 최소화를 위해 재고답례품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표본시작과 종결가구(홀수달), 가계동향 예비조사 가구, 패널조사의 표본 관리, 불응과 전입 대상처 설득 및 조사조력자에게 재고답례품을 활용할 수 있다.
- ⑤ 지방통계청장은 재고답례품을 조사별로 구분하지 않고 품목 및 단가별로 통합하여 활용한다.

평가항목

- ⑦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2-3)

현황 및 문제점

- ⑦ 통계청은 조사자와 응답자 간의 유대감 및 신뢰감 조성, 악화되는 통계조사 환경을 극복하고 정확한 통계작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처에 답례품을 지급하고 있음
 - (2014년도 조사답례품 예산) 10,100백만원
 - (답례품 지급기준) 조사통계 17종에 대하여 연간조사 1회, 반기조사 2회, 분기조사 4회, 월간조사 12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급함

<2013년 연말 기준 조사답례품 재고현황>

품목	재고량(금액, 개)	비 고
상품권	3,107장(24,755천원)	
물품 (커피믹스, 칫솔 등)	18종(428개)	

- ⑦ 조사답례품은 통계조사에 응해준 사업체, 가구 등에 지급하는 물품, 상품권을 말하며 정확한 통계응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으로 지급하고 있음
 - 하지만 조사불응 등으로 인하여 답례품 재고량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 규정에는 ‘재고답례품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재고답례품 관리 규정이 불명확함

개선방안

- ⑦ 재고답례품 활용에 대한 정확한 지침과 관리 방안 필요

개정안	개선권고안
<p>제10조(배부) ① ~ ③ (생략)</p> <p>④ 지방통계청장은 조사답례품 재고의 최소화를 위해 재고답례품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표본시작과 종결가구(홀수달), 가계동향 예비조사 가구, 패널조사의 표본관리, 불응과 전입 대상처 설득 및 조사조력자에게 재고답례품을 활용할 수 있다.</p> <p>⑤ 지방통계청장은 재고답례품을 조사별로 구분하지 않고 품목 및 단가별로 통합하여 활용한다.</p>	<p>제11조(재고답례품 활용) ① 지방통계청장은 조사답례품의 재고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p> <p>② 지방통계청장은 표본시작과 종결가구(홀수달), 가계동향 예비조사 가구, 불응과 전입 대상처 설득, 사업체 대상 월간조사 신규 대상처 설득 및 조사협력자 답례용으로 조사답례품의 재고를 활용할 수 있다.</p> <p>③ 지방통계청장은 제2항 이외에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 조사답례품이 필요한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재고답례품의 30%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p> <p>④ 조사기획과장은 조사답례품의 예산과 지급계획의 변동 사항 및 전체 재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활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지방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p> <p>⑤ 조사기획과장은 전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조사대상처에 답례품을 지급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재고답례품을 활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개정안	개선권고안
	⑥ 지방통계청장은 재고답례품을 조사별로 구분하지 않고 품목 및 단기별로 통합하여 활용한다.

▣ **규정명 : 통계청 공무원 행동강령**

▣ **소관부처 : 통계청**

평가대상 조문

제15조(전관예우 등 금지 규정) 신설

평가항목

⑦ 특혜발생 가능성(1-3)

현황 및 문제점

- ⑦ 통계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인 통계청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으나 퇴직자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음
- ⑦ 통계청 공무원 퇴직자가 증가하면서 직무관련자의 위치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통계청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통계청 퇴직자와 골프, 식사, 여행 등 사적인 접촉을 통제할 규정이 현행 규정에는 없음

개선방안

- ⑦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인 통계청 퇴직자와 골프, 식사, 여행, 사행성 오락 등 사적인 접촉 금지 조항 필요

개정안	개선권고안
〈신설〉	제15조(전관예우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인 통계청 퇴직자(이하 '퇴직자'라 한다)와 각호에 해당하는

개정안	개선권고안
	<p>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단, 식사의 경우직무 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 <p>② 공무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령담당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제26조제3항에 의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 **규정명 :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 **소관부처 : 조달청**

평가대상 조문

제12조(연구자의 선정)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4조에 의거 연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경쟁입찰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 중 연구자의 연구수행능력, 연구계획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2.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연구자(2인 이상의 연구자가 없을 경우에는 1인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자의 연구수행능력, 연구계획 등과 책정연구비의 적정성까지 심사한다. 다만, 특정 연구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심사한다.

평가항목

- ⑦ 특혜발생 가능성(1-3)

현황 및 문제점

- ⑦ 예산 불용을 막기 위한 불필요한 용역 발주,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 짜맞추기식 연구, 정책연구용역 연구개발비의 목적 외 집행 등 외부기관 지적
- ⑦ 연구자 선정 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방식을 동일한 수준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적정성에 대한 심의가 다소 미흡

개선방안

- ⑦ 연구자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⑦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세분화하여 명시

개정안	개선권고안
<p>제12조(연구자의 선정)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4조에 의거 연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쟁입찰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 중 연구자의 연구 수행능력, 연구계획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2.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연구자(2인 이상의 연구자가 없을 경우에는 1인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자의 연구수행능력, 연구 계획 등과 책정연구비의 적정성까지 심사한다. 다만, 특정 연구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심사한다. 	<p>제15조(연구자의 선정) ① 연구자의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② 연구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p>③ 정책연구를 신청하려는 부서의 장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시에는 계약상대자인 연구자 대표로부터 정책연구 수행계획, 정책연구 수행원의 개인별 경력 등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에 활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상대자가 정책연구과제 수행에 충분한 연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책정된 연구비가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정도 인지 여부

▣ **규정명**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소관부처** : 조달청

평가대상 조문

제14조의2(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①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 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1점을 감점 처리한다.

평가항목

- ⑦ 예측가능성(3-2), 준수부담의 적정성(1-1)

현황 및 문제점

- ⑦ 최근 제안서 평가와 관련 기술평가위원에게 문자메세지 등 사전접촉사례가 발생하여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
- ⑦ 이에, 사전접촉 주체와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 ⑦ 사전접촉 관련 주체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논란을 제거하고 감점 점수를 강화하여 사전접촉에 대한 제재 강화

구 분	당 초	개 정
사전접촉 주체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	입찰자 + 당해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하도급자, 협력업체)
사전접촉 대상	평가위원	평가위원 + 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
감점	총점 1점 감점	총점 5점* 감점

* 가격분야 배점 20점 기준으로 발생가능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

개정안	개선권고안
<p>제14조의2(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①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1점을 감점 처리한다.</p>	<p>제14조의2(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①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p>

제2절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 사례

▣ 규정명 :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평가대상 조문

관련 조문 없음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접근성과 공개성(3-1)

현황 및 문제점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및 설계평가에 대한 결과만 공개하고 있지만, 특혜발생 차단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평가) 전(前) 계획단계부터 공개 필요
- 공정하고 투명한 대형공사 설계평가를 위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심의위원의 구성 범위 확대 필요

개선방안

- 대형공사 입찰방법 및 설계평가에 대한 심의 일정, 집행기본계획서, 심의 결과, 향후 일정 등 전(全) 단계를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대형공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심의위원 구성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개선

개선결과

제13조의2(의회보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의 심의사항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3호에 대한 심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회의 소집 전에 대형공사 등의 입찰

- 방법 심의기준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 심의일정 등을 보고하고 해당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에 따른 공고 전에 심의결과 및 향후 입찰 추진계획을 보고한다.
2. 제10조제4호에 대한 심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회의 소집 전에 입찰안내서 내용, 입찰참여업체, 심의일정 등을 보고하고 해당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낙찰자와의 계약 체결 전에 심의결과를 보고한다.

제14조의2(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1. ~ 6. (생략)
 7.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중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 규정명 :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조례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24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①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정가 또는 수의매매 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3과 같다.

②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라 경매시작 전 반출할 수 있는 품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외의 품목은 조례 제65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정가 또는 수의매매품목(제19조관련)

부류별	품목별	
청과부류	건고추, 고사리, 고들빼기, 고추잎, 냉이, 달래, 두릅, 돌나물, 동초, 박, 박고지, 방아, 배추뿌리, 머위잎, 아욱, 열加里, 쑥, 썸바귀, 죽순, 취나물, 참비름, 참나물, 호박고지, 호박잎, 갓, 고구마순, 깻잎, 단배추, 마늘쭉, 미나리, 봄동, 부추, 상추, 시금치, 실파, 쑥갓, 알타리무, 열무, 토란, 수입과일류, 무, 배추, 양배추	
수산부류	선어류	도다리, 농어, 광어, 돔, 문어, 낙지, 방어, 오징어, 송어, 전어, 조피볼락, 봉장어, 쥐치어, 전복, 개불, 해삼, 장어, 상어, 게르치, 능성어, 활개, 방어, 미꾸라지, 붕어, 생멸치, 한치, 꽃게, 돌게, 뽕게, 붉은대게, 새우, 쭈꾸미, 재첩, 동죽, 방어, 젓소라, 먹장어, 뱀장어, 가오리, 도로묵, 아귀, 보리멸, 정어리, 능성어, 집어, 민어, 복어, 참다랑어, 물미역
	건어류	양미리, 찢은오징어, 오징어채, 파래, 모자반, 쥐치포, 방어포, 알포, 명태채, 김가루, 갈치포, 역거리, 명태포, 북어채, 쥐치, 코다리, 장줄포, 과메기, 다시마, 굴비, 맛살, 신기, 쥐장줄, 건갈치포, 학꽂치로, 합자, 미역줄기
	패류	굴, 바지락, 홍합, 우렁쉥이, 미더덕, 소라, 고둥, 가리비, 해파리, 대합, 고막, 피조개, 키조개, 조개기타, 성게, 맛조개, 응피, 깻홍합, 꽃게, 새고막, 전복, 해삼, 활개, 속개, 갓소라, 동죽, 명지, 동죽살, 청해삼
	젓갈류	명란젓, 창란젓, 멸치젓, 멸치액젓, 새우젓, 꼴뚜기젓, 오징어젓, 한치젓, 까나리액젓, 아가미젓

평가항목

- ⑦ 특혜발생 가능성(1-3), 이해충돌 가능성(3-1)

현황 및 문제점

① (현황)

- 품목 수(168개 품목) : 청과부류 53개 품목, 수산부류 115개 품목

② (문제점)

- 조례안 제42조(정가 또는 수의매매)는 기존의 정가 또는 수의매매 품목을 예외적으로 규칙에서 정하여 시행하던 것을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경매 또는 입찰과 동등한 매매방법으로 정하고 품목 제한 등 예외 규정을 폐지

③ 정가매매 및 수의매매 거래실적

(단위 : 개, 톤, 백만원)

구 분	기간	품목수	거래물량	거래금액	비고
변경전	'13.5.1~10.31.	121	17,777	26,388	
변경후	'14.5.1~10.31.	139	39,549	36,602	
증감 (비율)		18 (14.9% 증)	21,772 (122.5% 증)	10,214 (38.7% 증)	

개선방안

- ①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할 수 있는 품목과 경매시작 전 반출할 수 있는 품목을 삭제하고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절차와 전자거래방식 거래 시 도매시장 반입을 하지 아니 할 수 있음을 명시함

개선결과

제24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①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반입물품의 하차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 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별 수량기재)
3. 판매원표 작성(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 수량 등 기재)
4.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5. 판매원표 작성(낙찰자 및 낙찰단가, 금액 기재)

②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방식으로 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규정명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평가대상 조문

「건설공사 품질시험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확대·전면 개정

평가항목

- ⑦ 접근성과 공개성(3-1), 이해충돌 가능성(3-3), 특혜발생 가능성(1-3)

현황 및 문제점

- ⑦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각종 건설재료 및 자재에 대하여 「건설기술안전법」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시험·검사를 통하여 균일한 품질을 유지함으로써, 예상되는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여 건설공사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와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사무로서,
- ⑦ 신뢰 유지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품질시험 과정에서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안전에 대한 불안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 불신이 심각

- ✓ 시험성적서 위조하고도 우수제품 선정, 민관유착 원전안전 위협(MBC TV-'14.5.31.)
- ✓ 해군함정 검사에도 뒷돈 거래 - 한국선급 검사원 구속(연합뉴스-'14.6.20.)

- ⑦ 2013년도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측정 결과,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분야는 4.68점(10만점)으로 개선의 여지를 시사하였고, 특히 부패직접경험(금품) 응답이 있었던바, 품질시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필요

개선방안

- ⑦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지도점검 방법 개선과 현장확인제 등을 통하여 품질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 하고,
- ⑧ 품질시험 및 검사과정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 의뢰인은 물론 발주자, 전문가 등 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검사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검사결과의 신뢰도 향상

개선결과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대행) ① 부산광역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이하 “시험사업소장”이라 한다.)은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대행할 수 있다.

제4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 ① 시 및 소속기관, 시에서 출자한 지방공사·공단, 구·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 의뢰는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시장에게 의뢰한다.

제5조(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 ① 시험사업소장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의 행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중 발주자가 요청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사용하는 레미콘 등의 주요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정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품질관리 현장기동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참관·확인) 시험사업소장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한 자가 품질시험 및 검사 과정에 참관·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규정명 : 전라북도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6조(인증 직매장의 지정심사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직매장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로컬푸드 관련 전문가 5명 이내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 직매장 지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4조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와 “별표 2”의 지정명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 ⑦ 이해충돌 가능성(3-3), 예측가능성(3-2)

현황 및 문제점

- ⑦ 직매장 인증 신청서를 제출 받은 후 언제까지 심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신청자의 예측가능성 저해
- ⑦ 또한, 심사위원 구성 시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척 규정이 없고, 직매장 인증을 신청한 시군에 대한 심사 결과 공개 여부를 규정한 내용이 없어 신청 후 탈락한 시·군은 심사에 대한 결과를 알지 못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음

개선방안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6조(인증 직매장의 지정심사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직매장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로컬푸드 관련 전문가 5명 이내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 직매장 지정심	제6조(인증 직매장의 지정심사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직매장 인증 지정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로컬푸드 관련 전문가 5명 이내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4조의 지정기준

개정안	개선권고안
<p>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제4조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와 “별표 2”의 지정명판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신설></p> <p><신설></p>	<p>적합 여부를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는 신청을 받은 후 ○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선정위원회 구성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2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선정에서 제외한다.</p> <p>③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심사 종료 후 즉시(또는 ○일 이내에) 추천한 시장·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도지사는 제4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심사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와 “별표 2”의 지정명판을 교부하여야 한다.</p>

개선결과

제8조(인증 직매장의 지정심사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직매장 인증 지정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로컬푸드 관련 전문가 5명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6조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는 신청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③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심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추천한 시장·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6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심사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와 “별표 2”의 지정명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 규정명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평가대상 조문

제6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해당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평가항목

- ⑦ 이해충돌 가능성(3-3)

현황 및 문제점

- ⑦ 위원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제척·회피 규정은 있으나, 기피 규정과 해촉 기준이 없음

개선방안

- ⑦ 위원이 학연, 혈연 등으로 인해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장치(제척·기피·회피제도)의 구체적 기준이 없고, 당사자의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제도가 없음
- ⑦ 위원의 해촉 기준이 없어 위원의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인한 공정성을 해친 자에 대한 제재기준이 없음

개정안	개선권고안
<p>제6조의 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p> <p>②위원은 해당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p> <p>〈신설〉</p>	<p>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3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업체의 용역·공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위원은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p> <p>③ 위원은 해당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p> <p>제6조의3 (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규정명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평가대상 조문

제26조의2 (수익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도내 특산품 또는 도내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수익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평가항목

- ⑦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현황 및 문제점

- ⑦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도내 특산품 또는 도내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의 경우, 수익계약을 통해 대부할 수 있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음

개선방안

- ⑦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도내 특산품 또는 도내 생산제품 등’의 적용에 있어 담당자의 재량에 따른 선별적·자의적 적용 소지
 - ‘도내 특산품 또는 도내 생산제품 등’의 범위를 구체화·객관화하여 수익계약 대상의 자의적 적용을 방지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26조의2 (수익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도내 특산품 또는 도내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 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	제26조의2 (수익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도내 특산품 또는 도내 생산제품 등’은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개정안	개선권고안
<p>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수익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p>	<p>농특산물과 그 가공품 및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청남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이하 농수산물) 2. 충청남도 내에 생산자(법인 또는 단체 포함)의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경우로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과 지리적 표시제 등록 및 품질 인증을 받은 특산물 3. 충청남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우수 또는 유망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4. 이외 충청남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규정명 :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조례

평가대상 조문

제9조(뷰티산업 전시·홍보·판매시설 설치지원)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뷰티산업과 관련한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를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과 뷰티산업 관련 법인·단체·전문업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시 홍보 판매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를 준용한다.

평가항목

- ① 특혜발생 가능성(1-3)

현황 및 문제점

- ①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를 확인한 결과 인건비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수탁자의 판매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수탁자가 비용부담 없이 수익금만 가져갈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 ① 위탁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 수익에 대한 수익금 처리 규정을 마련

개정안	개선권고안
<p>제9조(뷰티산업 전시·홍보·판매시설 설치지원)</p> <p>① ~ ③ (생략)</p> <p>〈<u>신설</u>〉</p> <p>④ (생략)</p>	<p>제9조(뷰티산업 전시·홍보·판매시설 설치지원)</p> <p>① ~ 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전시 홍보 판매 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때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로 얻어진 수익금은 차감하여 지급한다.</p> <p>⑤ (개정안 제4호와 같음)</p>

규정명 : 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평가대상 조문

제7조(관리·운영) ① 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에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평가항목

- ⑦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2-2), 특혜발생 가능성(1-3)

현황 및 문제점

- ⑦ 농업인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특정인(단체)의 특혜 가능성

개선방안

- ⑦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7조(관리·운영) ① 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에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관리·운영) ① 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에 공개 경쟁을 통하여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규정명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

평가대상 조문

관련 조문 없음

평가항목

- ⑦ 이해충돌 가능성(3-3), 특혜발생 가능성(1-3)

현황 및 문제점

- ⑦ 제3장(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전체 조항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비
- ⑦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 근로자 권익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을 위한 주요정책, 법규, 제도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위원이 소속 또는 관여하고 있는 특정 집단이익의 과대대변 등 이해충돌 및 특혜발생 우려가 있고,
- ⑦ 위원이 심의·자문대상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건에서 배제하거나 스스로 기피신청 또는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업무추진의 공정성, 신뢰성, 중립성이 손상될 우려

검토결과

-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특정 위원이 소속 또는 관여하고 있는 특정 집단이익의 과대대변, 특정 심의·자문대상분야에 종사하거나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일 경우 배제하는 규정 신설하여 이해충돌 및 특혜 가능성 차단할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개선결과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절

시·도교육청 자치법규
개선 사례

▣ 규정명 :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회계 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33조의2(청렴계약) 원장 또는 교장은 1천만원 이상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할 때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그 계약의 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 등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는 조건(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으로 입찰을 실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 ⑦ 준수부담의 적정성(1-1), 제재규정의 적정성(1-2)

현황 및 문제점

- ⑦ 현재 우리교육청에서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회계 규칙」에 “1천만원 이상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에 대하여 청렴서약서를 받는 청렴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
- ⑦ 금액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계약에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청렴계약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개선방안

- ⑦ 1천만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만 청렴서약서를 받도록 한 현행 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계약에 대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받도록 함으로써 학교 및 유치원에서의 계약 투명성과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

개선결과

제33조의2(청렴서약) 원장 또는 교장은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할 때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그 계약의 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 등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는 조건(이하 "청렴서약"이라 한다)으로 입찰을 실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입찰·낙찰의 취소 등) ① 원장 또는 교장은 계약상대자가 제33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33조의4(청렴서약 위반업자 공개) 원장 또는 교장은 청렴서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자의 정보를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청렴서약 위반업자 확인서에 따라 유치원 또는 학교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제46조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49조(수의계약 내역 공개)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 체결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 규정명 :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3조(독립성) ① (생략)

② 시민감사관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부교육감 및 직원(이하 “직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면담을 요청받은 직원은 시민감사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① 시민감사관은 대표시민감사관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평가항목

- ⑦ 접근성과 공개성(3-1)

현황 및 문제점

- ⑦ 시민감사관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미흡
 - 직원에 대한 면담 요구권만 규정되어 있어, 독립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음
 - 회의소집권, 자료의 열람 및 제출, 현장확인 요구권 등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장치 마련 필요
- ⑦ 시민감사관의 요구사항 처리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미흡
- ⑦ 지역사회 전문가를 활용한 외부감시 기능의 강화를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정수 확대가 요구됨

개선방안

- ⑦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운영 강화를 위한 독립성 보장 조항 개정
 - 회의소집, 자료열람·제출요구, 현장 확인 등

- ⑦ 시민감사관의 시정·개선 요구에 대한 처리 의무조항 신설
- ⑦ 각 분야 전문가의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외부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정수 확대

개정안	개선권고안
<p>제3조(독립성) ① (생략)</p> <p>② 시민감사관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부교육감 및 직원(이하 “직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의한 면담을 요청받은 직원은 시민감사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6조(구성) ① 시민감사관은 대표시민감사관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p> <p>〈신설〉</p>	<p>제3조(독립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시민감사관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부교육감 및 직원(이하 “직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 및 제출, 면담,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의한 자료의 열람 및 제출, 면담, 현장 확인 등을 요청받은 직원 등은 시민감사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시정·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대표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6조(구성) ① 시민감사관은 대표시민감사관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p> <p>② 시민감사관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표시민감사관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p>

▣ 규정명 : 각종 행사관련 대전광역시교육감 상장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평가대상 조문

제5조(심사기준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사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행사가 제2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3. 행사 장소의 안전성 및 공중위생 확보 여부
4. 연례적 행사의 경우 전년도 행사시 승인사항의 이행 여부
5. 특정 단체의 영리 목적이나 각종 부조리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6. 행사 주최 단체의 건전성 여부(정치적 목적은 없는지의 여부 등)
7. 행사주제는 적합하고 행사내용은 충실한지 등의 여부
8.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

제7조(기록유지)행사 관련 업무의 각 실·과장은 교육감의 승인 및 보고 관련 서류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 ⑦ 접근성과 공개성(3-1), 이해충돌 가능성(3-3)

현황 및 문제점

- ⑦ 민간단체(법인 등) 행사 관련 교육감 상장 대회심사에 대한 공정성 부족으로 민원 발생(○○시장풍경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에 작품을 내지 않은 주최 측 자녀 상장 수여)
- ⑦ 교육감 상장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대한 사후관리와 정보공개 접근성 부족으로 일부 단체에만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 발생

- ⑦ 후원명칭 사용과 상장발급을 대회 성격별로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여(청렴관련대회-감사관, 학교폭력예방-학생생활안전과 등), 전반적인 현황 파악 및 관리의 어려움

개선방안

- ⑦ 후원명칭 사용과 상장승인 심사 시 민간단체 대회심사의 내부관계자 심사위원 구성으로 인한 유착방지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심사위원 위촉의 적정성과 외부 위원 위촉 여부를 사전 심사기준으로 추가하여 민간단체 평가의 객관성과 교육감 상장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 ⑦ 후원명칭 사용과 상장승인 심사 내용에 대해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관리하도록 하여 행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1 홈페이지 교육감상·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공개방 마련

2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

순	행사 구분 (신규, 연례)	주관 부서	행사명	신청기관	신청 문서번호	행사날짜 (요일)	후원명칭		교육감상			종료 보고서 제출 (○, X)	비고	
							신청 (○, X)	승인 (○, X)	신청내역	승인내역	발급내역			

3 교육감 상장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년도	기간(분기)	주관부서	신청행사(건)	교육감상 수여 (건, 때)	후원명칭 사용 승인(건)	비고

개정안	개선권고안
<p>제5조(심사기준) ① (생략) 1. ~8. (생략) <u>〈신설〉</u></p> <p>9. 기타(행사 규모, 참가자수에 비해 상장 과다 요청 여부 등)</p> <p>제7조(기록유지) 행사 관련 업무의 각 실· 과장은 교육감의 승인 및 보고 관련 서류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p>	<p>제5조(심사기준) ① (개정안과 같음) 1. ~8. (개정안과 같음) 9. 심사위원 위촉 적정성 여부(외부위원 위촉 등) 10. (개정안 제9호와 같음)</p> <p>제7조(기록유지) 행사 관련 업무의 각 실·과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 및 보고 관련서류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분기별 현황을 대전 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p>

▣ 규정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

평가대상 조문

제10조(감사결과 미이행 등 관리대장의 비치)감사결과 처분사항 중 미이행 및 사후 조치사항 등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감사결과 미이행 등 관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 ⑦ 제재규정의 적정성(1-2)

현황 및 문제점

- ⑦ 감사결과 처분에 따른 미이행 및 사후 조치현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별지 서식으로 미이행 사항 등을 대장에 기록·유지한다고만 규정하여 부패 재발의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 ⑦ 감사결과 처분 미이행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패 재발을 방지하고자 미이행 및 사후 조치사항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1조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함

개선결과

제10조(감사결과 처분사항 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관은 제8조에 따른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서 제출한 감사처분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처리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또는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감사결과 처분사항 중 미이행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감사처분 미이행 등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 미이행 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규정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⑦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항목

⑦ 특혜발생 가능성(1-3)

현황 및 문제점

⑦ (현황)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교육금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은행 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심의위원의 공정한 심의가 요구됨(3년 주기로 금고 선정)

⑦ (문제점)

-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에 해당하는 범위를 위원 자신에게만 한정하고 있어 다른 이해관계자에게는 제한 규정이 없음
- 이익 범주 대상을 확대하여 특혜발생 우려 차단 필요
- 이익 범주 대상 확대 제도 사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알선·청탁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선방안

- ⑦ 제한할 수 있는 이익 범주 대상을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도 포함 하도록 이익 대상 범주를 확대

개정안	개선권고안
<p>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⑦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⑦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u>자신 또는 타인의</u>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 규정명 :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평가대상 조문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추진배경

- ① 한정된 자원의 최적 배분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 ② 주민 참여 절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편성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낭비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예방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평가항목

- ① 특혜발생 가능성(1-3), 이해충돌 가능성(3-3)

현황 및 문제점

- ① 중임 또는 연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기간 직무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있음
- ② 장기간 재직으로 인한 유착관계 형성 등 부패의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 ⑦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시 중임 또는 연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기간 직무 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 개입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보완

개정안	개선권고안
<p>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신설〉</p>	<p>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 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 규정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6조(선발위원회의 설치) ① 체육특기자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선발 위원회(이 규칙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선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7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인성교육과장, 체육예술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당연직 위원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인성교육과장으로 한다.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의 학교체육 담당 장학사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평가항목

⑦ 이해충돌 가능성(3-3)

현황 및 문제점

⑦ 위원회의 구성은 5~7명 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위원에 대한 부패 전력 확인 또는 청렴서약서 징구 등의 규정이 없음

- ⑦ 위원의 부패전력 확인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필요함

개선방안

- ⑦ 부패전력 확인, 윤리규범 또는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을 명시

개정안	개선권고안
<p>제6조(선발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략) ④ 위촉 위원은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당연직 위원이 협의하여 위촉한다.</p>	<p>제6조(선발위원회의 설치)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위촉 위원은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당연직 위원이 협의하여 위촉하되, 위촉된 위원은 부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 규정명 :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평가대상 조문

제11조(감사처분심의회) ① ~ ③ (생략)

④ 심의회의 심사대상 사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2. 재심의를 관한 사항
3. 감사우수기관 및 공무원 표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가항목

- ⑦ 예측가능성(3-2)

현황 및 문제점

- ⑦ 감사결과 지적된 사안에 대한 처분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 처분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회의 심사대상 사안에 징계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⑦ 심사대상 사안 중 감사처분 사항은 “징계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어 징계 이외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적정성 확보가 미흡하여 동일사안에 대한 처분 결과에 대한 예측 불가
 - ※ 동일사안에 대해 담당자 재량에 따라 처분양정 상이

개선방안

- ⑦ 자체감사 결과 처분의 형평성·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처분심의회 심사 대상의 “징계처분 요구사항”을 “자체감사 결과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개선 권고
- ⑦ 감사처분심의회 심사대상을 확대하여 처분의 공정성 확보

개선결과

제6조(일상감사) ① 감사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각부서
2.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3.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국립제외)

③ 일상감사의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같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④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 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 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3. 자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
4.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5.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절차 및 방법, 기준 예산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감사처분위원회)

④ 심의회의 심사 대상 사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감사 결과 처분에 관한 사항
2. 재심의를 관한 사항
3. 감사 우수기관 및 공무원 표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규정명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건축물 개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평가대상 조문

제4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장 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평가항목

- ⑦ 이해충돌 가능성(3-3)

현황 및 문제점

⑦ (현황)

- 기존 “개축심의위원회” 기능 중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재난위험시설의 지정·관리·해제·등급 재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기능으로 분리·운영함
- 개축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교육건축물의 개축 여부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과 사립학교 개축 대상 교육건축물의 학교법인 대응투자에 관한 사항 (동규정 제3조)에 대해 심의하며,

- 위원은 초·중·고 교장 또는 대학 조교수,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건축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와 동등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동규정 제4조)하고,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동규정 제5조)

⑦ (문제점)

- 위원의 자격이 대구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와 동일하여 위원을 겸직할 경우 심의내용의 연관성으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해되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특정위원은 횡수 제한 없는 장기 연임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유착가능성이 존재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전문성 저해가 우려되고,
- 임명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명위원의 변동(인사이동 등)에 대한 위원선정 혼란

개선방안

- ⑦ 위촉위원 자격이 대구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 위원회와 동일하여 겸직할 경우 심의내용의 연관성으로 객관성이 저해되므로 겸직금지에 대한 규정 신설이 필요
-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정위원의 횡수 제한없는 장기연임으로 인한 공정성 및 전문성 등의 확보가 결여되므로, 위원회 위촉 위원연임 가능 횡수 제한이 필요
- ⑦ 임명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변동(인사이동 등)에 따른 위원 선정의 혼란이 우려되므로 임명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의 방지 장치가 적정함

개선결과

제4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대구광역시 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장 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제1호내지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회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규정명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평가대상 조문

제5조의2(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제한) 공무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골프, 식사, 여행을 하는 행위 등의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교육) ② 교육감은 공무원을 신규·승진·고위직 진입 등으로 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 ⑦ 준수부담의 적정성(1-1), 접근성과 공개성(3-1), 특혜발생 가능성(1-3)

현황 및 문제점

- ⑦ 이해관계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을 금지하였으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한 접촉을 허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
- ⑦ 부패행위자의 징계 이후 사후 조치 및 환류장치가 미비함.
 - 징계처분 받은 자에 대한 공개 내용이 없어 부패행위 재발 우려
 - 행동강령위반자에 대한 행동강령교육 규정이 없음

※ 부패위험 분석

- 포항대학 입시 비리 발생(2013년 청렴도 8단계 하락의 주된 요인)
 - 직무관련자와 식사, 해외여행 등 불필요한 접촉이 부패행위의 시발점으로 작용함
- ○○중학교 체육교사의 부인이 나이키 대리점을 운영하는 등 행동강령위반 사례
 - 자체 감사(2013. 7. ~ 2014. 6.) 결과 165명 적발, 주의 44명, 회수 9,662천원
- 국민권익위원회 지적 사항
 - 포함 ○○중학교 행동강령위반(초과근무 부당수령) 주의 18명, 회수 2,154천원

개선방안

- ⑦ 직무관련자와 부득이한 사유로 접촉했거나 접촉해야 할 경우를 행동강령 규정에 반영
- ⑦ 징계처분 받은 자에 대한 부패행위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
- ⑦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실시 근거 규정 신설

개정안	개선권고안
<p>제5조의2(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제한) 공무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골프, 식사, 여행을 하는 행위 등의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5조의2(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p> <p>① 공무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접촉할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즉시 위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서 “사적인 접촉”이란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식사, 회합, 행사 등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p> <p>③ 제1항에서 사적인 접촉의 예외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책 수립이나 의견 교환 등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부득이 접촉한 경우
<p>제20조(징계 등) ① (생략) <u>〈신설〉</u></p>	<p>제20조(징계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징계처분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p>
<p>제22조(교육) ① ~ ③ (생략) <u>〈신설〉</u></p>	<p>제22조(교육) ① ~ 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제19조제4항의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위탁 교육을 명할 수 있다.</p>

▣ 규정명 : 전라남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2조(위원회의 기능)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행정국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5명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2.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건설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파·회피) ① 위원이 제척·기파·회피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심사요청 등)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서 및 안건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방법)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른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1조(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평가항목

- ⑦ 제재규정의 적정성(1-2), 특혜발생 가능성(1-3),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현황 및 문제점

- ⑦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시설공사 불법 및 재하도급 실태 상존
- ⑦ 하도급업자 선정과정이 불투명하고, 저가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발생
- ⑦ 연간 시설공사 총 계약 건수 대비 하도급 비율 28%(131건 중 37건)

개선결과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소속기관 및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전라남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1.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관련 서류의 개선방안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는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3.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5명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시설과장, 전라남도교육시설감리단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2.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건설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리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심사요청 등) 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심사서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방법)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른다.

제11조(회의록 작성 등)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2조(심사결과) 위원회의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절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선 사례

▣ 규정명 : 회계사무처리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39조 (계좌입금) ① 재무규정 제20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담당 또는 계약담당은 계약 체결하는 때 채권자로부터 그 대가를 입금시킬 계좌(대체입금방식, 온라인 방식, 당좌이체방식, 지로방식, 우편대체방식 등을 말한다. 이하 “채권자 계좌 입금”이라 한다)를 기재한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약정(별지 제45호 서식)을 하고 출납담당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시 입금시킬 계좌를 약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가를 청구하는 때에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이하 “채권자”라 한다)로부터 그 거래약정을 할 수 있다.

② 지출원인행위 담당 또는 계약담당은 여러차례 계속하여 동일한 채권자에게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약정서를 제1항에 불구하고 미리 약정하여 출납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서의 변경사항이 생긴 때에는 바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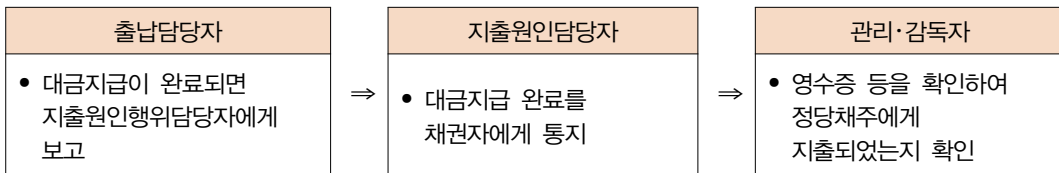
③ 출납담당은 제2항에 따라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약정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 ⑦ 제재규정의 적정성(1-2),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현황 및 문제점

- ⑦ 지출업무처리과정



- ⑦ 관례적으로 정당채주에게 대금지급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지출증빙 서류만 확인하고 있음
- ⑦ 지출업무 처리 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회계(현금취급원)책임자가 날인 후 은행창구에서 현금을 찾아 지로납부 또는 송금 처리를 하고 있어 공금의 횡령·유용 비리행위에 노출됨

개선방안

- ⑦ 회계(현금취급원)책임자가 부패행위에 접근할 수 없도록 자금 지출 프로세스 개선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39조(계좌입금) ① ~ ③ (생략) 〈신설〉	제39조(계좌입금)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출납담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자동납부 및 계좌이체(가상계좌 포함) 2. 전화요금, 전기사용료, 도시가스, 정수기, 신문구독료, TV수신료(유선방송 포함), 무인경비용역료 등 매월 반복적인 일상경상비는 계좌이체(가상계좌 포함) 및 인터넷지로납부(영수증 첨부) 3. 국세, 지방세 및 조달청 구매대금 등은 인터넷지로납부(영수증 첨부) 4. 포상금 및 새업무수주보상금 등은 기관(개인)계좌로 송금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이체, 계좌이체(가상계좌포함), 인터넷지로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영수증 첨부)

▣ 규정명 :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

평가대상 조문

제9조 (적립포인트) ①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는 주관부서에서 일괄 관리하며 개별 사용은 할 수 없다.

평가항목

- ⑦ 특혜발생 가능성(1-3)

현황 및 문제점

- ⑦ (현황)
 - 주유전용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용 차량 주유 시 발생하는 정유사 포인트 (SK okcashbag, GS칼텍스 보너스 카드 등)를 적립할 포인트 적립카드가 없음
- ⑦ (문제점)
 - 공사 업무용 임차차량의 유류를 주유전용 법인카드로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정유사 포인트를 직원 개인의 정유사 포인트에 적립하고 있음
 - 직원 개인의 정유사 포인트를 적립함으로 인해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공용 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를 위반하는 사례 발생

개선방안

- ⑦ 직원들이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명의 주유소 적립포인트 카드를 발급 배부함으로써 부패행위 사전 방지 및 예산절감 동시 달성하도록 개선

개정안	개선권고안
<p>제9조(적립포인트) ① (생략) 〈신설〉</p> <p>③ 제1항의 적립 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하여 접수입으로 계리하여야 하며,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을 대신하여 집행하거나 업무용도 등으로 사용한다.</p>	<p>제9조(적립포인트)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업무용 차량 주유 시 발생하는 주유소 적립 포인트는 공사명의로 포인트 카드로 적립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에서 일괄 관리한다.</p> <p>③ 제1항의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와 제2항의 주유소 적립 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하여 접수입으로 계리하여야 하며,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을 대신하여 집행하거나 업무용도 등으로 사용한다.</p>

▣ 규정명 : 계약사무처리규칙

평가대상 조문

관련 조문 없음

평가항목

- ⑦ 제재규정의 적정성(1-2)

현황 및 문제점

- ⑦ (현황)
 -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과 대면계약을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음
 - 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비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음
- ⑦ (문제점)
 - 대면계약 체결 시 원거리 방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금품·향응수수 등의 부패행위 위험 상존
 - 계약상대방이 부패행위를 하여도 제재규정이 없어 공사에서 시행하는 또 다른 사업에 참여하는 등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 ⑦ 모든 계약업무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하여 부패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공사의 대외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개선 필요
- ⑦ 비위행위자의 공사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민간부문 부패행위 근절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개선 필요

개정안	개선권고안
<p>〈신설〉</p>	<p>제43조의2(전자계약 체결) ① 계약담당자는 제 43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타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p>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 43조제2항제5호·제3항 단서·제66조에 따른 계약 및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등의 매매계약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신설〉</p>	<p>제64조의2 (비위행위자의 참여 제한) ①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p> <p>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 또는 교체일로부터 2년간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p>

▣ 규정명 : 임직원 행동강령

평가대상 조문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이해충돌 가능성(3-3)

현황 및 문제점

- 현지조사반 병·의원 등이 지급받은 진료비용에 대하여 현지에 출장하여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그 결과에 따라 부당금액 환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형사고발 등 직무관련자를 대상으로 침익적 처분을 하고 있어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위법·부당한 청탁 및 금품·향응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또한, 우리 원은 진료비 심사·평가를 위하여 진료기록부 해독능력 등 의학지식을 갖춘 병원근무 경력이 있는 의사·간호사 등을 다수 채용하고 있는데, 이전 근무 병원과의 유착 혹은 특혜제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해관계가 없는 인력으로 현지조사반 구성 필요

개선방안

⑦ 현지조사 요원의 제척·기피제 운영

- 현지조사 요원이 병·의원, 약국 대표자 등과 친인척 관계인 경우, 과거 현지조사 대상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학연·지연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반 편성에서 제외
- 직원 본인의 배우자 및 8촌 이내 친족의 병·의원 개설 혹은 근무현황, 출신지역, 출신고교, 심사평가원 입사 이전 근무병원 현황을 전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해당기관이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조사반에서 자동으로 편성 제외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생략) 1. ~ 3. (생략) <신설> <신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개정안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직무관련자가 심사평가원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경우 5. 직무관련자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자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규정명 : 자동차(부품) 제작결합조사사업 업무지침

평가대상 조문

제15조(부적합 발생 시 조치 등) ① 분야책임자는 제11조에 따라 시행한 적합조사 결과 기준부적합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 결과의 객관성 확보, 향후 조사 일정 및 부적합 결론 도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기술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 시험 진행과정의 객관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시험결과 도출 및 그 결과의 국토교통부 보고에 관한 사항
3. 부적합 대상범위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재시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재시험에 필요한 시험차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포함)

② 분야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개최된 기술위원회 결과를 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는 기술위원회에서 부적합으로 결론을 내린 때에는 3일 이내에 해당 자동차(부품)제작자등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기준적합조사 결과 부적합 발생 통보 및 자료제출 요청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시험 등) ① 총괄책임자는 제13조 제3항, 제15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위원회에서 해당 기준적합조사의 시험절차 및 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결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분야책임자에게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시험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분야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재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기인증요령」 제7조의4 제4항에 따라 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 위원 중 2명 이상을 재시험에 참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분야책임자는 재시험에 참관한 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적합조사 재시험 참관 의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평가항목

- ⑦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이해충돌 가능성(3-3)

현황 및 문제점

- ① 제작결함 자기인증적합조사 부적합 발생 시 제작사가 이의신청하는 경우 재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 재시험 시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 처리절차가 없고,
 - 재시험 시 시험차의 구매방법, 시험대수, 처리결과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음
- ② 자기인증적합조사 재시험 부적합* 발생 시 즉시 국토부에 보고하여 리콜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또는 재시험 부적합 통보를 받고 리콜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재시험 부적합 처리절차에 대한 규정 미비로
 - * 자기인증적합조사 부적합 시 제작사는 최종 리콜 실시함
 - 재시험 부적합 후 제작사가 리콜 실시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지 못하여 리콜 지연 상황이 발생 할 경우 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 재시험차의 구매 시 제작사가 제시한 차량으로 선정·구매하여 시험한 경우 제작사의 합격을 위하여 무작위가 아닌 특정 차량으로 인증조사를 시행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을 훼손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 ① 자기인증적합조사 부적합 발생 시 시험차 선정 및 결과처리 방법을 명문화하여 제작결함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개정안	개선권고안
<p>제15조(부적합 발생 시 조치 등) ① (생략)</p> <p>② 분야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개최된 기술위원회 결과를 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는 기술위원회에서 부적합으로 결론을 내린 때에는 3일 이내에 해당 자동차(부품)제작자등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기준적합조사 결과 부적합 발생 통보 및</p>	<p>제15조(부적합 발생 시 조치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분야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개최된 기술위원회 결과를 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는 기술위원회에서 부적합으로 결론을 내린 때에는 분야책임자의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해당 자동차(부품)제작자등에게 별지 제7호 또는 제7-2호 서식의</p>

개정안	개선권고안
<p>자료제출 요청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안전 기준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6조(재시험 등) ① (생략)</p> <p>② 분야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재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기인증요령」 제7조의 4 제4항에 따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 중 2명 이상을 재시험에 참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분야책임자는 재시험에 참관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적합조사 재시험 참관 의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p>	<p>기준적합조사 결과 부적합 발생 통보 및 자료 제출 요청서를 포함하여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시험 부적합의 경우에는 분야책임자의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해당 자동차(부품)제작자등에게 안전 기준 재시험 부적합 결과를 통보하고, 「자기인증요령」 제7의6제1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6조(재시험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분야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재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자동차와 동일한 모델 2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2대 모두 적합할 경우에만 재시험 적합으로 간주한다. 또한 「자기인증요령」 제7조의 4제4항에 따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 중 2명 이상을 재시험에 참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분야책임자는 재시험에 참관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적합조사 재시험 참관 의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p>

▣ 규정명 :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27조(심사수수료 등) [별표 4 안전인증 등의 수수료]

4. 출장비

가. (생략)

나. 국외출장

공단 여비규칙에 따른 국외출장 여비를 국외 출장비로 징수한다. 다만, 신청인이 항공권을 실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임을 제외하고 징수한다.

평가항목

- ① 준수부담의 적정성(1-1)

현황 및 문제점

-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에 의하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 기계기구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 해외생산제품의 경우, 공단 인증심사원의 국외여비를 인증 신청인이 제공 하도록 되어 있음

< 안전인증 국외출장 현황 >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9월	
	회수	사업장수	회수	사업장수	회수	사업장수	회수	사업장수
계	222	450	77	140	80	172	65	138

- ① 안전인증 국외 신청인이 안전인증 심사를 잘 받기 위해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제공하는 경우 신청인의 실질적 심사 비용 증가

- 심사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항공권을 비즈니스석으로 요구하는 부패 개연성 상존

개선방안

- 안전인증 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는 항공좌석을 공단 예비규칙의 기준이하로 정함으로써 심사비용 증가요인 및 심사원의 부패 개연성 차단
 - ※ 공단 예비규칙(항공운임) : 2등 정액(1급 이하 직원)

개정안	개선권고안
4. 출장비 나. 국외출장 공단 예비규칙에 따른 국외출장 여비를 국외 출장비로 징수한다. 다만, 신청인이 항공권을 실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임을 제외하고 징수한다.	4. 출장비 나. 국외출장 공단 예비규칙에 따른 국외출장 여비를 국외 출장비로 징수한다. 다만, 신청인이 공단 예비규칙에 따른 항공권(좌석등급은 공단 예비규칙의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따른다)을 실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임을 제외하고 징수한다.

▣ 규정명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36조(훈련실적 제출 등) ① 운영기관은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실적 보고」에 따라 훈련실적 등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 ⑦ 제재규정의 적정성(1-2),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2-3)

현황 및 문제점

- ⑦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라 한다)사업*은 자체 훈련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직무능력개발 사업으로,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지속 증가**

* '01년도부터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맺어 그 기관의 우수한 훈련시설을 활용, 중소기업에게 질 높은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능력개발훈련 플랫폼 사업임

** '10년 73,691백만원/ '11년 122,577백만원/ '12년 85,941백만원/ '13년 142,525 백만원

- ⑦ 그러나, 부정수급 등 관계법령 위반에도 별도 조치기준이 없어 출석부 조작 등 훈련비 부정수급 건수 증가
- ⑦ HRD-Net에 훈련 실시 및 수료보고 등을 하지 않고 훈련을 실시하여 훈련생 개인정보 악용 등 부정수급 방지시스템이 미비함

개선방안

- ⑦ 훈련부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관 등에 대하여 조치 기준 마련,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매년 1회 실시하던 모니터링을 연간 2차례 운영기관 현장점검으로

정례화하며 부정수급 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형 컨소시엄 운영기관 등에 대해 특별 점검 실시

- ⑦ 훈련실적 보고를 HRD-Net 등재 실적으로 통일훈련부정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교육장 내 신고포상금제 안내문 비치 의무화

개정안	개선권고안
<p>〈신설〉</p> <p>제36조(훈련실적 제출 등) ① 운영기관은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사업 실적 보고」에 따라 훈련실적 등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p>	<p>제18조의2(지원금의 관리 및 지원중단 등) ① ~ ② (생략)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된 지원금은 반납 받거나 환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이 종료된 경우 2. 규정 제23조의2에 따라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또는 사업이 중단된 경우 3. 운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운영기관이 지원금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지원금을 컨소시엄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p>④ 이사장은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사유 발생 시 별표 5 「약정 위반사항에 따른 조치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이하 생략) ⑤ 제18조의2의 규정은 파트너 기관의 지원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준용한다.</p> <p>제36조(훈련실적 산정 등) ① 운영기관의 훈련 실적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업능력 개발정보망에 등재된 수치로 산정한다. (이하 생략)</p>

▣ 규정명 : 사회공헌활동 운영기준

평가대상 조문

제10조(재원의 집행)

- ① 사랑나눔이 기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사회공헌활동비로 사용한다.
- ② 회사지원경비는 제 ①항의 용도 또는 봉사팀의 운영경비로 사용한다.
- ③ (생략)
- ④ 봉사센터사무국은 봉사활동기금의 입출금시 봉사단기금관리대장(별표 3)을 운영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분기 말일 기준으로 봉사센터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득한 후 전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 ⑦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2-3), 접근성과 공개성(3-1)

현황 및 문제점

- ⑦ 회사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운영 중인 기금은 직원들의 월급여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자발적인 기부로 이루어지며 태풍, 재난사고 등 재해 발생 시 서부발전 자체 봉사단의 봉사활동 경비 및 기부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⑦ 사회공헌활동 운영 기금의 집행 기준이 ‘불우이웃 돕기 성금 등 사회공헌활동비’로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어 기금 집행의 명확한 기준 제시가 미흡 함
 - 회사지원 경비를 봉사팀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회공헌 기금의 목적 외 사용, 편법·불법 사용, 예산 남용 등 부정·부패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
 - 봉사활동 기금의 입·출금 내역을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득하게 한 조항은 담당자와 직상위자 간 유착 시 부정위험의 소지가 있어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로 보기 어려움

개선방안

- ⑦ 명확한 기금 집행 기준 명시
- ⑦ 사회공헌 기금의 목적 외 사용, 편법·불법 사용, 예산남용 방지를 위한 사용기준 명확화
- ⑦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기금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

개정안	개선권고안
<p>제10조(재원의 집행) ① 사랑나눔이 기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사회공헌활동비로 사용한다.</p> <p>② 회사지원경비는 제 ①항의 용도 또는 봉사팀의 운영경비로 사용한다.</p> <p>④ 봉사센터사무국은 봉사활동기금의 입출금시 봉사단기금관리대장(별표 3)을 운영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분기 말일 기준으로 봉사센터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득한 후 전체에 공지하여야 한다.</p>	<p>제10조(재원의 집행) ① 조성된 재원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및 후원, 재난구호, 환경보호 등 사회공헌활동비로 사용한다.</p> <p>② 수혜자와 함께하지 않는 봉사단원만의 식비, 간식비, 교통비 등 사회공헌 활동방향에 적합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비용의 집행은 불가하다.</p> <p>④ 봉사센터사무국은 봉사활동기금의 입출금시 봉사단기금관리대장(별표3)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회공헌시스템/봉사활동관리/계좌입출금내역란에 매월말일기준으로 금액 입력 및 통장사본을 업로드 해야한다.</p>

▣ 규정명 : 임직원 청렴·윤리 규정

평가대상 조문

관련조문 없음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이해충돌 가능성(3-3)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서부발전은 태안 9,10호기 및 태안 석탄가스화 발전소 건설을 위해 125개 하도급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건설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구 분	태안 9,10 건설	태안 석탄가스화발전소 건설
하도급 업체 수	63개	62개

- 건설업체가 본사의 공사를 낙찰받기 전에 낸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변경·추가할 때는 본사의 '계약규정 제 133조'에 의거 검토 및 승인을 받도록 규정화 되어 있음

● (문제점)

- 점검, 품질검사, 기술지도, 현장입회 등 하도급 업무 추진 시 '갑'의 위치에 있는 직원이 감독 및 관리권한 등을 이용하여 금품·향응 요구 등 부정행위 발생 개연성 상존
- 공사 관련 주요 변경사유(계약조건 변경, 계약해지 등)를 감독원 단독으로 확인할 경우 유리한 판정을 빌미로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 상존
- 전문건설업체 수주액에서 하도급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부패행위 발생 개연성이 커, ‘임직원 청렴·윤리 규정’ 등 사규에 의거 공정한 하도급 관리업무 수행 노력이 요구 됨

※ 전문건설업체 수주액에서 하도급공사가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억원, %)

구 분	전문건설업체 도급액(A)	원도급액(B) (발주자→전문건설)	하도급액(C) (종합건설↔전문건설)	비율 (C/A)
2010년	747,578	204,661	542,917	72.62
2005년	579,723	158,483	421,240	72.66
2000년	350,097	115,041	235,056	67.14
1995년	285,819	108,336	177,482	62.10
1990년	80,728	35,576	45,152	55.93

※ 자료 : 국토해양 통계연보(2010년 기준)

개선방안

- ① ‘갑’의 위치에 있는 감독원이 하도급 업체 무단 방문 등을 통해 감독 및 관리 권한을 이용하여 부정행위 유발시킬 수 없도록 관련 규정 신설
- ② 하도급 변경 등 하도급 업무와 관련된 주요 확인 사항은 감독자 단독 확인이 아닌 관련자 2명 이상 복수로 확인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개정안	개선권고안
〈신설〉	제42조(공정한 하도급업무의 수행) ①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를 무단방문해서는 아니 되며 점검·시제품 교정·품질검증·검사·기술지도·현장입회 및 관리감독 등(이하 “하도급업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도급업무 외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조건의 변경, 계약해지 사유의 발생 확인 등을 위하여 수급사업자를 방문할 때에는 관련 직원 2인 이상이 복수로 참석하여야 한다.

▣ 규정명 :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

평가대상 조문

제4조(시험실시) ①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총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응시원서의 교부 장소 및 접수 장소와 그 기한
2. 모집분야 및 임용예정직급
3. 응시자격
4.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5. 시험일자 및 장소
6. 구비서류
7.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8.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

제14조(면접시험 합격결정) ① 면접대상자에 대한 면접시험은 인사위원 또는 2명 이상으로 별도 구성된 면접위원이 행한다.

제21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생략)

- ② 승진임용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는 대상자는 해당 직급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의 서열이 높은 사람 순으로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7배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추천점수를 부여하여 승진 추천자를 의결하고, 회장은 이들 중에서 최종 승진임용자를 결정한다.

평가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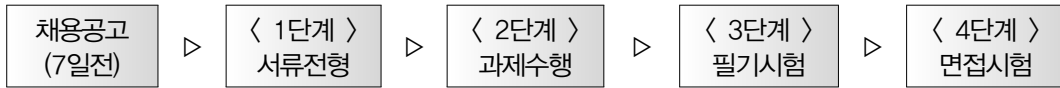
- ⑦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예측가능성(3-2), 특혜발생 가능성(1-3)

현황 및 문제점

- ⑦ 3功(공정·공개·공평)을 원칙으로 하는 채용 및 승진 시행 필요

- 직원채용 시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인사규정시험세칙(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채용단계



- 직원의 승진임용은 예정인원의 7배수를 대상으로 결정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점수를 부여하여 추천자 결정 후 회장 최종 결정에 이르는 5단계임

⑦ (문제점)

- (세칙 제4조)채용절차 및 내용에 대한 對국민 접근성 및 예측가능성 저해
 - 현행 규정상 시험일 7일 전까지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시험일자 및 장소 등’에 대한 사항을 대외매체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직자관점에서 시간이 지나치게 촉박하고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 방법 등’에 대한 공지는 필수적이지 않아 절차의 투명성이 미흡
- (세칙 제14조)면접위원에 대한 제척조항 미비로 평가 시 특혜발생 가능성 우려
 - 면접시험은 직원으로의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절차로서 면접위원 구성의 중립성 및 평가의 공정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응시자와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에 대한 제척규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규정 제21조)승진심사 대상자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재량권 남용 우려
 - 추상적·다의적 규정은 집행과정에서 재량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남용되는 등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재량권자, 재량범위와 기준, 행사절차 등 관련된 사항을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규정하여 과도한 재량권 행사의 통제장치 마련 필요함
- (규정 제21조) 성과중심의 인사주의 원칙 실현 및 추천자 결정의 구체화·객관화 필요
 - 승진심사 대상자가 승진예정인원의 7배수로 규정되어 있어 심도 깊은 평가가 어려우며, 승진심사 대상자 배수가 클수록 결정권자에게 넓은 재량을 부여하므로 재량을 축소시킬 필요 있음
 -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추천자의 정원 범위에 대한 규정의 흠결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범위를 구체화·객관화할 필요 있음

개선방안

- ⑦ 채용내용 및 공고시기를 구직자관점에 맞게 공고하고 면접위원의 제척사항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실시
- ⑦ 승진심사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인사위원회 재량권 남용 억제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승진 제도 운영

개정안	개선권고안
<p>제4조(시험실시) ①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총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시원서의 교부 장소 및 접수 장소와 그 기한 2. 모집분야 및 임용예정직급 3. 응시자격 4.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5. 시험일자 및 장소 6. 구비서류 7.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8.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 (신설) 	<p>제4조(시험실시) ①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총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시원서의 교부 장소 및 접수 장소와 그 기한 2. 모집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3. 응시자격 4. 시험과목, 배점비율, 심사항목 5. 시험방법, 시험일자 및 장소 6. 구비서류 7.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8.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 <p>⑤ 채용 공고전 확정된 임용 예정 분야별 채용규모, 채용절차, 전형일정, 평가기준 등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절차 완료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p>
<p>제14조(면접시험 합격결정) ① 면접대상자에 대한 면접시험은 인사위원 또는 2명 이상으로 별도 구성된 면접위원이 행한다.</p>	<p>제14조(면접시험 합격결정) ① 면접대상자에 대한 면접시험은 인사위원 또는 2명 이상으로 별도 구성된 면접위원이 행한다. 단,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면접위원은 면접에 참여할 수 없다.</p>
<p>제21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생략)</p>	<p>제21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개정안과 같음)</p>

개정안	개선권고안
<p>② 승진임용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는 대상자는 해당 직급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의 서열이 높은 사람 순으로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7배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③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추천점수를 부여하여 승진 추천자를 의결하고, 회장은 이들 중에서 최종 승진임용자를 결정한다.</p>	<p>② 승진임용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는 대상자는 해당 직급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의 서열이 높은 사람 순으로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③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대상자 심의를 통하여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추천자를 의결하고, 회장은 추천자 중에서 최종 승진임용자를 결정한다. 다만, 4급 이하 직원의 승진에 대하여는 본부장(지역본부장을 포함한다.)이 최종 승진임용자를 결정하되, 회장 직속부서는 회장이, 감사 부서는 상임감사위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결정한다.</p>

▣ 규정명 : 정보화업무운영 및 정보보안 업무처리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40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 ① 구축부서의 장은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의 제안서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사업 제안서평가 결과)으로 입찰참가업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부문별 점수

평가항목

- ⑦ 접근성과 공개성(3-1)

현황 및 문제점

- ⑦ 공단의 정보시스템 도입 및 외부 사업자를 통한 용역개발 시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의 제안서 심사 평가결과는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입찰 참가업체들이 용역 심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⑦ 평가결과 공개기준이 과다하게 높아서 행정정보 공개의 투명성 미흡
 - 용역개발 계획은 조달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의 제안서 평가결과는 입찰 참가업체에 공개하지만 추정가액 20억 이상의 계약 건이 2011년 단 1건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없음

< 정보화 관련 사업 용역계약 현황 >

(단위: 건수)

연도	용역 계약 금액			20억이상 계약건 유무
	1억 이상	1억 이하	5천만원이하	
2010년	1	1	3	없음
2011년	1	1	3	1건
2012년	1	1	1	없음
2013년	3		3	없음

개선방안

- 정보시스템 도입 및 외부 사업자를 통한 용역개발 시 평가결과 공개기준의 추정가액을 현실적으로 낮추어 공개하도록 권고

개정안	개선권고안
<p>제40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 ① 구축 부서의 장은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의 제안서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사업 제안서평가 결과)으로 입찰참가업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제40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 ① 구축 부서의 장은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사업의 제안서 평가 후 입찰 참여업체 평가순위, 획득점수 등의 평가결과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사업 제안서평가 결과)으로 입찰 참가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1. ~ 2. (개정안과 같음)</p>

▣ 규정명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및 우대조치에 관한 업무처리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생략)

- ② 이사장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되,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공단 담당사업 국장
 2. 관련분야 공무원
 3. 관련분야 전문가
 4. 기타 이사장이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이해충돌 가능성(3-3)

현황 및 문제점

- 심사위원회 기능 및 구성현황
 - 기능: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 근로자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근무환경 개선, 사업체의 규모, 정부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체*를 선정 (각종 우대사항 있음)
 -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위원은 공단 담당사업 국장, 관련분야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지명하되 위원 정족수의 2분의 1은 외부위원으로 위촉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우대사항

시설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3년간 고용노동부의 정기감독 면제,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정부포상 추천, 조달청의 물품 적격심사 시 가점(2점) 부여, 중소기업청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5점) 부여,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근로복지공단의 능력 개발비용 대부 선정 시 우대, 산재예방시설·장비 구입자금 융자 선정 시 우대

⑦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최소기준 마련 미비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재량범위가 포괄적으로 임의로 심사위원 구성원 수를 조정할 수 있음

<장애인 우수사업주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소속기관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심사위원회				선정사업체 (신청사업체수)
	내부위원	외부위원	계	외부위원비율	
2013년	2	3	5	60%	10개 (30개)
2012년	2	3	5	60%	10개 (38개)
2011년	3	3	6	50%	10개 (36개)

⑧ 외부위원의 자격기준 미비 및 이해충돌 방지 장치 미흡

- 외부위원 자격기준 중에 ‘관련분야 전문가’ 라고 함은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결정권자의 재량범위가 분명하지 못하여 자의적으로 외부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 선임된 심사위원이 심사대상 사업체에 재직한 경험이 있거나 직·간접 이해관계로 심사대상 사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부패개연성이 내재되어 있음

개선방안

- ⑦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최소기준 및 심사위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심사대상과 직·간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심사위원의 제척·
회피 등을 명확히 하도록 권고

개정안	개선권고안
<p>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생략)</p> <p>② 이사장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되,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단 담당사업 국장 2. 관련분야 공무원 3. 관련분야 전문가 4. 기타 이사장이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p>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이사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되, 심사대상 사업체와 직·간접 이해관계자는 제외하고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단 담당사업 국장 2. 관련분야 공무원 3. 관련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기타 이사장이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규정명 : 해외학위 조회지원 서비스에 관한 운영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14조(연구비 지급, 사용 및 관리) ① 관리부서는 연구책임자를 계정책임자로 지정하고, 재단 재무회계 관리 절차를 준용하여 연구비를 지급한다.

② 연구비는 정해진 항목의 용도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비의 정산) ① 관리부서는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기초하여 연구비를 정산하고 연구책임자는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연구비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비 사용이 부당·부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부서장은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부당·부정 집행금액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별표〉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

평가항목

- ⑦ 특혜발생 가능성(1-3),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2-3)

현황 및 문제점

- ⑦ 재단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학술 및 연구개발지원사업의 평가관리, 기획 및 정책수립, 예산배분방안 수립 등으로, 이에 따라 재단 직원의 정책 및 사업 기획의 역량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내부직원 대상으로 정책기획과제를 공모하여 추진함(정책기획과제 관리지침, 2011.7.28. 제정)

- ⑦ 그러나, 재단 내부 직원이 수행하는 정책기획과제 연구비 집행 및 사후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여,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이 저해됨
 - 2012년도 종합감사 결과, 과제 수행자 모두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관리부서는 연구비 정산을 실시하지 않음
 - 또한, 연구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건(995,300원)의 연구비가 연구

- 기간 외에 집행되어 회수함
- 도서 구매 시 소액일 경우 구매 부서를 통하지 않고 개별 구매하여 도서 개인 소장 문제 발생함

개선방안

- ⑦ 연구비 집행 및 사후 관리 절차의 제도적 개선
 - 연구비 집행 시 목적, 예산 포함된 사전 기안 의무화
 - 연구비 집행 증빙자료(영수증 등) 구비 의무화
 - 도서구매 시 소액인 경우에도 구매 부서를 통해 구입하고, 재단 자산으로 관리하도록 제도화
 - 연구비 집행기준, 정산기준, 절차 및 처리기한 등 구체화
- ⑧ 연구비 사용 항목 구체화, 사후 정산 철저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한 연구비 부정 사용 유발 요인을 개선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14조(연구비 지급, 사용 및 관리) ① 관리 부서는 연구책임자를 계정책임자로 지정하고, 재단 재무회계 관리 절차를 준용하여 연구비를 지급한다. ② 연구비는 정해진 항목의 용도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제14조(연구비 지급, 사용 및 관리) ① 관리 부서는 연구책임자를 계정책임자로 지정하여 연구비를 지급한다. ② 연구비의 집행은 <별표>에서 정한 세목별 용도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구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연구진은 사전에 반드시 관련 기안 및 결재를 완료한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④ 연구진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구비 집행 결과물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로부터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비의 정산) ① 관리부서는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기초하여 연구비를 정산하고 연구책임자는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제19조(연구비의 정산) ① 관리부서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비 집행 내역을 최종 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정산을

개정안	개선권고안
<p>한다. 〈신설〉</p> <p>〈신설〉</p> <p>② 제1항에 의한 연구비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비 사용이 부당·부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부서장은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부당·부정 집행금액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p>	<p>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정산기준 및 절차는 당해 기획 과제 선정 당시의 「재단 예산업무 표준화 지침」 및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표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p> <p>③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집행 잔액을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의한 연구비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비 사용이 부당·부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부서장은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부당·부정 집행금액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p>

〈별표〉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개정안)

항 목	세부항목별 산정기준	비 고
연구 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출장 여비 및 현지 교통비 등 	○ 재단 여비규정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정보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 및 자료구입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등 연구정보 수집에 필요한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 소요액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 과정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도서 및 자료구입비는 계상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수행과 직접 관련된 프린트비, 보고서 인쇄비(제본 포함), 문헌 복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처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관련 소모품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조사분석비 (설문조사, 실태조사, 설문조사 분석비용 포함) 	○ 실 소요액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비 및 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문회의, 토론회, 워크샵, 세미나,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식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경비는 1인당 30,000원 이내 ○ 회의장 임차료는 실 소요액 계상 ○ 내부직원에게는 회의수당 지급이 불가하며, 외부 전문가에 한하여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외부 강좌, 세미나 또는 연구 자문 등에 따라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경비 - 원고료 및 번(통)역료, 윤문비 등 	○ 재단 관련 규정 준용

개정안		개선권고안
항 목	세부항목별 산정기준	비 고
	○ 수용비 - 연구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수수료, 입장료 등	○ 실 소요액 계상

〈별표〉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개선권고안)

비 목	세 목	세부항목별 산정기준	비 고 (집행 가이드라인)
직 접 비	연구 장비·재료비	○ 재료 및 전산처리 관리비 - 시약, 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조사 분석비(설문조사 분석 비용 포함)	
	연구 활동비	○ 인쇄비 - 연구 수행과 직접 관련된 프린트비, 보고서 인쇄비(제본 포함), 문헌 복사비 ○ 업무위탁 대가 및 사례금(전문가 활용비) -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자문 등에 따라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경비 - 원고료 및 번(통)역료, 운문비 등 ○ 간행물 등 구입비 - 도서 및 자료구입비 ○ 회의장 사용료 ○ 기타 연구활동비	○ 내부직원에게는 전문가활용비 지급이 불가능하며, 외부 전문가에 한하여 당해연도 '재단 예산업무 표준화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지급시 관련 결과물 및 증빙내역 첨부 ○ 연구수행 과정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도서 및 자료구입비는 계상불가 ○ 과제 추진에 필요한 회의장 사용료 ○ 연구수행과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 수수료, 입장료 등
	연구 과제 추진비	○ 여비 - 연구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출장 여비 및 현지 교통비 등 ○ 소모성 경비 - 연구와 관련된 사무용품비, 필기용구 등 ○ 회의 및 행사개최비 - 과제와 관련된 회의비(회의장 사용료, 전문가 활용비 제외)	○ 재단 여비규정 준용 ○ 회의비 사용 시 회의록 구비

1. 연구비 집행은 당해연도 '재단 예산업무 표준화 지침'에 의거하여 편성
2. 도서 및 소모품 구매 시 소액인 경우에도 재단의 구매부서를 통하여 구매
3. 구입한 도서는 연구기간 종료 후 재단 자산으로 관리토록 함
4. 회의 개최시, 사전에 내부기안을 완료한 후, 관련 예산 집행

▣ 규정명 : 사택운영관리지침 제정

평가대상 조문

- 제7조 (사택운영비 지급기준) ① 임차 사택의 경우 보증금 및 월 임차료는 회사가 지원한다.
 ②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평가항목

- ⑦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2-3)

현황 및 문제점

- ⑦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택운영의 운영비 지원과 공실세대 운영의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미비와 수도광열비의 과다지급 문제 지적됨

개선방안

- ⑦ 사택운영 비용에 대한 사용자(본인)부담으로 개선함으로써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방안에 부응하고자 자체 시행과제로 선정 지침 제정 시행함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7조 (사택운영비 지급기준) ① 임차 사택의 경우 보증금 및 월 임차료는 회사가 지원한다. ②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신설>	제7조 (사택운영비 지급기준) ① 임차 사택의 경우 보증금 및 월 임차료는 회사가 지원한다. ②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③ 개인적 소모성 비품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11조 (공실세대 운영) ① 본사 위치 지역 사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비용의 절을

개정안	개선권고안
	<p>위해 일부 공실세대를 임대 또는 Manager 직급 직원에게 임시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임시배정 사택은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퇴거 하여야 한다.</p> <p>③ 임시 배정세대의 사택운영비 및 기타 제반 운영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단, 누수 등의 설비 수선은 회사에서 지원한다.</p> <p>④ 입주자는 입주기간동안 사택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제9조, 제10조를 준수 하여야 한다.</p>

▣ 규정명 : 소송업무처리내규

평가대상 조문

제3조(적용 범위) ① 공사가 처리하는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은 일반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본 규정에서 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한다.

제17조(소송대리인 선임) ① 송무담당부서장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사건이나 소액사건의 경우 송무담당부서 직원 또는 주무부서의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송무담당부서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소송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 위임장을 교부한다.

평가항목

- ⑦ 준수부담의 적정성(1-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현황 및 문제점

- ⑦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 사건과 민사소송의 처리기준이 없어 소극적 업무 수행으로 부당한 업무처리 가능성 상존
- ⑦ 소송업무처리내규에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 당사자 일 때 처리기준이 없고, 소송사건 발생 시 일회성으로 원칙 없이 처리함에 따라 재량권 행사 남용 및 음성적인 청탁 가능성 상존

개선방안

- ⑦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

사건과 민사소송의 처리기준을 수립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한 임직원의 불이익 제거 및 적극적인 업무 수행 유도

- ⑦ 임직원이 직무상 귀책사유가 없을 시에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명확히 하고, 직무상 귀책사유가 있을 시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출 및 회수 가능토록 확약서 징구토록 명확히 규정

개정안	개선권고안
<p>제3조(적용 범위) ① 공사가 처리하는 소송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일반 법령에 따라 처리 하되, 본 규정에서 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한다. <u><신설></u></p>	<p>제3조(적용 범위) ① 공사가 처리하는 소송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일반 법령에 따라 처리 하되, 본 규정에서 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본안사건, 형사사건, 행정소송, 신청 사건(압류, 지급명령, 추심 및 전부명령,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신청 및 정지신청 등), 경매사건, 비송사건과 공사 임직원이 직무상 귀책사유 없이 민·형사사건의 당사 자가 된 경우로 한다.</p>
<p>제17조(소송대리인 선임) ① 송무담당부서장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사건이나 소액사건의 경우 송무 담당부서 직원 또는 주무부서의 직원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송무담당부서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소송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 위임장을 교부한다. <u><신설></u></p>	<p>제17조(소송대리인 선임) ① 송무담당부서장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소송이 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사건이나 소액사건의 경우 송무 담당부서 직원 또는 주무부서의 직원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송무담당부서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소송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 위임장을 교부한다. ③ 임직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제3조 제2항의 직무상 귀책사유 없이 민·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1호 서식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개정안	개선권고안
<p>〈신설〉</p>	<p>[별지 제11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확 약 서</p> <p>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 甲(직위, 주민등록번호 기재)은 형사 사건(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출 및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은 공사 임직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공사 소송업무 처리내규 등 처리규칙에 의한 공사의 법률지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이 있을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공사에서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 및 이에 대한 회수 비용 일체를 공사에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공사는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을 받게 되는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재산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인은 공사가 지원한 비용 등의 회수를 위해 취하는 사전조치, 본안 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000 (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사장 귀하</p>

▣ 규정명 : 동호회운영지침

평가대상 조문

관련 조문 없음

평가항목

- ⑦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2-3)

현황 및 문제점

- ⑦ 많은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기관 내에서 직원들로 구성된 사내 동호회를 운영하고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기관도 2014년도에 11개 사내 동호회에 대하여 53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⑦ 이에, 우리기관이 지원하는 예산규모가 적어도 예산의 사용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가이드라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관 자체적으로 취약요소를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사내 동호회 운영과 지원 절차 등에 관한 내부규정의 제정을 추진함
- ⑦ 동호회 운영과 관련한 내부규정 제정안에는 동호회별로 가입직원 수에 따라 지원금의 규모를 달리하고 있으나, 직원별 동호회 가입수의 제한이 없어 동호회별 가입직원 수에 허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호회의 운영상 실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⑦ 또한, 동호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금의 부당 사용 시 이를 통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적인 이해의 개입여지와 부패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

개선방안

- ⑦ 「동호회 운영지침」의 제정안에 한명의 임직원이 동호회에 가입 할 수 있는 개수를 제한하고, 예산낭비 및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호회 지원금의 부당 사용 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을 개선권고함

개정안	개선권고안
<p>제4조(동호회 구성) ① 동호회의 회원자격은 금융원에 소속되어 재직 중인 자로 한다.</p> <p>② 회원구성은 부서, 직급, 연령 및 입사 동기 등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동호회는 회원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운영진으로 회장 1명과 총무 1명을 갖추어야 한다.</p> <p>〈신설〉</p> <p>〈신설〉</p>	<p>제4조(동호회 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직원 1인이 3개의 동호회에만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해당 임직원은 「상벌세칙」에 의거 징계하여야 한다.</p> <p>1. 제11조제2항에 따른 동회의 지원금에 대한 사적사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p> <p>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동호회 회원이 지원금의 환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p>

▣ 규정명 : 상벌세칙

평가대상 조문

제5조의2(표창대상자 선정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를 제외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4.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자
5. 재직 중에 형사처벌(벌금형 포함)을 받은 자(다만, 벌금형의 경우 표창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또는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6. 정치적 활동 및 비위사건으로 언론보도 등의 형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의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자

② ~ ③ (생략)

제5조의3(표창의 취소) ① 표창을 받은 자가 공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표창을 취소하고 부상으로 지급한 상품, 기념품 및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생략)

평가항목

- ⑦ 제재규정의 적정성(1-2), 이해충돌 가능성(3-3)

현황 및 문제점

- ⑦ 표창과 관련한 「상훈법」 및 시행령, 「정부 표창 규정」에는 표창수여에 대

한 포괄적인 사항만 정하고 있고, 표창수여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징계·징계절차 진행·기소 중언자와 형사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을 표창추천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① 이에, 「정부표창업무지침」의 제한사항보다 강화하여 주의·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 별적(징계 등) 처분의 강화보다는 상적(표창, 인센티브 등) 조치에서의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개선을 통해 징계·처벌의 적절성을 확보하고자 함
- ② 표창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제외대항이 되는 견책·감봉(최고 6개월)·정직(최고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제5조의2제1항제1호)보다 주의·경고를 받은 자(제5조의2제1항제7호)가 표창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길어 제재규정의 적정성이 미흡하고,
- ③ 언론보도를 통해서 비리자 및 비리업체에 대한 표창취소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허위공적으로 인한 표창취소(제5조의3제1항) 외의 부패행위자에 대한 표창취소 기준이 미비하며, 부패행위자라 하더라도 표창의 수상으로 인한 인사가점 등을 받게 됨

개선방안

- ① 징계처분자를 주의·경고처분자보다 상향된 표창제외 제재기준으로 개선하고, 부패행위자에 대한 표창취소 근거의 마련하여 부패행위자가 수여받은 표창에 따라 금전적·인사상 인센티브를 원천차단 하도록 개선권고함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5조의2(표창대상자 선정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를 제외하여야 한다.	제5조의2(표창대상자 선정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를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근속표창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8조의 근속표창 수여사항에 따른다.

개정안	개선권고안
<p>1.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자</p> <p>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p> <p>3.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p> <p>4.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자</p> <p>5. 재직 중에 형사처벌(벌금형 포함)을 받은 자(다만, 벌금형의 경우 표창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또는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p> <p>6. 정치적 활동 및 비위사건으로 언론보도 등의 형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p> <p>7. 직무와 관련하여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p> <p>8.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의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자</p> <p>② ~ ③ (생략)</p> <p>제5조의3(표창의 취소) ① 표창을 받은 자가 공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표창을 취소하고 부상으로 지급한 상품, 기념품 및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1. 징계처분을 받고 다음 각 목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p> <p>가. 정직 : 24월</p> <p>나. 감봉 : 18월</p> <p>다. 견책 : 12월</p> <p>2.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p> <p>3. 휴직 중에 있는 자</p> <p>4. ~ 10. (개정안과 제2호 ~ 제8호와 같음)</p> <p>② ~ ③ (개정안과 같음)</p> <p>제5조의3(표창의 취소) ① 표창을 받은 자가 공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이거나 표창수여 전 부패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표창을 취소하고 부상으로 지급한 상품, 기념품 및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근속표창은 제외하며, 부패행위로 인한 표창의 취소는 부패행위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여받은 표창에 한한다.</p> <p>② (개정안과 같음)</p>

▣ 규정명 : 회계규정

평가대상 조문

제93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평가항목

- ⑦ 특혜발생 가능성(1-3),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현황 및 문제점

- ⑦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중 공공기관의 입찰비리와 관련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퇴직 임직원의 수의계약 금지방안 마련 권고('14.3)
- ⑦ 공사 「회계규정」에는 수의계약 사유로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임의적 판단)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독소 조항 포함
 - 법률적 근거 없이 사장 및 계약담당자의 임의 판단에 따라 수의 계약 가능 (특혜발생 개연성 상존)

개선방안

- ⑦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요건 강화
 - 수의계약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

- 공사에서 퇴직한 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직 시 해당업체와 2년간 수의 계약 금지

현 행	개정안
<p>제93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p> <p>〈신설〉</p>	<p>제93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①사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서 퇴직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직원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탁 승인한 사항은 제외한다.</p>

▣ 규정명 : 업무추진비 지출 업무처리세칙

평가대상 조문

제8조(지출증빙) ③ 이사장·실장·팀장 및 지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평가항목

- ⑦ 접근성과 공개성(3-1)

현황 및 문제점

- ⑦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공개 강화 내부정책에 따라 이사장을 비롯한 팀·지사장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사용처, 대상 인원 등)하고 있음
- ⑦ 업무추진비 공개범위는 소속부서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는바, 팀·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할 의무가 없어 업무추진비 관련 은폐 등 부패 발생요인 내재
- ⑦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팀·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률이 전체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내역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노력이 시급함

관련 통계

- ⑦ 최근 6개월('14년 4월~9월)간 업무추진비 사용자별 집행내역 분석 결과

(단위 : 건, %)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	점유율
부서장	20	14	22	19	27	18	120	41.8%
직원	32	32	27	29	22	25	167	58.2%
합계	52	46	49	48	49	43	287	100%

개선방안

- ⑦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대상의 범위를 각 부서장에서 기관 전체로 확대하여 집행내역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8조(지출증빙) ① ~ ② (생략) ③ 이사장·실장·팀장 및 지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지출증빙)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지원단 전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부서 별로 구분하여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부 록

부록 1

현행법령 평가사례

제1절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2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제3절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제1절은 2014년도 현행법령 평가 사례를 수록한 장으로,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각 기관의 반부패·청렴업무 추진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과 동시에 권고대상 법령의 소관부처에 이행 협조를 당부하기 위함

제1절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1

실효성 있는 수탁자 관리 강화를 통한 부정행위 근절

평가대상 조문

옥외광고물조례

【지도·감독 등 수탁자 관리장치】

- 규정 없음 : 217개(96%) 지자체
- 우수 조례 : 없음
- 미흡 조례 : 8개(4%) 지자체

제○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지 등 수탁자 제재장치】 없음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문제점

①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로 수탁자의 부패발생요인이 내포

- 대다수의 기관이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이 없어 수탁자에 대한 관리 부실로, 수수료 편취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무처리 등 부패 상존
 - 이로 인해 지방 세수의 누수 및 민원인의 불편 초래

관련 사례

【수탁자의 부정행위】

- ▶ ○○시에서 13년간 게시시설을 위탁관리 중인 △△협회(수탁자)는 '09.1월부터 '13.10월까지 ○○시에 자체 관리 중인 신고 접수대장 보다 적게 신고하여 민원인에게는 신고수수료를 받고, ○○시에는 납부하지 않는 수법으로 신고수수료 40,977천원과 대행수수료 161,176천원을 편취하였으며, 수탁자가 현수막 제작업까지 겸업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총 571,000천원의 불법·부당 수익을 취함(권익위 실태조사, '14. 4월)
- ▶ ○○협회는 실제 게시된 현수막 갯수를 시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행정 빈틈을 악용하여 '12.1월부터 '13.11월까지 24,000천원 상당의 수수료를 착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밝혀짐(중부일보, '13. 11월)

- 옥외광고물조례에 위탁근거가 있는 기관(225개)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217개(96%) 기관은 옥외광고물조례에 지도·감독 등 수탁자에 대한 관리장치가 부재
- 위탁조례는 214개(95%) 기관이 규정에 명시(규정 모두가 불분명한 경우도 11개(5%))

○○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 제○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수탁자에 대한 관리장치 규정 현황 >

(단위 : 지자체수, %)

규정 내용	계 (비율)	광고물조례(A)		민간위탁조례(B)		비 고 (A·B 모두 불분명)
		설정	불분명	설정	불분명	
지도·감독	225 (100%)	8 (4%)	217 (96%)	214 (95%)	11 (5%)	11 (5%)

- 수탁자에 대한 관리장치 부재는 관리청의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제도적 미흡에 따른 부패행위가 지속 유발되는 결과 초래

② 제재규정 미비 및 미온적 조치로 수탁자의 위법행위 재발

- 계약사항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이를 위반한 경우 수탁자에 대한 제재가 곤란함으로, 제재규정 마련이 필요
 - 옥외광고물조례에 위탁근거가 있는 기관(225개) 모두가 옥외광고물 조례에 수탁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음
 - 위탁조례는 47개(21%) 기관이 규정에 명시(규정 모두가 없는 경우도 178개(79%))

< 수탁자에 대한 제재장치 규정 현황 >

(단위 : 지자체수, %)

계 (비율)	광고물조례(A)		민간위탁조례(B)		비 고 (A·B 모두 불분명)
	설정	불분명	설정	불분명	
225 (100%)	0 (0%)	225 (100%)	47 (21%)	178 (79%)	178 (79%)

- 일부(85개, 62%) 지자체의 경우는 수탁계약서에 제재사항을 두고 있으나, 수탁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미흡

관련 사례

【제재의 실효성이 낮은 경우】

〈○○시 위·수탁계약서〉

제○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해지에 따른 일체의 권리주장이나 손해배상요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관계법령 및 규정, 계약서를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나. 현수막게시대 수탁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수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다. 수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잦은 민원발생 시에는 별표 1에 의거 처리

〈별표 1〉

주 의	경 고	해 지
동일내용 3회 이상	주의 3회 이상	경고 3회 이상

☞ 수탁자가 27회(=위반3×주의3×경고3) 이상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하여 실효성이 낮음 (권익위 실태조사, '14. 7월)

▶ ○○시는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관리를 '03년부터 ◆◆광고에 위탁하고 있으나, 수탁자가 '11. 6월~12월 기간 중 1,150건의 현수막에 대하여 7일간 계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14일 동안 계침하고, 1주일간의 수수료 3백여만원과 대행수수료 9백여만원 총 12백여만원을 편취하다 ○○시에 적발되어 수수료 300백여만원을 납부, 이후에도 부정행위 수탁자에게 계약만료 시까지 계속 위탁 (권익위 실태조사, '14. 3월)

개선방안

① 수탁자에 대한 관리장치 마련을 통한 부패차단

- 수탁자에 대한 관리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등 수탁자 관리 장치를 마련하여 수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

〈예시〉

- 수탁자의 적법한 사무처리를 확인하기 위해 보고 또는 서류 등을 검사토록 규정
- 지도·점검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
- 지도·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정사항 발견 시 필요한 조치 이행

참고 의견

1. 수탁자의 수수료 편취를 방지하고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 강구
 예) 제 ○조(회계관리) 수탁자는 게시시설 위탁 운영·관리 회계를 특별회계(전용 계좌 △△은행 559-12-003001)로 관리하고 수지정산 보고서, 개인별·월별 현수막 신청·접수내역, 대행료 수입과 유지관리의 필요경비 지출 내역 등을 구분하여 익월 ○일까지 전용계좌 잔고증명 및 입출금거래 내역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게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지출은 전자카드 등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2. 정례적인 지도·감독 외에 수탁자가 예측 불가능한 불시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부정행위 방지 효과 극대화

② 계약 취소 등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 마련으로 부패재발 방지

- 부정한 행위를 한 수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위탁의 취소 등) 제재를 통해 부패차단 및 재발 방지

〈 예 시 〉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는 당연 계약 취소토록 규정
-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등은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 취소하도록 규정
- 지도·점검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위탁계약 취소토록 규정
-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는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규정

참고 의견

1. 수탁자의 부정행위 적발 시 옥외광고물 신고수리 업무의 공백을 염려한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제재(계약의 취소 등)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체 업체를 사전에 확보하여 미온적 시정조치를 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
2. 수탁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았던 업체 또는 업무종사자는 차기 수탁자 선정 시 적격업체 평가에 반영

- ▶ 규정이 없는 지자체 : 신설
- ▶ 규정이 미흡한 지자체 : 개선안을 참조하여 보완·정비

【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현 행	개선안(예시)
〈신설〉	제○조(지도·감독 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 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 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제○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 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 하거 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 단 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 가 발생 하였을 때
〈신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 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 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공정성 제고

평가대상 조문

옥외광고물조례

제○조(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조제○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계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계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조(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조제○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계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계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지정계시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 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225개 지자체에서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 근거를 두면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수탁자 선정과정 등 관련 규정이 대부분 위 사례와 같이 미흡함.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접근성과 공개성(3-1), 이해충돌 가능성(3-3)

문제점

③ 근거규정 없는 수의계약으로 특정인에 대한 특혜 소지

○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기관(138개) 중 66개(48%) 기관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없어,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특정인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

< 공개경쟁을 하지 않는 경우 현황 >

(단위 : 지자체수, %)

계 (비율)	공개경쟁	공개경쟁을 하지 않는 경우		
		소계	제한·수의	규정없이 내부방침
138 (100%)	72 (52%)	66 (48%)	51 (37%)	15 (11%)

- 196개(87%) 기관은 광고물조례에 수탁자 선정방법 및 기준이 없으나, 위탁조례는 209개(93%) 기관이 규정에 명시(규정 모두가 없는 경우도 15개)

< 수탁자 공개모집 규정 현황 >

(단위 : 지자체수, %)

계 (비율)	광고물조례(A)		민간위탁조례(B)		비 고 (A·B 모두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225 (100%)	29 (13%)	196 (87%)	209 (93%)	16 (7%)	15 (7%)

-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1)을 수의계약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법제처 해석('07.3.23. 07-0044)에 의하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
 - 수의계약은 다른 법령에 수탁자의 명칭이 명시된 것만을 의미

④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미흡으로 수탁자 선정과정이 불투명

- 대부분의 지자체(219개, 97%)에서 광고물조례에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위원회의 심의 없이 수탁자를 선정 하여 선정 과정의 불투명 초래

<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현황 >

(단위 : 지자체수, %)

계 (비율)	광고물조례(A)		민간위탁조례(B)		비 고 (A·B 모두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225 (100%)	6 (3%)	219 (97%)	209 (93%)	16 (7%)	16 (7%)

- 또한,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규정한 기관(6개, 3%)의 경우에도 위원회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할 장치가 없어(99%) 공정한 심의를 저해

< 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장치 규정 현황 >

(단위 : 지자체수, %)

계 (비율)	광고물조례(A)		민간위탁조례(B)		비 고 (A·B 모두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225 (100%)	2 (1%)	223 (99%)	27 (12%)	198 (88%)	196 (87%)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관련 사례

【위원의 사적 이해충돌】

- ▶ ○○시는 '12. 2월 2개 업체가 응모한 광고물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결정하기 위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6명을 구성하여 심의 절차를 거쳐 ○○협회를 수탁자로 결정하였으나,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김○○는 업무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시의회 의원을 지낸 수탁자와 막역한 사이여서 공정한 심의를 저해할 소지도 있었으나 ○○시는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킴 (권익위 실태조사, '14.4월)

⑤ 행정편의적 위탁 연장으로 특정인의 특혜 부여 등 부패발생 초래

- 옥외광고물조례에 수탁자에 대한 성과평가 규정이 없어,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행정기관 편의적으로 기존업체와 위탁을 연장함으로써 기존 특정인에게 특혜 부여
 - 221개(98%) 지자체는 광고물조례에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하고,
 - 민간위탁 기관(138개) 중 87개(63%) 기관은 기존업체와 6년 이상 장기계약

〈 수탁자와의 장기 위탁 현황 〉

- ▶ ○○시의 경우는 최초 광고물 게시시설이 설치된 1985.5월부터 옥외광고물 협회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30여년간 재위탁 중이며,
 - 6년 이상 장기협약을 맺고 있는 경우는 87개(63%)에 달함

(단위 : 지자체수, %)

위탁기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38	19	3	7	8	5	5	4	1	27	12	9	9	6	8	8	6	1
0~5년(37%)	51	11	-	1	7	1	3	-	-	7	4	4	1	2	4	4	2	-
6~10년(29%)	40	7	1	1	-	4	2	-	1	5	5	2	3	3	1	2	3	-
11~15년(24%)	33	1	2	5	1	-	-	4	-	4	2	3	5	1	2	1	1	1
16~30년(10%)	14	-	-	-	-	-	-	-	-	11	1	-	-	-	1	1	-	-

관련 사례

【행정기관 편의적으로 위탁 연장이 가능토록 계약】

- ▶ 7개 지자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1개 지자체를 제외한 6개 지자체가 계약서에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재계약에 대한 평가 방법, 기준 및 기한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민·관 유착의 부패 유발 요인 내재
- ▶ ○○시 위·수탁 계약서
 - 제2조(위탁기간)**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3년)로 한다. 단,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재계약할 수 있다.
 - 제15조(계약연장)** 제2조 단서규정에 의거 “을”이 계속하여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에 연장 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이러한 기존업체와의 장기 위탁은 신규업체의 진입을 차단하고, 기존업체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부여로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 개선방안

③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 및 기준 등 마련으로 공정·투명성 제고

- 수탁자 선정방법 마련 및 계약기간 명확화

〈 예 시 〉

-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와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수의계약 시에는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여 투명성 확보
- 예측가능성이 있도록 기본 위탁기간을 명시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는 연장 횟수를 규정하여 장기 연장을 방지

- 수탁자 선정기준 마련

〈 예 시 〉

- 위탁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재정·책임능력이 있고, 관련 전문성을 갖추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

④ 내실있는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활성화

-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 장치(제척·기피·회피) 마련으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참고 의견

1. 위원의 위촉 시에는 전문성이 있는 민간 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 후보군 모집 시 자격, 이해관계 등 사전검증 철저

⑤ 위탁업체에 대한 성과평가 규정 마련으로 특혜 차단 등 부패근절

- 위탁업체에 대한 성과평가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여 평가를 통한 위탁기간 연장으로 기존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 차단 및 공정성 확보

< 예 시 >

-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재위탁)할 경우는, 위탁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참고 의견

1. 수탁계약서 체결 시 관련규정에 근거 없는 연장계약(재위탁)과 관련된 불분명한 규약을 통한 자의적인 위탁기간 연장 지양
2. 계약연장(재위탁)에 대한 횡수 제한이 없어, 장기화 되는 관행적인 계약 연장을 지양하기 위해 일정 횡수 경과 시 재 모집공고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재선발 단, 기존업체와 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경쟁을 통한 적격자선정 결과 또다시 기존업체가 선정될 경우는 재위탁이 아닌 신규계약으로 보아야 함

- ▶ 규정이 없는 지자체 : 신설
- ▶ 규정이 미흡한 지자체 : 개선안을 참조하여 보완·정비

【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현 행	개선안(예시)
<p>제○조(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 등)</p> <p>① 시장은 도 조례 제○조제○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계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계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p> <p>②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조(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 등)</p> <p>① 시장은 도 조례 제○조제○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계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계시대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 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p> <p>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p> <p>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p> <p>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 계 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제○조에 따른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p> <p>④ 위탁기간은 ○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1. (필요 사유 구체적으로 규정)</p> <p>2. (필요 사유 구체적으로 규정)</p> <p>⑤ 제4항의 단서와 같이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 우, 위탁기간 만료 ○일까지 위탁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자선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⑥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 을 선정할 경우에는 제○조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신설〉</p>	<p>제○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한다.</p> <p>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시설· 장비</p> <p>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p>

현 행	개선안(예시)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제○조(적격자선정심의회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적절성, 적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격자선정심의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인을 포함하여 ○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2. ∴ ④ 심사 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신설>	제○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법인·단 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대상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 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 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3

민원인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주는 행정서비스 개선

▶ 평가대상 조문

옥외광고물조례

【반환불가 조례】 209개(93%) 지자체

제○조(수수료) ① (생략)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규정 없음】 15개(6.6%) 지자체

【반환가능 조례】 1개(0.4%) 지자체

제○조(수수료) ① 법 제○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문제점

⑥ 신청 취소 등 정당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민원인의 불만 야기

- 민원인이 납부한 신고수수료를 ‘신청 취소’ 또는 ‘과오납’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나,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민원인에게 부당한 비용 징수
 - 옥외광고물조례에 위탁근거가 있는 기관(225개)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209개(92%) 기관은 조례에 옥외광고물 신청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수수료징수조례는 173개(77%) 기관이 반환하도록 규정에 명시

〇〇시 수수료 징수조례

- ③ 제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 신고수수료 반환 규정 현황 >

(단위 : 지자체수, %)

계 (비율)	광고물조례(A)			수수료조례(B)		
	반환가능	반환불가	규정없음	반환가능	반환불가	규정없음
225 (100%)	1 (1%)	209 (92%)	15 (7%)	173 (77%)	28 (12%)	24 (11%)

※ 수수료조례에는 77%가 수수료를 반환, 광고물조례에는 1%(1개)만 반환

- 또한, 7개 기관의 표본 실태조사 결과, 미반환 수수료 약 11백만원('13년)

관련 사례

【2013년도 수입증지대 과오납한 경우】

(단위 : 천원, 건)

구 분	〇〇시	〇〇시	〇〇시	〇〇시	〇〇시	〇〇시	〇〇시
① '13년도 징수액	46,185	40,608	9,360	38,049	17,424	232,530	22,608
② '13년도 수리 건수	15,395	6,768	936	4,110	5,356	46,506	7,536
③ 조례의 건당 증지대	3	6	10	7	3	5	3
→ 과 오 납 액	0	0	0	9,279	1,356	0	0

※ 과오납액 산출 : 서면조사 시 제출된 징수액 -('13년도 수리건수×조례로 정한 증지대)

(권익위 서면 실태조사, '14. 4월)

- 따라서, 수수료가 소액으로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정

▣ 개선방안

⑥ **정당한 반환 사유의 수수료를 민원인에게 반환토록 규정 개선**

- 과오납, 신청인의 신청사항 변경 및 철회, 공무원의 착오 등 정당한 반환 사유가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신고수수료를 반환하도록 옥외광고물 조례 규정을 공정하게 개선하여 민원인의 부담 완화

- ▶ 규정이 없는 지자체 : 신설
- ▶ 규정 불합리한 지자체 : 개선안을 참조하여 합리화

【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현 행	개선안(예시)
<p>제○조(수수료) ① (생략)</p> <p>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u>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u></p>	<p>제○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 지의 경우에만 해당 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 5. ...

제2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1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규정 정비로 예산낭비 방지

▣ 평가대상 조문

폐기물관리조례

【조례 미제정】 122개 지자체(71%)

【우수 조례】 대행료 정산을 규정한 51개 지자체(29%)

제00조(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군·구청장)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각각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행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에 의한다.

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2. 수집, 운반, 처리방법
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당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소요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군수·구청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2-3)

문제점

① 대행료 정산 및 허위·부당 청구 등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어 재정누수

- 대행처리 173개 지자체 중 122개 지자체(71%)는 ‘폐기물관리조례’ 등에 대행료 정산 규정이 없어 정산을 하지 않고, 계약금액대로 지급하여 지방재정 낭비
- (실태조사) 131개 지자체(76%)는 대행료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대행료 정산 규정 및 정산 현황 >

소 계	대행료 정산 규정		소 계	대행료 정산 실시	
	규 정	미 규 정		실 시	미 실 시
173	51	122 (71%)	173	42	131 (76%)

(권익위 실태조사, '14. 8월)

- (전수조사) 권익위가 '13년도에 대행료 정산을 실시한 42개 지자체의 조사 결과, 정산절차를 통해 당초 계약금액 대비 약 34억원의 예산을 절감

< 대행료 정산에 따른 예산절감 사례 >

(단위 : 천원, '13년도 기준)

구 분	지자체수	계 약 금 액	최 종 금 액	변 동 액
감 액	24	149,354,817	144,422,416	(감)4,684,350
증 액	6	29,472,787	30,716,174	(증)1,243,387
변동없음	12	81,734,164	81,734,164	-
계	42	260,561,768	256,872,753	(감)3,440,963

(권익위 실태조사, '14. 8월)

- (표본조사) 대행업체의 대행료 허위·부당청구에 대하여 5개 지자체를 표본 조사한 결과, 3년간 미화원 등의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과다 계상하고 청구하여 12억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음

< 대행료 허위·부당 청구 및 지급 현황 >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구 분	부당청구액	부당청구내용
○○시 ◇구	19,590	수집운반 수수료 과다청구
◆◆시 □□구	42,383	차량수리비 허위청구
■■시 △구	78,059	근로자 급여 부풀려 청구
▲▲도 ▽▽시	1,015,997	차량수리비 및 유류비 과다 계상 청구
▼▼ <<시	68,822	근로자 급여 부풀려 청구
계	1,224,851	

(권익위 실태조사, '14. 8월)

- (언론보도) 일부 대행업체는 미화원 등 근로자에게 '비정규직 권익보호 회계통첩'*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지자체와 계약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부패가 지속적으로 발생

관련 사례

【인건비 지급 부적정】

- ▶ ○○시는 2014년도 미화원 등의 인건비를 상향(운전원 24.7%, 수거원 16.9%)하여 계약하였지만, A업체는 10%, B업체는 4~14%, C업체는 9~11%, D업체는 10%의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 (○○일보, '14. 5월)

*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회계통첩'(안전행정부, '06. 12월) : '0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단순노무 일반용역은 ① 낙찰하한율을 87.7% 이상 ②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에 낙찰율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 ③ 위반 시 계약 해지조건을 부여

- 모든 지자체가 '폐기물관리조례' 등에 대행업체에서 허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행료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어 지자체에서 대행료를 환수하지 않아 지방재정 누수

- (표본조사) 대행료 부당청구 환수에 대하여 5개 지자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2개 지자체는 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1억4천7백만원을 환수하지 못하였고, 3개 지자체는 계약진행 중에 환수하거나 소송을 통해 환수

< 대행료 허위·부당 청구 환수 현황 >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구 분	부당 청구액	부당청구분환수			미환수사유
		환수액	미환수액	환수근거	
○○시 ◇구	19,590	19,590	-	계약서 제18조	-
◆◆시 □□구	42,383	42,383	-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	-
■■시 △구	78,059	-	78,059	-	계약기간만료
▲▲도 ▽▽시	1,015,997	1,015,997	-	법원 판결결과(고지서로 부과)	-
▼▼ <<시	68,822	-	68,822	-	소송 중
계	1,224,851	1,077,970	146,881	-	

(권익위 실태조사, '14. 8월)

▣ 개선방안

① 대행료 정산 및 부당청구 대행료 환수규정 마련으로 재정누수 차단

<대행료 정산>

- 대행료 정산규정을 마련하고, 정산을 실시하여 예산낭비 차단

※ (예) 대행료 지급 시마다 정산을 의무화 하고, 대행료를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산 실시

▶ 광주시 광산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

* 톤당 단가제(구청장이 정한 톤당 단가에 실제 처리한 폐기물량을 곱한 실비 지급) 도입·확대 의무 규정

- 대행료를 정산 시에는 인건비의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준수 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청소근로자 권익 보호

※ (예) 근로자의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경고, 계약해지 등의 처분 명시

< 전문가 자문 결과 >

- ▶ 대행료를 사후 정산할 경우 인건비성 경비(임금, 보험료 등)를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대행업체 근로자의 권익보호 방안 마련 필요
- 다만, 대행업체의 자율권 및 사업탄력성(월요일, 여름철 등 청소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임시 단기인력 고용 필요)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정산 실시

<대행료 환수>

- 허위 등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한 대행료에 대한 환수규정 마련으로 재정누수 방지

※ (예)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환수하도록 규정

- ▶ 조례 미제정 지자체 : 개선안을 참고하여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규정 신설
- ▶ 우수 조례 지자체 : 개선안을 참고하여 대행료 환수규정 신설

【예시】 시·군·구 폐기물관리조례

현 행	개선안(예시)
<p>〈신설〉</p>	<p>제00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p> <p>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행계 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 시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 할 수 있다.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행업체 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행 업체에서 미 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p>

2

공정·투명한 대행자 선정 규정 마련 및 계약에 대한 부패 차단

▶ 평가대상 조문

폐기물관리조례

【조례 미제정】 116개 지자체(67%)

【미흡 조례】 선정방법과 기준 중 하나만을 정한 30개 지자체(17%)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구역,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지정 등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위탁대행 계약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기존의 위탁 대행지역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주의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 변동 등으로 대행지역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우수 조례】 선정방법과 기준을 모두 정한 27개 지자체(16%)

제9조(생활폐기물 등의 처리대행)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계약 성실이행평가에서 적격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두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체선정과 대행계약 성실이행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관련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시·군·구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1-3),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 문제점

② 대행자를 자의적으로 선정하여 부패유발요인이 상존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은 대행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나,

- 대부분의 지자체는 대행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고 특정 업체를 대행자로 선정하여 선정과정이 불투명

관련 사례

【대행자 선정 관련 특혜 시비】

- ▶ ○○시는 긴급입찰을 통해 추정금액 25억원(3년간)의 민간대행 청소용역을 모집하면서 입찰참가 자격과 대상, 기일을 제한 공고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뉴시스, '14. 1월)
- ▶ ♣♣시가 장기위탁을 주고 있는 청소대행업체는 모두 4군데로 ●●●● 28년, ●●●● 26년, ■■■■ 15년, □□□□ 14년 등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리 세습도 가능 (○○동부, '12. 9월)

- **(선정방법)** 173개 지자체 중 116개 지자체(67%)가 관련규정이 없어 자의적으로 대행자를 선정, 57개 지자체(33%)만이 공개 경쟁 등으로 선정방법을 규정
- **(선정절차)** 143개 지자체(82%)가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단지 30개 지자체(18%)만 신청서 평가 등으로 선정절차를 규정

< 대행자 선정방법 및 절차 규정 현황 >

선 정 방 법					선 정 절 차				
소 계	공개 경쟁	신청서 접수	타법 준용	의회 등의	소 계	신청서 평가	타법 준용	별 도 기준 등	의회 등의
57	31	19	4	3	30	17	5	6	3
*대행 173개 중 미규정 116개 (67%) : 173-57					*대행 173개 중 미규정 143개 (82%) : 173-30				

(권익위 실태조사, '14. 8월)

- **(설문조사)** 권익위가 특정업체를 대행자로 선정한 135개 지자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선정 사유를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57%), '경쟁시장 형성 어려움'(19%), '업무의 연속성'(12%) 순으로 응답, 공개경쟁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

< 계약방법 선정 사유 >

소 계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	경쟁시장 형성의 어려움	업무의 연속성	수의계약사유 당	기 타
244	119	65	46	8	11

※ 1, 2순위 복수응답 허용

(권익위 실태조사, '14. 8월)

- (현행법령) 「지방계약법」,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
 ※ ‘폐기물관리조례’ 등에 수의계약 사유를 규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가능

〈 수의계약 집행근거 및 적용 적정성 여부 〉

- ▶ 일부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또는 ‘민간위탁조례’를 수의계약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²⁾은 법제처 해석('07. 3. 23.)에 의하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대행자가 다른 법령에 명칭이 명시된 경우에만 수의계약 가능)
 - 민간위탁조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위탁’이 아닌 ‘대행’이므로 대행자 선정의 적용 조례가 아님

③ 조례에 근거 없이 기존업체와 장기계약으로 공정한 경쟁 저해

- 계약연장 규정이 없는 119개 지자체(84%)는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 등을 사유로 동일업체와 10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부여
 - 신규업체 진입차단에 따른 산업경쟁력 저하, 독점운영에 따른 청소 서비스 질 저하
 - (조례) 146개 지자체(84%)는 대형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고, 139개 지자체(80%) 역시 계약연장에 관한 규정이 없음

〈 대형계약기간 및 연장 규정 현황 〉

계 약 기 간					계 약 연 장
소 계	1년	(최소)2년	3년(이내)	5년 이내	
27	12	6	8	1	34
*대형 173개 중 미규정 146개 (84%) : 173-27					*미규정 139개 (80%) : 173-34

(권익위 실태조사, '14. 8월)

- (사례) 수의계약 135개 지자체 중 119개 지자체(88%)가 동일업체와 10년 이상 장기계약하고 있고, 8개 지자체는 30년 이상 장기계약

〈 동일업체 누적계약기간(수의계약) 〉

계	10년 이상				10년 미만
	소 계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135	119 (88%)	65	46	8	16

(권익위 실태조사, '14. 8월)

2)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개선방안

②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자 선정방법 및 기준 마련

- ‘폐기물관리조례’ 등에 대행자 선정방법 및 기준 마련으로 특정업체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사전 차단
 - ※ (예) 대행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대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등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를 각 지자체별 상황 및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의 범위 내에서 수의 계약으로 대행자 선정

- ▶ 서울시 종로구 : 경쟁입찰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를 설치(구성과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참고 사례

【입찰 탈락업체 장비 및 인원 활용 방안】

- ▶ 광주시 남구 : 미화원 등 근로자 및 암롤 등 청소장비를 신규업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신·구 업체간 손실 및 비용 최소화)
- ▶ 대구시 달서구 : 입찰 탈락업체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도록 함 (탈락업체의 영업권 보장으로 영세업체 도산 방지)

일본의 대행자 선정방법

▶ 수의계약에서 일반입찰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

- 일본은 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한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는 사례가 일반적임
- 그러나, 최근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면서 수의계약에서 일반입찰방식으로 전환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 개선방안 연구, 환경부, '08. 11월)

〈 대항계약 공개경쟁에 대한 권익위 현장 의견수렴('14. 7월) 〉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이 영세하고, 수집·운반 실적이 부족하여 적격 심사기준을 만족하는 업체가 극히 드물어 적정업체 선정에 어려움 발생하고 있음. 「지방계약법」에 따른 적격심사 외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에 적합한 다른 방식의 선정방안 검토 필요 (○○도 ■■■시 생활 폐기물 대행 업무담당자)
- ▶ 기존의 수의계약(약 19년간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폐지하고, 200x년부터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적용기준 등의 부재로 입찰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주무부처에서 입찰 집행 관련 표준안(가이드라인)의 제시 필요(○○시 ■■구 생활 폐기물 대행 업무담당자)

③ 계약기간 및 계약연장(재계약) 규정 마련으로 부패유발요인 차단

○ 대항계약기간 및 계약연장 규정 마련으로 공정한 경쟁 보장

- ※ (예) 대항계약기간을 2~3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연장(재계약) 사유를 대항실적 평가결과 우수업체 등으로 정하고, 계약연장(재계약) 횟수를 2~3회로 정함
- ⇒ 환경부 지침은 계약연장 횟수를 3회 한도로 정하고 있음

▶ 서울시 종로구 : 대항계약기간은 3년, 대항실적 평가를 통해 적격업체와 2회 재계약 허용

- ▶ 우수 조례 지자체 : 개선안을 참고하여 선정방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
- ▶ 미흡 조례 지자체 : 개선안을 참고하여 선정방법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 ▶ 조례 미제정 지자체 : 개선안을 참고하여 선정방법과 기준을 신설

【예시】 시·군·구 폐기물관리조례

현 행	개선안(예시)
<p>제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구역, 대행업체 등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대행구역은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④ 기존의 위탁지역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과실이 없으면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분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인력·장비 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와의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 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 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 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p> <p>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p> <p>2.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 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p> <p>.....</p> <p>0. 기타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시장 (군·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p> <p>③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0년 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p>1.</p> <p>2.</p> <p>3.</p> <p>4.</p> <p>④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 대행 실적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 연장은 업체당 연속 0회 이내로 한다.</p>

3

대행실적 평가의 내실화 제고 및 평가위원회 공정성 강화

▶ 평가대상 조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미제정】 30개 지자체(17%)

【미흡 조례】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모두 정하지 않은 111개 지자체(64%)

【우수 조례】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중 하나 이상을 정한 32개 지자체(19%)

제5조(평가방법 등) 평가에 따른 배점은 주민 만족도 평가 30점, 평가단 현장평가 40점, 실적서류 평가 30점으로 하며, 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만족도 평가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인터넷, 전화, 우편 등 주민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가하며 대상은 해당 지역 주민 20세 이상 성인 가구원 200명으로 한다.

나. 표본 수는 별표 2, 평가항목과 배점은 별표 3, 설문지는 별표 4와 같다.

2. 평가단 현장평가

가. 평가단은 지역주민, 해당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하고 평가 인원은 대행업체당 2명으로 한다.

나. 표본수 1개소당 평가지역은 단독주택지역 50개소, 공동주택지역 10개소, 상가지역 50개소로 하며 조사일은 수거 지정일 또는 수거 다음날에 조사 한다.

다. 표본수는 별표 5, 평가 항목과 배점은 별표 6, 평가표는 별표 7부터 별표 12와 같다.

3. 실적서류 평가

가. 청소업무 담당부서 공무원이 업체에서 제공한 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며 필요 시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나. 항목과 배점은 별표 13, 대행업체 작업자 만족도 조사표는 별표 14, 서류 평가표는 별표 15와 같다.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이해충돌 가능성(3-3)

▶ **문제점**

④ **대행실적 평가규정 미비로 부실 대행업체 제재 곤란**

-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아 부실한 대행자에 대한 제재가 미흡

< 대행실적 평가 관련 「폐기물관리법」 규정 >

▶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 및 제3호)

- 173개 지자체 가운데 143개 지자체가 평가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이 중 대부분의 지자체는 실질적인 평가기준, 항목·배점에 관한 세부규정이 없음
- 143개 지자체 중 조례에서 평가기준을 규정한 지자체는 9개(6%), 평가 항목 및 배점을 명시한 지자체는 29개(20%)임

< 대행실적 평가기준 등 규정 현황 >

		평 가 조 례			
미제정	제정	평 가 기 준		평가항목 및 배점	
		규 정	미 규 정	규 정	미 규 정
30	143	9	134	29	114

(권익위 실태조사, '14. 8월)

⑤ **평가위원회 운영 미흡으로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저해**

-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대행실적 평가를 민간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조례에서 이를 규정 하지 않아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저해

〈 평가위원회 관련 「폐기물관리법」 규정 〉

▶ 대항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

- (조례) 98개 지자체(대항처리 173개 지자체의 57%)는 평가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고, 평가위원회를 두고 있는 75개 지자체(43%)는 자격 및 구성 비율을 불명확하게 규정

〈 평가위원회 관련사항 규정 현황 〉

평 가 조 례							
미규정	규 정	자격 및 구성비율		임기·연임 규정		이행충돌방지	
		규 정	미규정	규 정	미규정	규 정	미규정
98	75	73	73	29	46	22	53

(권익위 실태조사, '14. 8월)

- (사례)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이해 관계인이 위원으로 임명되는 부적절 사례 발생

관련 사례

【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부적절】

- ▶ ♠시 ♥♥구는 평가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3인(공무원), 위촉직 6인을 임명 하면서, 위촉직 위원에 ♥♥환경시설공단 ♣♣사업소장을 임명
- ♣♣환경시설공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부터 생활폐기물을 인계받아 최종처리하는 기관으로 대행업체와 이해관계자임 (권익위 실태조사, '14. 7월)

▶ 개선방안

④ 대항자 평가관련 규정 마련으로 평가제도의 내실 강화

- ‘폐기물관리조례’ 또는 ‘대항실적 평가 조례’ 등에 대항자 평가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부실 대항자 관리 철저
- ※ (예) 관련 조례에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명시하고, 평가기준도 조례에 포함

- ▶ 경기도 안성시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방법을 조례에 규정하고, 세부기준 및 결과활용 방법 등을 별표로 정함

⑤ 평가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평가제도의 공정성 강화

- 평가위원회 관련 규정 마련으로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 ※ (예) 민간전문가의 자격 및 위원별 구성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 ※ (예)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을 마련하고, 평가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및 해촉 규정 마련

- ▶ 우수 조례 지자체 : 개선안을 참고하여 위원회 구성·운영기준 등 보완
- ▶ 미흡 조례 지자체 : 개선안을 참고하여 평가기준 및 위원회 구성·운영기준 규정
- ▶ 조례 미제정 지자체 : 개선안을 참고하여 평가기준 및 위원회 구성·운영기준 등 신설

[예시] 시·군·구 폐기물관리조례 또는 대행실적 평가 조례

현 행	개선안(예시)
<p>제00조(구성) ① 위원회는 시의회의원, 교수, 시민·환경단체, 공무원 등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군·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④ (생략)</p>	<p>제00조(대행업체 평가 및 평가위원회)</p> <p>① 시장(군·구청장)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제8항 제2호에 따라 대행업체의 대행실적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한 0명 이상 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군·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군·구의 청소·환경 관련 과장급 0명 이내 2.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0명 이내 3. 시·군·구의회 청소·환경 관련 분야 소속 의원 0명 4. 그 밖에 청소·환경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0명 이내

현 행	개선안(예시)
	<p>⑤ <u>위원의 임기는 0년으로 하되, 0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꺾워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⑥ <u>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평가 기준에 따라 대행업체의 대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u></p> <p>1.</p> <p>2.</p> <p>3.</p> <p>4.</p>
〈신설〉	<p>제0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u>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u></p> <p>1. <u>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p> <p>2. <u>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p> <p>3. <u>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u></p> <p>4. <u>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p> <p>② <u>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p> <p>③ <u>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u></p> <p>④ <u>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屬)할 수 있다.</u></p>

4

대행자 제재기준 강화로 위법·부당행위 사전 차단

▶ 평가대상 조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⑦ (생략)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 문제점

⑥ 대행료 허위청구 등 위법·부당행위 대행업체 제재규정 부재

-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행업체의 대행료 허위·부당청구, 미회원 인건비 부적정 지급 등의 위법·부당행위 사전 차단에 한계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6호 및 제7호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의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계약해지 및 3년간 계약을 금지

관련 사례

【청소대행자격 논란】

- ▶ 14억 횡령업자에 벌금 600만원...청소대행 자격 논란 (연합뉴스, '13. 5월)
 - 생활폐기물 대행 관련 뇌물 등 비리로 700만원 이상 벌금 선고 시 대행계약 해지 규정으로 인해 회사돈을 14억여원을 빼돌리고도 벌금 600만원 선고로 대행계약 및 자격 유지

- 그러나, 미화원 등의 인건비 부적정 지급 차단과 허위·부당하게 대행료를 청구하고 지급받아 발생하는 지방재정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위법·부당행위 업체 제재규정이 없음

▶ 개선방안

⑥ 제재규정 강화로 대행업체의 위법·부당행위 차단

- 대행료를 허위·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도 계약해지 및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여 지방재정 낭비 방지 및 미화원 등의 근로자 권익 보호
 - ※ (예) 계약해지 및 3년간 계약금지 조항에 ‘대행료 허위·부당 청구’ 및 ‘근로자 인건비 부적정 지급’의 경우 추가

▶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회계통칙’(안전행정부, '06. 12월)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에 낙찰율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예시】 폐기물관리법

현 행	개선안(예시)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⑦ (생략)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u>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 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자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u>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u>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 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나. 대행료를 허위·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령으로</u>

현 행	개선안(예시)
<p>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 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p>	<p>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p> <p>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계 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p> <p>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 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 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나. 대행료를 허위·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 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한 게 지급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령 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제3절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1

무분별한 위탁대상 확대 차단 및 특혜성 위탁연장 관행 방지

▣ 평가대상 조문

청소년수련시설 조례(지자체)

【운영위탁】

○ 부적정 사례 : 비청소년단체에 위탁허용 77개(50.3%) 지자체

제○조(운영위탁) 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도시공사, 운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개인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적정 사례 : 비청소년단체에 위탁금지 76개(49.7%) 지자체

제○조(운영위탁) ① (생략)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위탁연장】

○ 미제정 : 68개(44%) 지자체

○ 미흡 사례 : 73개(48%) 지자체

제○조(위탁연장)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우수 사례 : 12개(8%) 지자체

제○조(위탁연장)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수탁자 운영평가】

○ 미제정 : 148개(97%) 지자체

○ 우수 사례 : 5개(3%) 지자체

제○조(위탁협약) ①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일 전까지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1-3),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 **문제점**

① **청소년수련시설을 비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청소년육성 활동 위축**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해야 하나, 비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성 저하 - 비청소년단체는 청소년활동 지원, 복지 증진, 근로 청소년 보호 및 교육 등 전문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낮아 청소년 지도에 역량 발휘 곤란
 -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발굴·운영 등 위축 우려
 - ※ (예) 시설관리공단 :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생산보다는 시설관리에 중점 운영

관련 사례

- ▶ 도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부실위탁’ (경기일보, '13.11.21)
지자체 위탁 74곳 중 11곳 “청소년단체와 무관” 드러나
- ▶ 감사없고 자체규정 만들고...민간위탁 시설들 엉망 (시사제주, '13.3.6)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할 때 “청소년단체로 볼 수 없는 기관단체와 위탁협약 체결”

- (조례)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153개 지자체 중 77개(50.3%) 지자체가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위반하여 조례에 청소년단체가 아닌 단체를 위탁대상으로 규정

합 계 (비율)	비청소년단체에 위탁 허용			비청소년단체에 위탁 금지
	소 계	청소년조례(A)	민간위탁조례(B)	
153 (100%)	77 (50.3%)	61 (39.9%)	21 (13.7%)	76 (49.7%)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청소년단체에 운영위탁 가능

- (실태) '13. 12월 기준, 342개 수련시설 중 89개(26.0%) 시설을 청소년 단체가 아닌 단체에 위탁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 시비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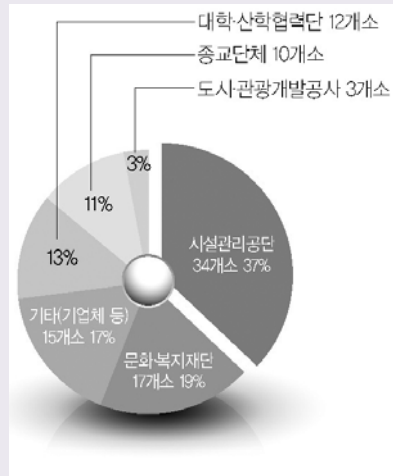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위탁 시설	342	57	17	12	14	9	12	7	1	74	23	12	16	17	25	10	24	12
비 청소년 단체	89	14	4	2	9	1	-	2	-	18	3	3	8	-	1	6	11	7
	26.0(%)	24.6	23.5	16.7	64.3	11.1	-	28.6	-	24.3	13.0	25.0	50.0	-	4.0	60.0	45.8	58.3

관련 사례

【유형별 법률위반 위탁】

- ▶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시설공단**, 문화예술시설 관리 및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재단**, 택지개발·공공주택·산업단지조성 사업을 하는 **도시공사**, 여가활동 위주의 영리목적의 **사설 레저업체**, 지역 친목 단체인 **마을회** 등에 위탁

구분	수탁기관 유형	사례 수 (비율)
1	시설관리공단	34 (38.2%)
2	문화·복지재단	16 (18.0%)
3	학교법인·산학협력단	12 (13.5%)
4	종교단체(○○교회 등)	10 (11.2%)
5	도시공사·관광개발공사	3 (3.4%)
6	기타(레저업체, 마을회 등)	14 (15.7%)
합 계		89 (100.0%)



(권익위 실태조사, '14. 9월)

- 비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89개 시설의 '13년도 총수입은 7백 1십여억원이며, 이 중 지원받은 위탁보조금은 3백 9십여억원(55.9%)

(단위 : 천원)

시설수	총수입	%	지자체수입	%	시설자체수입	%	보조금수입	%
89개소	71,111,348	100.0	13,387,800	18.8	17,945,523	25.2	39,778,026	55.9

관련 사례

- ▶ ○○도 내 5개 마을회는 각각 문화의 집을 위탁운영하면서, 최근까지 매년 1억 5백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지원받고 있고, 이들 마을회의 평균 위탁기간은 11.1년으로 재계약 절차 없이 최초 위탁 시부터 수의계약을 맺고 운영해 오고 있는데 특히, '13년도 종합평가에서 5개 마을회 운영시설 중 최우수, 우수등급은 단 한 군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을회가 운영하는 문화의 집은 “미흡” 판정을 받는 등 부실운영 (권익위 실태조사, '14. 9월)

▶ 342개 수련시설 중 최초 위탁계약 체결 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설이 92개(26.9%)인데 반해, 비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89개 시설 중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51개(57.3%)로 그 비율이 월등히 높아 특정단체 선정을 위해 심의절차 누락 등 특혜 부여 소지 (권익위 실태 조사, '14. 9월)

○ 또한, 법률에서 위탁 시 청소년단체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여 지자체 내부 판단에 의존

- 청소년단체 해당여부를 108개(76.6%) 지자체는 내부적으로 자체 판단, 20개(14.2%) 지자체는 여성가족부에 의견조회를 통해 판단

구 분	합 계 (총 153개)	자체 판단		외부 판단		기 타
		담당부서	기타부서	상급지자체	여성가족부	
단일확인	141 (100.0%)	108 (76.6%)	2 (1.4%)	6 (4.3%)	20 (14.2%)	5 (3.5%)
복수확인	6	√			√	
	2	√		√		
	2	√		√	√	
	1			√	√	√

〈 전문가 자문 결과 〉

▶ 수탁자 선정이 되었음에도 사후적으로 부적정 판단을 받게 되면 수탁자의 신뢰보 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선정 단계에서부터 주무부처(여성가족부)에 대한 의견조회 등 협조를 받도록 하고, 주무부처는 사후감사 등을 통해 부적정 단체를 선별함이 바람직

② 자의적인 위탁기간³⁾ 연장으로 기존단체에 특혜 부여

○ 위탁연장 기간을 규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기관이 자의적 으로 기존단체에 장기간 위탁함으로써 특혜 부여

- 수련시설을 위탁한 153개 지자체 중 80개(52.3%) 지자체는 청소년조례에 재계약 기본연수 규정이 없고, 141개(92.2%) 지자체는 재계약에 따른 연장 횟수 미규정(규정 모두 없는 지자체도 각각 53개(34.6%), 136개(88.9%))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구 분	합 계 (비율)	청소년조례(A)		민간위탁조례(B)		비 고 (A·B 모두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위탁연장 기본연수	153 (100%)	73	80 (52.3%)	32	121 (79.1%)	53 (34.6%)
위탁연장 횟수제한	153 (100%)	12	141 (92.2%)	51	48 (96.7%)	136 (88.9%)

- 대다수 지자체(141개, 92.2%)가 조례에 위탁연장을 포함한 위탁기간 제한이 명확하지 않아 위수탁계약서에도 위탁기간을 자의적으로 설정

【조례】 **▣▣도 □□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위탁운영)**

-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협약의 방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재협약은 위·수탁기간의 1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위수탁 협약서】 **▣▣도 □□군 청소년수련관 위수탁 계약서 제4조(위탁운영)**

- ② “○○○”이 이 수련관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위탁기간 만료 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342개 시설 중 220개(64.3%) 시설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였고, 이 중 106개(48.2%) 시설은 10년 이상 장기위탁 시설
- 신규단체의 진입이 곤란하여 특정단체의 ‘위탁시설 사유화’ 초래

구 분	합 계 (비율)	위탁기간			비 고	
		5년 미만	5~10년	10년 초과	최고(년)	평균(년)
전 체 (비율)	342 100.0%	140개소 40.9%	87개소 25.4%	115개소 33.6%	25.8	7.5
위탁연장 시설 (비율)	220 100.0%	35개소 15.9%	79개소 35.9%	106개소 48.2%	25.8 (2개소)	9.9

※ 계약기간 연장없는 10년 초과 운영 시설(9개소) : 시설공단, 문화재단 등 지자체 산하기관

관련 사례

- ▶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은 1987년 「청소년육성법」 제정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한 1988년부터 현재까지 26년여 동안 계속하여 동일단체(종교재단)에 위탁하고 있고, 20년 이상 장기운영 단체도 7개소에 달함(권익위 실태조사, '14. 9월)

③ 수탁자에 대한 평가절차 미비로 수탁자 관리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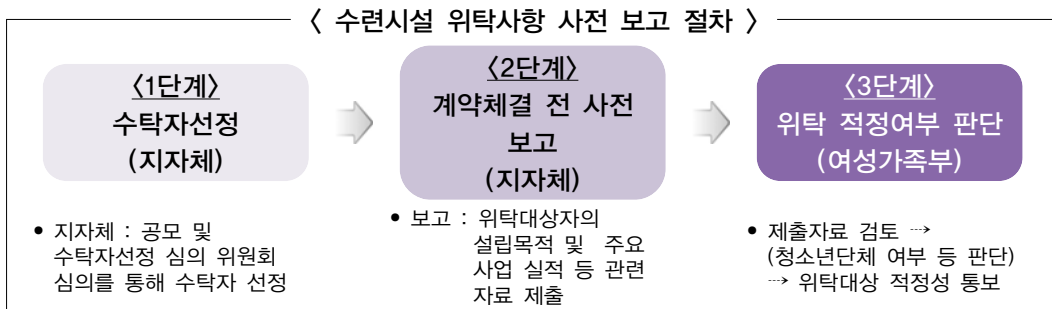
-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고 위탁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평가 미실시로 수탁자 관리 부실
 - 153개 지자체 중 148개(96.7%) 지자체는 청소년조례에 평가절차 규정 없음(규정 모두 없는 지자체도 141개(92.2%))

구 분	합 계 (비 율)	청소년조례(A)		민간위탁조례(B)		비 고 (A·B 모두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수탁자 운영평가 규정	153 (100%)	5	148 (96.7%)	7	146 (95.4%)	141 (92.2%)

개선방안

① 위법한 위탁대상 확대 차단방안 마련

-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위탁범위를 벗어나 수련시설 위탁대상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조문 삭제
 - ※ 고양시 : 고양시문화재단(비청소년단체)이 위탁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포함하여 3개 청소년시설을 신설하는 청소년육성재단에 이관·운영 계획(조례 제정 포함)
- 여성가족부장관에 대한 지자체의 위탁계약 전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여 위법한 위탁대상 확대 근본 차단 <청소년활동진흥법 조문 신설>



〈 부적합단체 위탁에 대한 권익위 현장 의견수렴('14. 7월) 〉

-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14. 7. 22.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청소년 단체 위탁대상 적정성에 대한 점검·적발에 한계가 있어 사전에 문제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필요 (경기도 소재 청소년수련관)
- ▶ 동일 수련시설도 지자체 실무자마다 위탁단체의 설립목적과 주요사업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여 청소년단체 해당여부에 이견 발생 (서울시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

※ **【참고 의견】** 청소년단체에만 수련시설을 위탁하도록 한 현행법률 검토

- ▶ '14년부터 종합평가가 의무화되고, 평가주기가 단축(3년 → 2년)되는 등 수련시설 운영실적 평가사례가 다수 집적되어 청소년단체와 기타 수탁자 간 관리운영 능력 비교·평가가 보다 면밀히 가능해지고, 각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 후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대상에 청소년단체 이외에 비영리법인·단체까지 허용 여부를 향후 장기 정책과제로 검토 필요
 - ⇒ 우선, 종합평가 활용도를 높여 부실운영 시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우수 운영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더불어 **청소년단체라도 부실운영 수탁자에 대해서는 퇴출을 확대하여 동일 직역 간 경쟁강화 유도** ← 청소년단체라는 이유로 위탁운영이 보장되는 관행 타파
- ✓ **관련 개선방안 : ① (종합평가 활용도 제고를 통한 부실운영 방지 방안 마련)**

② 위탁기간 명확화를 통한 위탁연장 관행 개선

- 위탁연장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탁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탁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

- ▶ **괴산군** :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장을 위한 갱신 시에는 공유재산 관리위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강남구**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수탁자 관리운영능력 평가절차 제도화

- 위탁기간 연장 시 수탁자 관리능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사전 평가 절차를 명확히 규정

※ (예) 청소년조례에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갱신에 관한 타당성을 심의하는 ‘공유재산 심의회’ 준용 명시 등

- ▶ 서울시 : 재계약 시 신규 위탁사무 선정 및 운영상황 등을 평가하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수탁자선정심의회위원회와 별도로 수탁자 운영능력 평가

【예시】 청소년활동진흥법

현 행	개선안(예시)
<p>제33조의2(보고 등) ①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 의 현황 2. 제12조 및 제13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현황 3.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 활동 계획의 신고 현황 4. 제18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결과 <p>② (생략)</p>	<p>제33조의2(보고 등) ①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u>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위수탁협약 체결 전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 의 현황 2. 제12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현황 3.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 활동 계획의 신고 현황 4. 제18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결과 5.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위탁사항 <p>② (현행과 같음)</p>

- ▶ 규정이 없는 지자체 : 신설
- ▶ 규정이 미흡한 지자체 : 개선안을 참조하여 보완·정비

【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선안(예시)
<p>제○조(운영위탁)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신설〉</p>	<p>제○조(운영위탁) 위탁기간은 ○년 으로 하되, ○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또는) 위탁기간은 ○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 자를 선정한다.</p> <p>제18조(위탁협약) ① 위탁기간은 ○년 이내로 하되, ○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에는 위탁기간 만료 ○○일 전까지 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는) ○○○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일 전까지 제○의2 평가 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수탁 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p>

2

부실운영·위법행위 수탁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

▶ 평가대상 조문

청소년활동진흥법

【위탁취소 규정 없음】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활동프로그램 운영 등 수련 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주기·방법·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는 수련시설의 관리·운영,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내용·전문성, 시설·설비 및 안전관리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서면, 전산입력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 문제점

④ 종합평가 활용미비로 부실운영 수탁자에 대한 책임성 확보 미흡

- 평가결과 활용은 주로 최우수시설 인센티브 부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일정등급 이하 시설(ex.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에 대한 책임성 확보 장치 미흡

- 153개 지자체 중 청소년조례에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위탁취소 규정 미비 153개(100.0%), 위탁계약 연장 시 종합평가 결과반영 미비 146개(95.4%) 지자체

구 분	합 계 (비 율)	청소년조례(A)		민간위탁조례(B)		비 고 (A·B 모두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위탁취소	153 (100%)	0	153 (100.0%)	0	153 (100.0%)	153 (100.0%)
재계약시 종합평가 반영 의무화	153 (100%)	7	146 (95.4%)	4	149 (97.4%)	142 (92.8%)

※ 종합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는 경우 시설 허가·등록취소 가능하나, 취소여부가 임의사항이며 통상 기본 계약기간이 3~5년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 미흡

※ **【참고】** ◎◎구 청소년문화의 집 “재위탁 공통심사기준 및 항목” 예시

➡ 위탁계약 연장 시, 시설운영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심사하는 평가항목 없음

항 목	세부항목	평가항목
운영주체의 공 신 력 (30점)	① 수탁법인의 도덕성, 법적 건전성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적합한 이사의 구성 (3) • 이사회의 활동실적 (2) • 최근 3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에서의 지적사항 (3)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3)
	② 공모사업 참여실적 (2)	• 수탁기간 동안 건강가정 관련 공모사업 참여실적 (2)
	③ 운영주체의 관리능력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사업수행 여건 (3) • 법인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한 적절한 기준 설정 및 수행 (3)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재정 능력 (20점)	① 향후 위탁기간 재정 부담 계획 (5)	• 향후 수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 (5)
	② 예산관리 및 집행 (15)	• 법인 회계집행의 적절한 수행 (5) …이하 생략…
사업능력 (30점)	① 인력관리 (8)	• 직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노력 (3) …이하 생략…
	② 지역사회와의 관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3) •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 및 관리 (2)
	…이하 생략…	…이하 생략…
법인대표 및 시설장 면접(20점)	① 향후 운영계획 (12) …이하 생략…	• 향후 수탁기간 동안의 센터 운영계획 (4) …이하 생략…

- '14년부터 종합평가가 의무화되었으나, 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평가를 거부·회피하는 경우 제재수단이 없어 평가의 실효성 저하
 - 미평가 시설에 대해 지도·점검, 공모사업 지원대상 제외 등 불이익 제재로는 종합평가 이행력 확보에 한계

【미평가 시설에 대한 조치】

- ▶ 시설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지자체)
- ▶ 공모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

【'14년도 ○○시 △△청소년수련관 세입 현황】

- ▶ 외부 공모사업 등을 통한 특별사업보조금이 전체 수입에서 10% 내외를 차지하고 자체 시설이용료 수입이 훨씬 클 경우 공모사업 등 지원사업 제외는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미흡

구 분	사업 수입	사업외 수입	보조금		
			소계	시비보조금	특별사업보조금
구성비율	45%	9%	46%	34%	12%

(권익위 실태조사, '14. 9월)

- * 사업 수입 : 시설사용료, 프로그램수입, 특별지원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등
- * 사업외 수입 : 전년도이월금, 법인전입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 * 보조금 : 위탁보조금, 외부 공모사업, 국·지자체 매칭사업 등 시설보조금

-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 종합평가 결과를 게재할 뿐, 해당 시설에는 공개의무가 없어 청소년, 보호자 등 이용자의 정보접근 제한
 - 153개 지자체 중 모든(100.0%) 지자체가 청소년조례에 종합평가 결과 공개규정 미비(규정 모두 없는 지자체 153개(100.0%))

구 분	합 계 (비 율)	청소년조례(A)		민간위탁조례(B)		비 고 (A·B 모두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종합평가 결과공개 (지자체·해당시설)	153 (100%)	0	153 (100.0%)	0	153 (100.0%)	153 (100.0%)

⑤ 위탁취소 법적 근거 부재 및 제재의 형평성·일관성 결여

- 관리권을 회수하는 위탁계약 취소 및 그에 따른 제재(수탁자 자격제한, 결격기간 등)는 침익적 요소가 강해 법률에 근거가 요구되나 근거 부재
 - 또한, 위탁취소 규정 부재로 최근 3년간 위탁취소 사례가 단 1건에 불과하는 등 위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구 분	불법행위 지도·점검		행정 처분				비 고
	점검횟수	적발횟수	소계	운영중지	위탁취소	벌금·과태료	
계	2,150	135	3	-	1(서울 동작구)	2	처분 / 적발 비율 : 2.2%
2013	772	26	2	-	1	1	
2012	763	68	1	-	-	1	
2011	615	41	0	-	-	-	

관련 사례

【사당청소년문화의 집(’13. 12.), 위탁취소】

▶ 청소년단체가 아닌 동작복지재단을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수탁자로 선정한 것은 부적절

‘문화의 집’은 청소년수련시설로서, 동 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불가

- 한편,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위탁계약 취소(해지) 사유를 다르게 규정하여 제재의 형평성 및 일관성 결여
 - 지역에 따라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 위탁대상이 아닌 단체에 위탁 등 주요 취소사유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발생
 - “거짓·부정한 방법” 사유를 조례에 강행규정으로 규정 24개소(15.7%), 임의규정 47개소(30.7%), 모두 미규정 지자체는 82개소(53.6%)로 편차를 보임

구 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시” 위탁취소		합 계
	강행규정	임의규정	
규정	○	×	24개소 (15.7%)
	×	○	47개소 (30.7%)
미규정	×	×	82개소 (53.6%)
합 계			153개소 (100.0%)

- 협약서의 계약해지 사유도 사정변경·자발적 의사에 의한 해지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사유와는 관련성이 적어 제재효과 미약

〈 ○○시 위수탁 협약서 예시 〉

제○○조(계약의 해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갑”과 “을”이 모두 본 계약의 해지를 원할 때
2. “을”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3. “을”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이 협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⑥ 위탁취소자에 대한 활동제한 부재로 비위단체 재진입 가능

- 위탁계약이 취소된 단체가 위탁취소 후에도 제한없이 수련시설 위탁운영이 가능하여 위탁취소가 일회성 효과에 그치는 등 징벌효과 미약
 - 법 제15조는 허가·등록취소에 대한 결격사유로 위탁취소에 적용 곤란
- 153개 지자체 중 150개(98.0%) 지자체는 청소년조례에 수탁자격 제한규정이 없어 비위행위 단체 사전배제 곤란(규정 모두 없는 지자체도 148개(96.7%))

구 분	합 계 (비율)	청소년조례(A)		민간위탁조례(B)		비 고 (A·B 모두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위탁 취소자 수탁 제한규정	153 (100%)	3	150 (98.0%)	2	151 (98.7%)	148 (96.7%)

※ 조례에는 없으나 지침·방침 등으로 시행 : 3개 지자체(충북 제천시 등)

▣ 개선방안

④ 종합평가 결과 활용도 제고를 통한 수탁자 부실운영 방지

- 종합평가 결과와 위탁취소, 위탁기간 연장심사 연계
 - ➔ ① <종합평가 등급> “매우 미흡”, <안전점검> 부적합(전기, 가스) 또는 D, E등급(건축, 토목) ⇒ 위탁취소 의무화
 - ② 지자체별 ‘재계약 심사기준’에 수탁자의 종합평가 관련 세부평가 항목 신설
- 정당한 사유없이 종합평가를 회피·거부하는 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위탁 취소 등 제재수단 신설
 -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의2(운영중지),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사유에도 명시
- 시설 홈페이지에 평가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학교단체, 청소년 등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부실운영 수탁자의 퇴출 유도
 - ➔ ① 소방·건축·가스 등 항목별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결과 공개
 - ② 평가 미참여, 평가제외 시설인 경우에도 해당 사실·사유를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

〈 ○○○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예시 〉

평가년도	평가기관	종합평가 등급	안전점검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2014년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미흡	B	B	양호	보통	적합	부적합

⑤ 위탁취소 규정 신설로 제재의 실효성 및 형평성 제고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위탁계약 취소근거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마련
 - ➔ 비청소년단체에 위탁한 경우, 보조금 횡령·유용, 이용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피해사고 발생 등 위탁취소 사유 신설

〈 전문가 자문 결과 〉

- ▶ 단체의 구성원이 보조금을 횡령·편취한 경우 등에도 소속 개인에 대한 선임·감독 소홀을 이유로 단체에 대해 위탁취소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보조금 환수 가능

⑥ 위탁취소 단체에 대해 일정기간 진입장벽 설정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위탁취소된 단체에 대해 일정기간 수탁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비위단체의 진입 방지
 - ➔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 보조금 횡령·유용 등으로 위탁취소된 단체(법인) 등에 대해서 일정기간 수탁자격을 제한하여 비위행위 수탁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예시】 청소년활동진흥법

현 행	개선안(예시)
<p>〈신설〉</p>	<p>제〇〇조(위탁취소)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 수탁자의 대표자나 수탁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수탁자의 직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 6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단체가 아닌 단체에 위탁한 경우 3.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를 거부·회피하는 경우 5.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에서 가장 낮은 등 급을 받거나 안전점검에서 가장 최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6. 최근 2년 이내에 제72조제2항 제6호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 반행위를 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 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 이 없다고 인정된 때 9.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 한 때 10.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현 행	개선안(예시)
<p>〈신설〉</p>	<p>② ○○○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p>
<p>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은 청소년단체 (이하 “위탁운영 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 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 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p> <p>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① ~ ③ (생략)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를 교육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 11 조제 3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가 제○○조 (위탁취소)의 사유로 위탁이 취소된 때로부터 ○ 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수련시설의 수탁자가 될 수 없다.</p> <p>③ (현행 제②항과 같음)</p> <p>④ (현행 제③항과 같음)</p> <p>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⑤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주기·방법·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수련 시설의 수탁자 선정, 해지 및 위탁 기간 연장 심사 등에 있어서 해당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주기·방법·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예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현 행	개선안(예시)
<p>제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 등)</p> <p>① ~ ② (생략)</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u>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u></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 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 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u>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시설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수련시설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u></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3

수탁자 선정과정 및 이용료 반환기준의 공정성 확보

▶ 평가대상 조문

청소년수련시설 조례(지자체)

【수탁자심의위원회】

○ 미제정 : 120개(78%) 지자체

○ 우수 사례 : 33개(22%) 지자체

제○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하 생략)

【이해충돌방지 규정】

○ 미제정 : 148개(97%) 지자체

○ 우수 사례 : 5개(3%) 지자체

제○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해당 심의·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사용료 반환】 ※ 사용료 유료 132개 지자체

○ 미제정 : 19개(14%) 지자체

○ 미흡 사례 : 103개(78%) 지자체

제○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청인이 사용일 ○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우수 사례 : 10개(8%) 지자체

제○조(사용료 반환) (생략)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이해충돌 가능성(3.3)

▣ **문제점**

⑦ **공정·투명한 수탁자 선정을 위한 규정 미흡**

- 수탁자심의위원회는 수탁기관을 심의·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나 일부 지자체는 미구성 또는 형식적 운영 등 수탁자 선정결과의 공정성 저하
 - 153개 지자체 중 120개(78.4%) 지자체는 청소년조례에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이 미비(규정 모두 없는 지자체 15개(9.8%))

구 분	합 계 (비 율)	청소년조례(A)		민간위탁조례(B)		비 고 (A·B 모두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153 (100%)	33	120 (78.4%)	121	32 (20.9%)	15 (9.8%)

※ **【참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구성 현황〉

- ▶ 위원회를 운영한 117개 지자체 중 내부 공무원 비율이 50% 이상 16개(13.7%), 청소년 전문가 비율 30% 이하 73개(62.4%) 지자체
 - 내부인사 편중 및 청소년 전문가 부족으로 공정·심도있는 심의 저해

구 분	합계(비율)	0~30% 미만	30~50%	50% 이상
청소년 전문가	117개 지자체	73 (62.4%)	34 (29.1%)	10 (8.5%)
공무원	117개 지자체	55 (47.0%)	46 (39.3%)	16 (13.7%)

- ▶ 117개 지자체의 심의회 위원 총 939명의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합계 (비율)	청소년 전문가	공무원	지방의원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기타
인 원 (비율)	939명 100%	241 25.7%	309 32.9%	113 12.0%	17 1.8%	49 5.2%	124 13.2%	73 7.8%

(권익위 실태조사, '14. 8월)

- 또한, 148개(96.7%) 지자체는 청소년조례에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없어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에 의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저하 우려(규정 모두 없는 지자체 127개(83.0%))

구 분	합 계 (비 율)	청소년조례(A)		민간위탁조례(B)		비 고 (A·B 모두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이해충돌방지 규정	153 (100%)	5	148 (96.7%)	25	128 (83.7%)	127 (83.0%)

⑧ 반환규정 미비로 부당한 비용부담 및 형평성 저해

- 일부 지자체는 이용료 반환규정이 없어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환급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비용부담 및 형평성 저해 우려
 - 사용료가 유료인 132개 지자체 중 19개(14.4%) 지자체 반환규정 미비, 수강료가 유료인 119개 지자체 중 20개(16.8%) 지자체 반환규정 미비

구 분	합 계 (비 율)	청소년조례(A)		민간위탁조례(B)		비 고 (A·B 모두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① 사용료 반환규정	132 (100%)	113	19 (14.4%)	0	132 (100.0%)	19 (14.4%)
② 수강료 반환규정	119 (100%)	99	20 (16.8%)	0	119 (100.0%)	20 (16.8%)

- 또한, 반환규정이 있더라도 환급기준이 지자체별 조례마다 달라 납입료 반환 여부 및 환급수준에서 편차 발생
 - 129개 지자체의 “전액환급” 기준을 보면, ① 천재지변(105개), ② 운영자의 부득이한 사유(90개), ③ 이용일 7일전 취소(21개) 등 사유별로 큰 차이가 있음

전체 (비율)	천재 지변	운영자 귀책사유	이용예정일 전 취소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적용
			소계	10일	7일	5일	3일	1일	사용 직전	기타	
129 (100.0%)	105 (81.4)	90 (69.8)	77 (59.7)	3 (2.3)	21 (16.3)	20 (15.5)	8 (6.2)	13 (10.1)	8 (6.2)	4 (3.1)	10 (7.8)

※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환급규정이 없는 24개 지자체는 전액환급 불가

▣ 개선방안

⑦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명시
 - ※ 수탁자심의위원회 위원 중 내부 공무원 비율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고, 외부 청소년전문가 비율 확대
- 위원회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⑧ 합리적인 이용료 분쟁 해결기준 정비

-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 4호, 2014.3.21.)」을 준용하도록 명시
 - ※ 서울시 조례에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준용’ 명시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제7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운영단체는 미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 규정이 없는 지자체 : 신설
- ▶ 규정 미흡한 지자체 : 개선안을 참조하여 보완·정비

[이용료 반환기준 예시]

구 분	반환금액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납부 이용료의 전액 반환
2.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납부 이용료의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시설 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및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
4. 이용자가 시설 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선안(예시)
<p>제○조(위탁운영) 시장은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p> <p>〈신설〉</p>	<p>제○조(위탁운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6조 제1 항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제○○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분의 1이상으로 한다. (생략)</p> <p>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현 행	개선안(예시)
<p>〈신설〉</p>	<p>⑤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p> <p>⑥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⑦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p>

부록 2

제1절 제·개정 시 참고해야 할 일반법
제2절 색 인

제1절

제·개정 시 참고해야 할 일반법

① 과태료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과태료 부과시 고려사항,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부과·징수 방법, 감정기준, 이의제기 절차 등 규정

② 위원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설치 요건 및 절차, 구성 및 운영 방법, 위원회 설치 시 법령에 명시해야하는 사항 및 공무원 의제 등 규정

③ 행정업무의 위임·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 기준, 민간위탁 기준 및 대상선정 기준, 지휘·감독 등 규정
※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위임·위탁은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규정

④ 개인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기준 및 목적외 이용금지,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한,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 등 규정

⑤ 행정정보의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행정정보의 공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규정

⑥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 등 : 「행정절차법」

⇨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청문·공청회, 행정예고·행정지도 등 규정

제2절 색 인

연번	평가규정	평가기준	페이지
1	각종 행사관련 대전광역시교육감 상장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접근성과 공개성, 이해충돌 가능성	228
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접근성과 공개성	89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량기준의구체성·객관성, 예측가능성	138
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준수부담의 적정성	37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재규정의 적정성	42
6	결핵예방법 시행령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65
7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부담의 적정성, 접근성과 공개성, 특혜발생 가능성	243
8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량규정의구체성·객관성	128
9	계약사무처리규칙	제재규정의 적정성	254
10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준수부담의 적정성	33
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이해충돌 가능성	106
1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해충돌 가능성	109
13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특혜발생 가능성	49
14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준수부담의 적정성	191
1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해충돌 가능성	102
16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특혜발생 가능성, 접근성과 공개성	206
17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접근성과 공개성	226
18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재규정의 적정성	45
19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263
2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재규정의 적정성	114
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이해충돌 가능성	153

연번	평가규정	평가기준	페이지
22	국민건강증진법	재량규정의구체성·객관성	136
2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준수부담의 적정성	30
24	낙시관리 및 육성법	제재규정의 적정성	164
2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72
2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량규정의구체성·객관성, 접근성과공개성	117
27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접근성과 공개성	86
28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예측가능성	238
29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조례 시행규칙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208
30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건축물 개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이해충돌 가능성	240
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량규정의구체성·객관성	169
32	동호회운영지침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287
3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63
34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재규정의적정성, 위임·위탁기준의적정성	182
35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재량규정의구체성·객관성, 예측가능성	173
36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	특혜발생 가능성	252
37	보훈기금법	제재규정의 적정성	40
38	보훈회관 운영규정	재량규정의구체성·객관성, 특혜발생가능성	186
39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접근성과 공개성, 이해충돌 가능성, 특혜발생 가능성	210
40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회계 규칙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224
41	사택운영관리지침 제정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282
42	사회공헌활동 운영기준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접근성과 공개성	265
43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특혜발생가능성, 재량규정의구체성·객관성	187
44	상벌세칙	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 가능성	289
45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	이해충돌 가능성, 특혜발생 가능성	221

연번	평가규정	평가기준	페이지
46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	제재규정의 적정성	230
4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이해충돌 가능성	236
48	소송업무처리내규	준수부담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284
49	식물방역법	제재규정의 적정성, 접근성과 공개성	160
5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측가능성	93
51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예측가능성	96
52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	준수부담의 적정성	261
53	업무추진비 지출 업무처리세칙	접근성과 공개성	294
54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접근성과 공개성	189
55	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특혜발생가능성	220
5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60
5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혜발생 가능성	55
58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측가능성, 특혜발생 가능성	269
59	임직원 청렴·윤리 규정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267
60	임직원 행동강령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256
61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조사사업 업무지침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이해충돌가능성	258
62	자연공원법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120
6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142
64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및 우대조치에 관한 업무처리규칙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275
65	전라남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245
66	전라북도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해충돌 가능성, 예측가능성	212
67	정보화업무운영 및 정보보안 업무처리규칙	접근성과 공개성	273
68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특혜발생 가능성	200
6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급고 지정 및 운영 규칙	특혜발생 가능성	232
70	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195
71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제재규정의 적정성	193
72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운영규정	접근성과 공개성	91

연번	평가규정	평가기준	페이지
73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재량규정의구체성·객관성	184
7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임·위탁기준의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 가능성	131
7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량규정의구체성·객관성, 이해충돌 가능성	147
7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접근성과 공개성, 이해충돌 가능성	150
77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이해충돌 가능성	157
78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57
79	축산물 위생관리법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76
80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216
81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이해충돌 가능성	214
82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조례	특혜발생 가능성	218
83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234
8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재규정의적정성, 재량규정의구체성·객관성	166
8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재규정의 적정성	122
8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특혜발생 가능성	52
87	통계청 공무원 행동강령	특혜발생 가능성	198
88	하수도법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68
89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78
90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이해충돌 가능성	144
91	해외학위 조회지원 서비스에 관한 운영규칙	특혜발생 가능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278
92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예측가능성, 준수부담의 적정성	202
9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재규정의 적정성	125
9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예측가능성	99
95	회계규정	특혜발생가능성, 재량규정의구체성·객관성	292
96	회계사무처리규칙	제재규정의적정성, 재량규정의구체성·객관성	250
97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83

2014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Casebook

부패영향평가사례집

발행일 2015년 6월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편집 부패방지국 부패영향분석과(Tel. 044-200-765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제7-2동(우339-012)

인쇄·디자인 (사)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인쇄사업소
Tel. 02-396-1392 Fax. 02-6008-1473